

# 국고보조사업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22.12.

원종학 · 권오성 · 조임곤 · 최진욱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국고보조사업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22. 12

원종학 · 권오성 · 조임곤 · 최진욱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구성 .....	3
II. 보조금제도 및 평가에 관한 이론과 현황 .....	6
1. 보조금의 정의 .....	6
가. 이론적 정의 .....	6
나. 법률적 정의 .....	8
다. 예산과목상의 보조금 .....	10
2. 보조금의 활용 .....	11
가. 보조금 규모의 추이 .....	11
나. 보조금의 목적과 활용분야 .....	12
다. 소결 .....	15
3. 보조금 연구의 경향 .....	16
가. 배경 .....	16
나. 우리나라 보조금 연구의 경향 .....	17
4. 보조사업 평가결과의 타당성 문제 .....	21
가. 평가요인과 비평가요인 .....	21
나. 정성평가의 문제 .....	22
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의 유사성 .....	23
III. 국고보조사업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26
1. 평가항목과 평가결과 표준화 .....	26
가. 평가항목 표준화 .....	26
나. 평가결과의 표준화 .....	28
다. 기타 입력 사항 .....	29
2. 연도별 평가 특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	30
가. 2011년 .....	30
나. 2012년 .....	37
다. 2013년 .....	40

라. 2014년 .....	42
마. 2015년 .....	50
바. 2016년 .....	59
사. 2017년 .....	66
아. 2018년 .....	70
자. 2019년 .....	73
차. 2020년 .....	77
카. 2021년 .....	81
타. 소결 .....	85

#### IV. 국고보조사업 및 평가결과 추세 분석 ..... 90

1. 국고보조사업 예산 추세 .....	90
가. 국가재정 규모 .....	90
나. 국고보조사업 예산 .....	92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추세 .....	97
가. 유형별 .....	97
나. 회계별 .....	98
다. 분야별 .....	100
3. 2022년 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	101
가. 재정자립도와 국고보조율 .....	101
나. 재정자립도와 집행률 .....	104
4.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 추세 .....	107
가. 평가결과 .....	107
나. 평가영역별 점수 .....	108

#### V. 국고보조사업평가결과 영향 요인 분석 ..... 110

1. 평가요인별 평가결과 .....	110
가. 평가영역: 사업 타당성 .....	110
나. 평가영역: 규모 적정성 .....	113
다. 평가영역: 관리 적정성 .....	116
2. 비평가요인별 평가결과 .....	120
가. 분야별 .....	120
나. 회계별 .....	127
다. 유형별 .....	129
라. 예산 규모별 .....	132

마. 신규 및 계속 보조사업별 .....	134
바. 일몰 및 비일몰사업별 .....	136
사. 목적변경 유무 .....	138
아. 유사중복 지적사업 여부 .....	140
자. 부정수급 지적 여부 .....	142
차. 적격성 심사 도입 이전 및 이후 .....	144
카. 연도별 교차분석 .....	145
타. 순서 있는 프로빗 모형 분석 .....	152

## VI.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 159

1.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의 차별화 .....	159
2. 현행 보조사업 연장평가 세부평가항목의 구체화 .....	161
가.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10점) .....	162
나. 1-2 보조사업의 효과성(30점) .....	164
다. 1-3 보조사업의 필요성(30점) .....	167
라. 1-4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10점) .....	169
마.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최대 3점) .....	171
바.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5점) .....	173
사.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5점);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10점) ..	175
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최대 3.0점) .....	178

## VII. 요약 및 시사점 ..... 180

### 참고문헌 ..... 183

부록 1 .....	186
부록 2 .....	188
부록 3 .....	189
부록 4 .....	192
부록 5 .....	194

## 표목차

〈표 Ⅱ-1〉 예산과목상 보조금 .....	10
〈표 Ⅱ-2〉 분야별 보조금 예산액(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13
〈표 Ⅱ-3〉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연구 현황 .....	17
〈표 Ⅱ-4〉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서의 보조금의 유형 .....	19
〈표 Ⅱ-5〉 관리적 특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 .....	20
〈표 Ⅱ-6〉 연도별 평가단 규모, 평가사업 수 및 사업 예산 .....	23
〈표 Ⅲ-1〉 2011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 기준표 .....	32
〈표 Ⅲ-2〉 2011년도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양식 .....	34
〈표 Ⅲ-3〉 2012년도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양식 .....	38
〈표 Ⅲ-4〉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1~2013년) .....	40
〈표 Ⅲ-5〉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1~2013년) .....	41
〈표 Ⅲ-6〉 2014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 기준표 .....	43
〈표 Ⅲ-7〉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활용방안 .....	45
〈표 Ⅲ-8〉 2014년도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양식 .....	47
〈표 Ⅲ-9〉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4년) .....	49
〈표 Ⅲ-10〉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4년) .....	49
〈표 Ⅲ-11〉 2015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지표 .....	52
〈표 Ⅲ-12〉 2015년도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양식 .....	54
〈표 Ⅲ-13〉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5년) .....	57
〈표 Ⅲ-14〉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5년) .....	57
〈표 Ⅲ-15〉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1~2015년) .....	58
〈표 Ⅲ-16〉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1~2015년) .....	58
〈표 Ⅲ-17〉 2016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	60
〈표 Ⅲ-18〉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6년) .....	65
〈표 Ⅲ-19〉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6년) .....	65
〈표 Ⅲ-20〉 2017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	66
〈표 Ⅲ-21〉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7년) .....	69
〈표 Ⅲ-22〉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7년) .....	69
〈표 Ⅲ-23〉 2018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	70

〈표 Ⅲ-24〉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8년) .....	72
〈표 Ⅲ-25〉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8년) .....	72
〈표 Ⅲ-26〉 2019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	74
〈표 Ⅲ-27〉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9년) .....	76
〈표 Ⅲ-28〉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9년) .....	76
〈표 Ⅲ-29〉 2020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	78
〈표 Ⅲ-30〉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20년) .....	80
〈표 Ⅲ-31〉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20년) .....	81
〈표 Ⅲ-32〉 2021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	82
〈표 Ⅲ-33〉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21년) .....	84
〈표 Ⅲ-34〉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21년) .....	84
〈표 Ⅲ-35〉 연도별 평가항목 표준화 .....	88
〈표 Ⅲ-36〉 연도별 평가결과 표준화 .....	89
〈표 Ⅳ-1〉 우리나라 재정 규모(예산액 기준) .....	90
〈표 Ⅳ-2〉 GDP 대비 우리나라 재정 규모 비중(예산액 기준) .....	91
〈표 Ⅳ-3〉 유형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 및 비율(예산액 기준) .....	94
〈표 Ⅳ-4〉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 및 비율 .....	95
〈표 Ⅳ-5〉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 .....	96
〈표 Ⅳ-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예산 규모 및 비중 .....	98
〈표 Ⅳ-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회계별 규모 및 비중 .....	99
〈표 Ⅳ-8〉 2021년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및 평가대상 사업 예산 규모 및 비중 .....	99
〈표 Ⅳ-9〉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분야별 평가 예산 규모 .....	101
〈표 Ⅳ-10〉 사업 개수로 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 .....	107
〈표 Ⅳ-11〉 예산 규모로 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 .....	108
〈표 Ⅳ-12〉 최종평점으로 본 국고보조평가결과 .....	108
〈표 Ⅴ-1〉 연도별 사업 타당성 평가점수 .....	110
〈표 Ⅴ-2〉 연도별 규모 적정성 평가점수 .....	113
〈표 Ⅴ-3〉 연도별 관리 적정성 평가점수 .....	117
〈표 Ⅴ-4〉 분야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21
〈표 Ⅴ-5〉 회계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28
〈표 Ⅴ-6〉 사업유형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30
〈표 Ⅴ-7〉 사업예산 규모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32

〈표 V-8〉 신규 및 계속사업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35
〈표 V-9〉 일몰 및 비일몰사업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37
〈표 V-10〉 목적변경 유무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39
〈표 V-11〉 유사중복 지적 여부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41
〈표 V-12〉 부정수급 지적 여부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43
〈표 V-13〉 적격성 심사 도입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	145
〈표 V-14〉 2011년 평가등급과 비평가요인과의 교차분석 .....	146
〈표 V-15〉 2012년 평가등급과 비평가요인과의 교차분석 .....	147
〈표 V-16〉 2018년 평가등급과 비평가요인과의 교차분석 .....	148
〈표 V-17〉 2021년 평가등급과 비평가요인과의 교차분석 .....	150
〈표 V-18〉 순서 있는 프라빗 모형 추정 .....	157
〈표 V-19〉 평가등급 1인 경우 한계 효과 .....	157
〈표 V-20〉 평가등급 2인 경우 한계 효과 .....	158
〈표 V-21〉 평가등급 3인 경우 한계 효과 .....	158
〈표 VI-1〉 지급 근거의 명확성과 타당성 배점 방법(예시) .....	163
〈표 VI-2〉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배점 방법(예시) .....	164
〈표 VI-3〉 하위 내역사업의 필요성 배점(예시) .....	165
〈표 VI-4〉 집행실적과 집행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 배점 방법(예시) .....	166
〈표 VI-5〉 목표설정의 적극성과 목표 달성률 배점 방법(예시) .....	167
〈표 VI-6〉 유사·중복 사업 리스트 작성의 충실도 배점 방법(예시) .....	168
〈표 VI-7〉 수혜 대상의 명확성과 수혜자의 제한 정도 배점 방법(예시) .....	169
〈표 VI-8〉 기준보조율 준수 배점 방법(예시) .....	170
〈표 VI-9〉 유사·중복 사업 리스트 작성의 충실도 배점 방법(예시) .....	171
〈표 VI-10〉 지자체보조사업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따른 배점(예시) .....	173
〈표 VI-11〉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른 배점(예시) .....	174
〈표 VI-12〉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와 사후관리의 적정성 판단 기준(예시) .....	176
〈표 VI-13〉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배점 방법(예시) .....	177
〈표 VI-14〉 자체 사업관리 노력 평가 배점 방법(예시) .....	179
〈부표 1〉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표 .....	186
〈부표 2〉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표 .....	188
〈부표 3〉 코드북 .....	189
〈부표 4〉 2011~2021년 보조사업 평가항목 비교 .....	192

## 그림목차

[그림 II-1] 외부효과와 보조금 .....	7
[그림 II-2] 일반회계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	12
[그림 II-3] 평가/비평가요인과 평가결과와의 관계 .....	22
[그림 II-4]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의 비교 .....	25
[그림 III-1] 2016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 도식도 .....	63
[그림 IV-1] 재정자립도와 국비율의 관계도 .....	102
[그림 IV-2] 재정자립도와 집행률의 관계도 .....	105
[그림 V-1] 분야별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와 평가등급 간 비교 .....	111
[그림 V-2] 분야별 보조사업 재정지원 규모 적정성 점수와 평가등급 간 비교 .....	114
[그림 V-3] 분야별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 점수와 평가등급 간 비교 .....	117
[그림 V-4] 분야별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간 관계 비교 .....	122
[그림 V-5] 분야별 예산 규모와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 .....	125
[그림 V-6] 회계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 .....	129
[그림 V-7] 보조사업 유형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 .....	131
[그림 V-8] 예산 규모별 종합평점과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 .....	133
[그림 V-9] 신규 및 계속사업 간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	136
[그림 V-10] 일몰 및 비일몰사업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	138
[그림 V-11] 목적변경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	140
[그림 V-12] 유사중복 지적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	142
[그림 V-13] 부정수급 지적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	144
[그림 V-14] 종합평점과 하위 점수의 변화 .....	151
[그림 V-15] 종합평점과 하위 점수의 상관관계 .....	152
[그림 V-16] 이항선택모형 추정결과 .....	153
[그림 V-17] 보조사업 유형별, 분야별 사업 타당성과 평가등급 프로빗 모형 .....	154
[그림 V-18] 규모별, 분야별 사업 타당성과 평가등급 프로빗 모형 .....	155
[그림 V-19] 회계별, 분야별 사업 타당성과 평가등급 프로빗 모형 .....	156

[그림 VI-1]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개편안 .....	160
[그림 VI-2] 사전 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 개편안 .....	161
[부그림 1] 분야별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간 관계 비교(log예산) .....	194
[부그림 2] 분야별 예산 규모와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log예산) .....	196
[부그림 3] 회계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log예산) .....	198
[부그림 4] 보조사업 유형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log예산) ..	199
[부그림 5] 신규 및 계속사업 간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	201
[부그림 6] 일몰 및 비일몰사업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	202
[부그림 7] 목적변경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	203
[부그림 8] 유사중복 지적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	204
[부그림 9] 부정수급 지적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	205

---

# I.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고보조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는 2011년 ‘국고보조금사업 존치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평가의 명칭은 2012년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로 변경되었고, 2016년에는 다시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sup>1)</sup> 그 명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 제도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연장과 존속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업 재정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지난 12년을 두고 보더라도 보조사업 규모는 2011년 43.7조원에서 2022년 102.3조원으로 약 2.35배 증가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나라도움, 「통계센터」 국고보조금).

국가를 대신하여 사무 및 사업 수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법인·단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의 법적 성격을 감안할 때, 국가 사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확대도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미 100조원을 초과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최근 국가채무 비율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

1) 국고보조사업 평가 제도의 변화에 관해서는 원종학 외(2021) 참조.

확보하려는 현 정부의 계획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사업 역시 지출구조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대한 책임은 재정당국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합리적 관리와 운영을 온전하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국고보조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와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과정의 의미를 갖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제도로서의 취지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재정에 미치는 국가보조금의 중요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 평가가 원래의 목적대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실증분석에 기반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고보조금 평가에 관한 연구의 대다수는 제도의 한계와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 반면,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연구가 제한적인 원인 중 한 가지는 국고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구축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2021년 연구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변천과 더불어 2015~2019년 5년 동안의 국고보조금 평가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연도별·부처별·분야별 평가결과, 예산 삭감 규모, 보조사업 삭감 유형, 불용·유사중복·부정수급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1년 연구가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으나, 평가제도 도입 후 전체 기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지 못한 점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반면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도입된 첫해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장평가결과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보조사업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시사점 도출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구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평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어떠한 효과성을 발휘하였는지 그리고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본 보고서의 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국고보조금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 국고보조금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현황을 설명한다. 우선 이론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재화 및 서비스의 외부성 (externality)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적정수준과 개인의 적정수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더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 보조금에 포함되는 여러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 법률이 지니는 모호성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상 보조금이 구분되는 방식 및 국고보조금의 추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행연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평가의 평가항목과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평가제도가 지니는 정성적 사항에 대한 일관성 유지 등 평가와 관련한 실제적 문제점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2011~2021년까지 실시된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2011~2021년까지 11년 동안 진행된 국고보조금 평가는 매년 같은 문항, 같은 양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연도에 따라 전년도 평가에 대한 개선사항,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가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변화였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의 평가항목 및 결과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 및 결과를 어떻게 표준화하였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과 이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데는 꼭 있어야 할 내용이라 하겠다.

표준화 작업 외에 제Ⅲ장에서는 각 연도별 평가항목과 평가결과를 아울러 같이 제시하였다. 연도별 평가 기준표를 정리·제시하는 것은 각 연도의 평가항목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의 제고 및 제Ⅳ장에서 제Ⅵ장까지의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Ⅳ~Ⅵ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및 이에 근거한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제Ⅳ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평가결과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Ⅱ장에서도 국고보조금의 추이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였으나, 제Ⅳ장에서는 전체 재정운영의 흐름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예산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전체 예산의 흐름 가운데 국고보조금의 추이를 유형별, 회계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에 어떤 추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제Ⅴ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평가결과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 타당성 평가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규모의 적정성은 특정한 추세가 보이지 않았다. 관리 적정성 점수는 증가하고 있어 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요인에 더하여 비평가요인이 평가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증가와 감소 경향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방·교육·문화관광은 종합 평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계별로는 특별회계가 기금이나 일반회계에 비해 평가결과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본보조가 경상보조보다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과 지자체 보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산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대규모 예산 사업이 규모가 작은 예산사업에 비해 평균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VI장에서는 국고보조금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을 한다. 우선 현재 거의 유사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사전 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후평가의 성격인데 반해 사전 적격성 심사는 사전평가로, 평가의 주안점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행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세부 평가항목을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VII장은 분석 결과의 요약 및 국고보조금 연장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한다.

---

## Ⅱ. 보조금제도 및 평가에 관한 이론과 현황

---

### 1. 보조금의 정의

#### 가. 이론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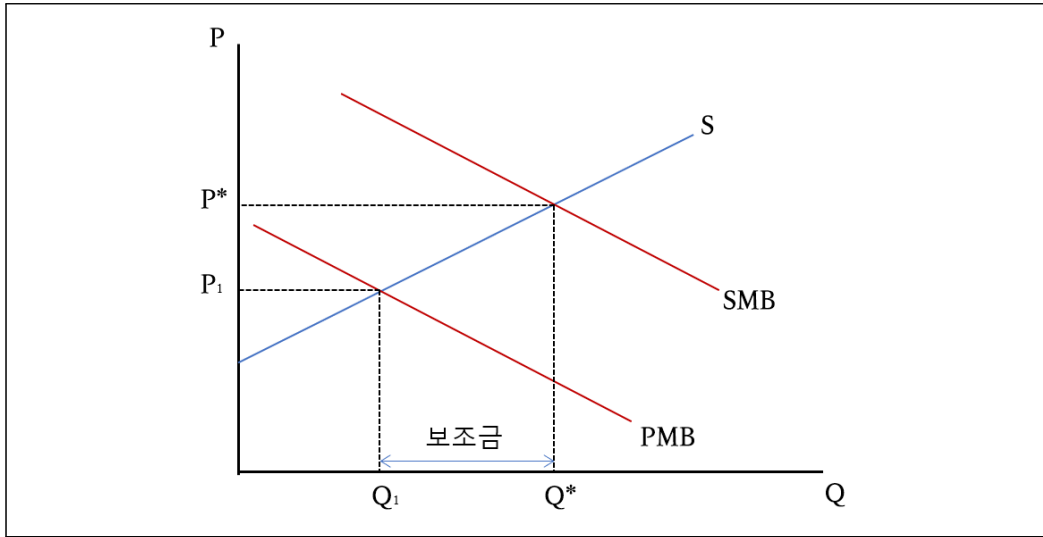
보조금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외부성(externality)과 관련하여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사회적 한계편익(Social Marginal Benefit, SMB)이 사적 한계편익(Private Marginal Benefit, PMB)보다 큰 경우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가 발생하며, 이 경우 보조금은 그 재화 및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에서 생산·공급되도록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sup>2)</sup>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급(S)과 개인적 수요(PMB)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SMB)를 나타낸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효용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S(공급곡선)와 PMB(Private Marginal Benefit)의 교차점, 즉 P1의 가격에서 Q1의 규모를 소비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S와 SMB(Social Marginal Benefit)의 교차점, 즉 P\*의 가격에서 Q\*의 규모를 소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P\*-P1만큼의 보조금을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인 Q\*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P\*-P1을 보조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에서 생산·공급되도록 그 가격을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권오성 외(2005), p. 271; 권오성(2016), p. 58.

[그림 II-1] 외부효과와 보조금



자료: 저자 작성

정부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보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여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보조한다. 이것을 현금보조라고 한다. 둘째,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업 또는 가계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을 보조한다. 이것을 신용보조 또는 이차보전이라고 한다. 셋째, 정부는 기업 또는 가계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보조한다. 이것을 조세보조라고 한다. 넷째, 정부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기업의 출자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보조한다. 이것을 지분보조라고 한다. 다섯째, 정부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이것을 현물보조라고 한다. 여섯째, 정부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한다. 이것을 구매보조라고 한다. 일곱째, 정부는 가격통제, 진입장벽 등의 규제를 통하여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보조한다. 이것을 규제보조라고 한다.<sup>3)</sup>

위와 같이 정부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보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만을 보조금

3) 권오성·박민정(2009), pp. 284~286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조금의 정의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광의의 보조금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생산·공급되도록 그 가격을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이고, 협의의 보조금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보조하기 위하여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나. 법률적 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sup>4)</sup>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정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보조금을 교부하는 주체는 ‘국가’이고, 둘째, 보조금을 교부받는 대상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며, 셋째, 보조금의 용도는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제한되고, 넷째, 보조금의 교부 특성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여도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보조금의 유형을

4) 「국가재정법」 [별표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고용보험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충통신발전기본법, 보험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무역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진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주택도시시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청소년기본법, 축산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석면피해구제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국유재산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68개 개별 법률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규정하지 않는다.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은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이다. 그러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 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담금’이란 용어에 대해 「지방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부담금 정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재정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용어 구분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급부금’의 경우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의 한 가지 유형이고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뿐 보조금, 부담금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부금의 지정)에서는 “급부금은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sup>5)</sup>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담금, 급부금 등과 같은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의 유사용어로서 지원금, 교부금, 장려금, 위탁금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과 실무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최초로 제정된 관련법은 1963년에 제정된 「보조금관리법」이

5)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직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한다. ② 직접직불제도는 경영이양직접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직불제도 및 발농업직접직불제도로 구분한다.

다. 동법은 일본에서 1955년에 제정된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과 거의 유사하다(권오성, 2016, p. 38). 따라서 「보조금관리법」에서 나타나는 부담금, 급부금 등과 같은 용어는 일본법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예산과목상의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중앙관서의 예산과목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목), 민간자본보조(320-07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해외경상이전(340-01목), 해외자본이전(340-03목)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예산과목상 보조금

목번호	목	내역
320	민간 이전	01. 민간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07. 민간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30	자치 단체 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340	해외 이전	01. 해외경상이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03. 해외자본이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2. 해외 출자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1. 5., pp 364~368.

그러나 예산과목상 보조금으로 분류되는 보조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들은 다른 예산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여권 발급’사업은 예산과목상 보조금(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330-04목)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이 외에도 특히 기준보조율 100%인 보조사업은 민간위탁사업(320-02목),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목), 자치단체 대행사업(330-04목), 보전금(310-04목)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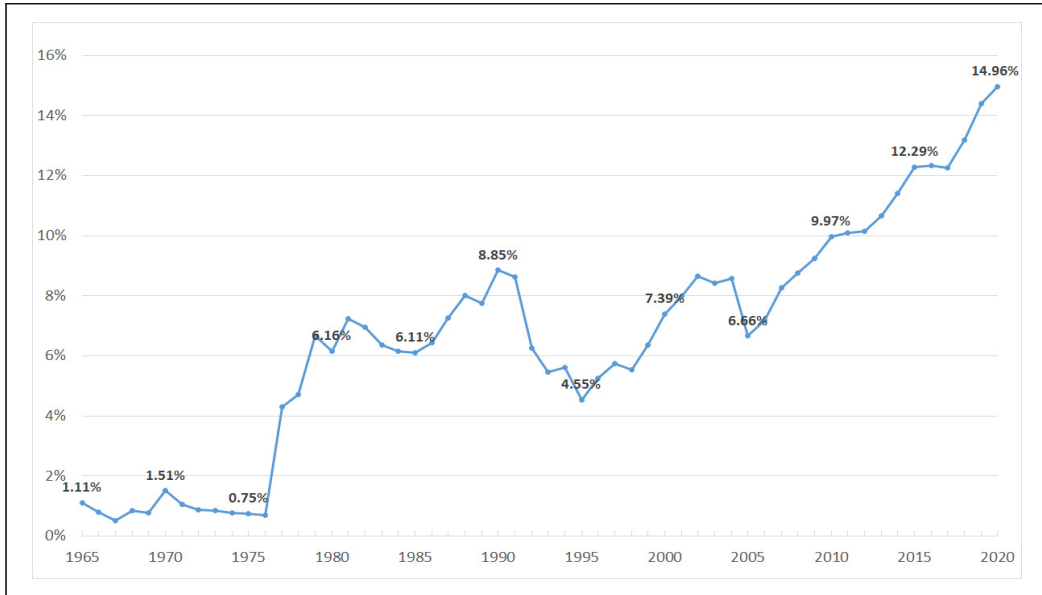
이와 같이 예산당국이 예산세목을 사업내용과 불일치하게 사용하는 이유를 권오성(2016, p. 83)은 “각각의 사업특성에 맞는 세출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관행적 요인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부처가 위탁사업, 대행사업 등에 대한 사업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려는 경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2. 보조금의 활용

### 가. 보조금 규모의 추이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일반회계 총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보조금으로 지출한 비율의 추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II-2]이다. 정부 일반회계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은 1965년(1.11%)부터 1976년(0.70%)까지 1%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7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4.29%로 늘어났다. 1980년대에는 보조금 비율이 6~7%를 유지하다 80년대 후반 보조금 비율이 다시 증가하여 1990년도에 8.85%까지 증가했다. 1992년도부터 보조금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에는 4.55%까지 떨어졌으나 1996년부터 다시 보조금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 8.58%까지 증가하였다. 2005년에 다시 6.66%까지 감소했으나 그 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96%에 달하고 있다. 지난 약 60년의 기간 동안 보조금 규모의 변동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 특히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림 II-2] 일반회계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자료: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1966~1994; 재정경제원, 「예산개요 참고자료」, 1995~1997; 예산청, 「예산개요 참고자료」, 1998~1999;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0~2007; 기획재정부,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8~2020.

## 나. 보조금의 목적과 활용분야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책 유인수단이고 둘째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정부가 정책유인수단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를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만약 보조금제도 없이 복지분야 서비스를 전국적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부처의 새로운 지방 집행기관 또는 지방청을 국민의 수요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를 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면, 새로운 지방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종종 보조금이란 정책유인수단을 활용한다.

정부가 보조금을 활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이다. 지역 인프라는 지방정부의 책임하에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건설되지만, 종종 지역 인프라가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역 인프라의 파급효과에 따라 국가가 지역 인프라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때 사용되는 정책수단이 보조금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활용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신규사업의 보급·장려를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아마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 그런 시설의 설치를 반대할 것이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은 그런 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보급·장려를 위해서 보조금이 사용된다.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두 번째 목적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다. 이 보조금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정자립기반이 풍성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을 갖는다.

〈표 II-2〉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의 기간에 걸쳐 분야별 보조금 예산액(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과 전체 보조금 중 개별 분야 보조금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2017년 보조금 총액은 약 60조였고 2022년 보조금 총액은 100조가 넘어서 지난 6년간 약 72%의 증가율을 보인다. 또한 분야별 경중은 있을지라도, 15가지 모든 지출 분야에서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6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최저 51.4%부터 최고 59.18%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두 번째 높은 비중의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이며, 최저 10.64%부터 13.72%까지의 비중을 보인다. 세 번째 분야는 환경 분야이며, 최저 6.08%부터 최고 7.72%까지의 비중을 보인다. 네 번째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이며, 최저 5.32%부터 최고 7.66%까지의 비중을 보인다.

〈표 II-2〉 분야별 보조금 예산액(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단위: 억원, %)

분야	예산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지방행정	7,876 (1.32)	7,803 (1.17)	7,800 (1.00)	9,135 (1.05)	19,467 (1.99)	16,840 (1.65)
공공질서 및 안전	9,638 (1.62)	9,869 (1.47)	11,147 (1.43)	9,032 (1.04)	18,228 (1.86)	12,746 (1.25)

〈표 II-2〉의 계속

분야	예산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통일·외교	7,876 (1.32)	7,803 (1.17)	7,800 (1.00)	9,135 (1.05)	19,467 (1.99)	16,840 (1.65)
국방	1,032 (0.17)	1,093 (0.16)	1,284 (0.16)	1,126 (0.13)	417 (0.04)	465 (0.05)
교육	1,398 (0.23)	1,385 (0.21)	2,460 (0.32)	3,710 (0.43)	6,429 (0.66)	10,057 (0.98)
문화 및 관광	45,693 (7.66)	41,330 (6.17)	46,504 (5.97)	49,645 (5.72)	52,034 (5.32)	55,002 (5.37)
환경	45,294 (7.60)	45,102 (6.74)	47,338 (6.08)	60,810 (7.01)	67,171 (6.86)	79,027 (7.72)
사회복지	306,429 (51.40)	378,307 (56.51)	460,974 (59.18)	511,814 (59.00)	560,407 (57.27)	556,716 (54.40)
보건	14,480 (2.43)	15,271 (2.28)	16,536 (2.12)	17,396 (2.01)	20,001 (2.04)	32,701 (3.20)
농림수산	81,775 (13.72)	83,618 (12.49)	89,548 (11.50)	99,364 (11.46)	106,925 (10.93)	108,937 (10.6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286 (4.91)	30,186 (4.51)	36,758 (4.72)	43,248 (4.99)	55,440 (5.67)	75,668 (7.39)
교통 및 물류	33,986 (5.70)	36,939 (5.52)	26,881 (3.45)	36,491 (4.21)	38,599 (3.94)	40,707 (3.98)
통신	1,791 (0.30)	1,819 (0.27)	3,838 (0.49)	1,308 (0.15)	1,874 (0.19)	1,795 (0.18)
국토 및 지역개발	7,767 (1.30)	7,168 (1.07)	18,799 (2.41)	15,108 (1.74)	21,824 (2.23)	21,004 (2.05)
과학기술	951 (0.16)	982 (0.15)	456 (0.06)	551 (0.06)	547 (0.06)	1,191 (0.12)
합계	596,221 (100.00)	669,412 (100.00)	778,979 (100.00)	867,427 (100.00)	978,545 (100.00)	1,023,464 (100.00)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e나라도움, <https://opn.gosims.go.kr/opn/ii/i001/getIL001002QView.do>, 검색일자: 2022. 11. 14.

## 다. 소결

보조금의 규모가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sup>6)</sup>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실시, 국회의원의 로그롤링(logrolling)<sup>7)</sup> 행태 그리고 행정기관의 예산극대화 행태 등을 그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중앙정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력이 우수한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이라기보다는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보조금 교부 결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보조금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보조금 규모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특정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관련법에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보조사업이 우후죽순처럼 폭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보조사업이 특정 대상(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분야의 민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로그롤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관련법 근거조항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할 때, 로그롤링 행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조적이어서 이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조금 규모의 증가 원인일 수 있다.

셋째, 예산극대화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정기관도 자신들의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자발적으로 감축할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보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조금이 특정 행정기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그 기관에서 보조금 규모의 삭감은 조직과 인력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관은 매년 보조금 규모를 확대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며, 축소할 인센티브는 갖지 않는다. 이것이

6) 노무현정부 초기에는 보조금개혁 때문에 보조금의 규모가 예외적으로 감소했다.

7)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나타날 전략적 행동의 하나로 자신의 선호와 무관한 대안에 투표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여당과 야당이 이권이 결부된 법안을 상호협력하여 통과시키는 '정치적 야합'을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 있다.

보조금 규모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 3. 보조금 연구의 경향

#### 가. 배경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마샬(A. Marshall)과 피구(A. C. Pigou) 등의 경제학자들은 미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시장실패와 외부효과에 따른 후생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 또는 보조금정책을 이론적으로 주장하였다.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실패의 보정수단으로서 정부에 의한 조세 및 보조금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sup>8)</sup>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비교적 풍부한 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보조금정책을 현실에서 기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세원은 관세와 소비세였다. 연방소득세가 연구적으로 연방세가 된 것은 1909년이었지만, 1939년까지 소득세는 GDP 대비 3.6%에 불과해 연방정부의 주요 세원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방정부는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세원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1943년에 소득세는 GDP 대비 15.1%로 급증<sup>9)</sup>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소득세 부과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미국경제가 전후 복구사업 등으로 인하여 매우 호황이어서 세입은 매우 풍족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풍족한 세입을 기반으로 전후 미국 연방정부는 대규모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보조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대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이 실행되자 이들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경제학, 재정학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진일보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가 활발히 발전했다.

8) 권오성·박민정(2009), p. 287.

9) 장근호(2004), pp. 26~27.

특히 Fisher는 보조금의 사용조건, 배분방법, 매칭 여부, 규모의 제한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서 보조금의 유형을 구분하고 다음의 세 가지 결론<sup>10)</sup>을 내린다. 첫째, 개방형 특정 정률(open-ended categorical matching) 보조금이 그 보조금의 목표가 특정 기능에 대한 수여기관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최상의 방법이다. 둘째, 일반 정액(general lump-sum) 보조금이 하위정부 사이에 자원을 재배분하기 위해서는 정률보조금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셋째, 특정 정액 폐쇄형 정률(categorical lump-sum and closed-ended matching)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나. 우리나라 보조금 연구의 경향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 관련 선행연구는 보조금이 투입되는 복지, 산업, 건설 등 다양한 정책분야의 정책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재정효과에 관한 연구와 보조금의 주요 통로인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의 재정기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면 권오성·박민정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학술정보(KISS DB)에서 보조금으로 검색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학회 등 발표논문 중에서 146편을 표본으로 <표 II-3>을 만들었다.<sup>11)</sup>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연구 146편을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지방정부와 관련된 지방재정조정 보조금에 대한 연구가 14.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에서의 보조금 사례에 대한 연구가 13.70%, 농·수산업 분야에서의 보조금 사례에 대한 연구가 13.01%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정보통신, 무역·수출 분야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II-3>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연구 현황

분야	일반	환경	농업 수산업	무역협정/수출	정보통신	R&D	에너지	철강조선
편 수	12	5	19	14	16	6	1	4
비율(%)	8.22	3.42	13.01	9.54	10.96	4.11	0.68	2.74
분야	복지	노동	NGO	지방 정부	해외 사례	기타	총계	
편 수	9	2	8	21	20	9	146	
비율(%)	6.16	1.37	5.48	14.38	13.70	6.16	100	

자료: 권오성·박민정(2009), p. 297.

10) Fisher(2016), pp. 233~234.

11) 권오성·박민정(2009), pp. 296~298.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의 운영관리체계에 관한 관심은 1963년에 「보조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의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2011년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의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로 변경되었고 2021년의 개정으로 보조사업 평가결과의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2013년, 2014년, 2018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의 부정수급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보조금의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행정학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며 운영 및 관리체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보조사업 관리자, 보조사업구조 그리고 보조사업자를 주목<sup>12)</sup>한다. 보조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사업은 진공상태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즉 정부의 정책 또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이 저절로 실행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관리자)이 그 정책 또는 제도를 운용한다. 따라서 공무원(관리자) 자체가 그 사업의 성과달성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한 보조사업의 특성상, 다단계의 사업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구조가 복잡할수록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조사업구조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누가 보조사업자가 되느냐는 보조사업 관리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그 연구 결과가 보조사업평가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부표 1>에서 보듯이, 현행 보조사업 전체 평가항목 중 ‘관리의 적정성 분석’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다. 이것은 보조사업 관리 부분이 보조사업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보조사업구조가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

12) 권오성·탁현우(2020), pp. 38~39.

규정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규칙들은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보조금 사용방법,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실적보고서 심사, 보조사업 집행점검 등)과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보조금 반환 및 제재에 관한 조항,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들 중 대부분이 ‘관리의 적정성 분석’의 평가항목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II-4>처럼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조금의 유형은 Fisher<sup>13)</sup>가 제시한 보조금의 유형으로서, 보조금의 재정효과 또는 재정기능에 초점을 맞춘 유형분류이다.

〈표 II-4〉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서의 보조금의 유형

분류	종류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특정보조금 (Specific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함
	일반보조금 (General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함
지방비 부담방식	정률보조금 (Matching Grants)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사업비 일정 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임
	정액보조금 (Lump-Sum Grants)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임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개방형보조금 (Open-Ended Grants)	중앙정부가 부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임
	폐쇄형보조금 (Closed-Ended Grants)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해서 과잉공급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음

13) Fisher(2016), p. 220.

〈표 II-4〉의 계속

분류	종류	
보조율의 차등	일률보조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함
	차등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임
보조금의 교부조건	특정보조금 (Specific Grants)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를 들어,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임
	포괄보조금 (Block Grants)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를 요구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0, pp. 6~8.

Fisher(2016)가 제시한 보조금의 유형은 보조금의 재정효과 또는 재정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보조사업의 관리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관리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관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유형분류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권오성·탁현우(2020)는 관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성격, 수급주체, 보조사업자의 특성, 보조사업의 전달체계, 예산구조, 보조사업의 기능, 공모방식 등”을 제시<sup>14)</sup>한 바 있다. 각 기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은 〈표 II-5〉와 같다.

〈표 II-5〉 관리적 특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

분류	종류
사업의 성격	현물급여사업
	현금급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수급 주체	개인수급자
	(민간)기관수급자
보조사업자 특성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사업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사업
	보조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인 사업
전달체계	전달체계가 많은 사업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

14) 권오성·탁현우(2020), pp. 20~21.

〈표 II-5〉의 계속

분류	종류
예산구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
	물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
	예산 규모가 큰 사업
보조사업의 기능	보건복지
	고용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교통SOC
	문화관광
공모방식	공모방식
	비공모방식

자료: 권오성·탁현우(2020), p. 21.

## 4. 보조사업 평가결과의 타당성 문제

보조사업 평가결과의 타당성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평가지표와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한다.

### 가. 평가요인과 비평가요인

보조사업 평가결과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요인과 평가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평가요인이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명시적으로 측정되는 평가항목,<sup>15)</sup> 평가항목의 가중치 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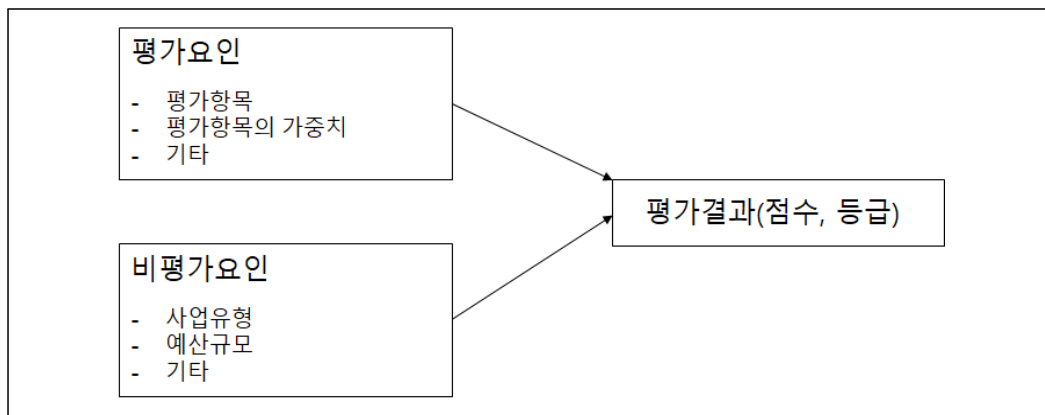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조사업의 타당성 부문이고 둘째는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부문이다. 보조사업의 타당성 부문에는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효과성’, ‘보조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포함된다.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부문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15) 〈부표 1〉을 참고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포함된다.

비평가요인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명시적으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업유형, 예산 규모 등을 비평가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요인/비평가요인과 평가결과 사이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II-3]과 같다. 평가요인과 비평가요인이 각각 평가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평가결과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림 II-3] 평가/비평가요인과 평가결과와의 관계



자료: 공동성 외(2007), p. 40을 일부 수정

## 나. 정성평가의 문제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sup>16)</sup>을 살펴보면 모두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역량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결과의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가위원 1인당 평균 평가사업의 수는 11.6개이고 평가위원 1인당 평균 평가사업 예산은 3,107.0억원이다. 2015년을 제외한다면 평가사업의 수와 평가사업의 예산 규모 측면에서 평가위원의 보조사업 평가를 위한 업무량이 유사하게 설정됨을 알 수 있다.

16) <부표 1>을 참고

〈표 II-6〉 연도별 평가단 규모, 평가사업 수 및 사업 예산

(단위: 명, 개, 억원)

평가연도	평가단 수	평가대상 사업 수	평가대상 사업 예산	평가위원 1인당 평가사업 수	평가위원 1인당 평가사업 예산
2011년	27	254	58,852	9.4	2,179.7
2012년	33	304	38,582	9.2	1,169.2
2013년	37	328	53,150	8.7	1,436.5
2014년	37	422	105,057	11.4	2,839.4
2015년	56	1,422	491,380	25.4	8,774.6
2016년	36	472	124,888	13.1	3,469.1
2017년	27	215	41,329	8.0	1,530.7
2018년	35	375	130,524	10.7	3,729.3
2019년	40	449	115,463	11.2	2,886.6
2020년	28	241	85,526	8.6	3,054.5
평균	35.6	448.2	124,475.1	11.6	3,107.0

자료: 원종학 외(2021), pp. 46~47.

그러나 정성평가결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업무량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최대한 구체화함으로써 정성평가의 주관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항목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전혀 다른 평가위원이 평가하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행 보조사업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의 유사성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적격성 심사<sup>17)</sup>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전 적격성 심사는 각 부처에서 구상 중인 신규 사업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정하는 사전평가제도의 일종이다. 반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 사업의 효과성, 실적 등을 평가하는 사후평가제도의 일종이다. 사전평가제도와 사후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체계 또한 차별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두 평가제도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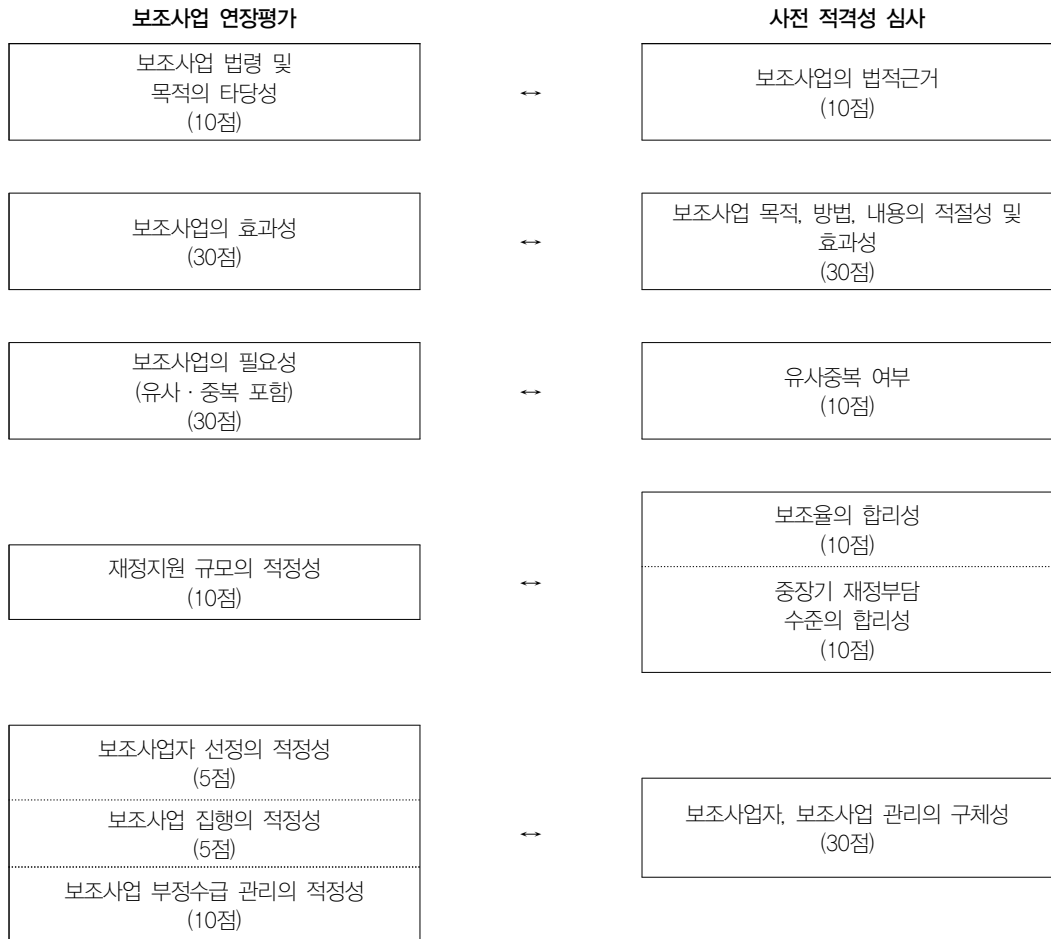
17)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표는 〈부표 2〉를 참고

항목과 배점은 매우 유사하다.

[그림 II-4]에서 보듯이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10점)'은 사전 적격성 심사의 '보조사업의 법적근거(10점)'와 유사한 평가항목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보조사업의 효과성(30점)'과 사전 적격성 심사의 '보조사업 목적, 방법,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30점)' 또한 유사해 보인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보조사업의 필요성(30점)'과 사전 적격성 심사의 '유사중복 여부(10점)'는 유사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보조사업의 필요성'의 세부평가항목으로 유사중복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10점)'은 사전 적격성 심사의 '보조율의 합리성(10점)'과 '중장기 재정부담수준의 합리성(10점)'과 유사한 평가항목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5점)',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5점)' 그리고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10점)'은 모두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관리적 측면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사전 적격성 심사의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관리의 구체성(30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4]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 Ⅲ. 국고보조사업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 1. 평가항목과 평가결과 표준화

#### 가. 평가항목 표준화

2011년부터 국고보조사업 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연도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른 경우가 많아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로 했던 작업은 서로 다른 평가항목의 표준화였다. 이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크게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준화하였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평가항목을 보면 1-1 사업목적 명확성, 1-2 법적근거 구체성, 1-3 사업의 필요성, 2-1 재정지원 필요성, 2-2 지원규모 적정성, 3-1 사업내용 명확성, 3-2 추진방식 적절성, 3-3 관리감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sup>18)</sup> 이 가운데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1-1, 1-2, 1-3, 2-1, 3-1 항목을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2-2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는 3-2와 3-3을 포함하였다.

2014년은 2011~2013년과 거의 동일하나, 평가결과 환류가 3-4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추가된 새 항목은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포함시켰다.

2015년에는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두 가지 평가지표,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의 다섯 가지 평가지표, 1-3. 보조사업 구성의 명확성과 실효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3-1. 보조율의 합리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를 포함하였다.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에는 3-1. 중장기 재정부담 합리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의 네 가지 평가지표를 포함하였다.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2015년은 매우 특이한 해였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

18) 구체적인 항목의 내용은 2절을 참고

운용평가 대상사업을 기존의 당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존치 여부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고, 평가단을 기존의 학계 중심의 평가위원과 더불어 시민단체 등 실무자 평가위원도 활용한 해였다. 특히 2015년 예산 보조금 전체(세목 기준 2,240개)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의 존속 여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경상/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세부사업 기준(1,796개 또는 1,815개)으로 평가하고, 법정지출사업(33개)은 기초노령연금 등 심층평가가 적절하기 때문에 존치 평가에서 제외한 해였다.

또한 평가규모가 늘어나 평가방식에 비용-편익 개념을 적용하여, 10억원 이하의 소액 사업과 1천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한 평가 투입 시간 및 평가방식을 구분하여, 1단계에서 보조금을 유형화하고, 2단계에서 유형별 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보조사업을 소규모사업(50억원 이하 사업), 중규모사업(50억~200억원 사업), 대규모사업(200억원 초과 사업)으로 구분하고, 2단계에서 보조금 규모별로 '사업 타당성 평가-관리의 적정성 평가-부담의 적정성 평가'로 평가방식을 차별화하였다. 특히 소규모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 또는 일몰제 적용 여부만 판정하고, 중규모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관리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평가하고, 대규모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관리의 적정성+규모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종합점수의 합산 방식에 주의가 필요했다.

2016년에는 평가지표가 대폭 변경되었는데,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보조사업자선정에서 절차마련과 절차준수 평가지표가 세분화되고 (민간)보조사업자선정에서 절차마련과 절차준수 평가지표가 세분화되었다. 집행의 적정성에서도 규정마련, 집행점검 등 평가지표가 세분화되었다. 사후관리도 규정마련과 규정준수 등 평가지표가 세분화되었고, 부정수급도 발생정도가능성과 대책마련 등 평가지표가 세분화되었다. 2016년도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에는 법적 근거의 명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목적의 타당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보조사업의 효과성의 세 가지 지표, 보조사업의 필요성 네 가지 지표가 포함되었다.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에는 재정지원규모의 합리성의 네 가지 평가지표가 포함되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평가지표의 소폭 변경이 있었는데,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에는 법적근거의 명확성 두 가지 평가지표, 목적의 타당성 두 가지 평가지표, 보조사업의 효과성의 세 가지 평가지표, 보조사업의 필요성의 네 가지 평가지표 등이 포함되었다.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에는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의 네 가지 평가지표가 포함되었으며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는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의 네 가지 평가지표, 보조사업집행의 적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사후관리의 적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부정수급관리 적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가 포함되었다.

2019년에는 여기에 사회적 가치라는 평가지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포함하였다.

2020년에도 평가지표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에는 법령 및 목적 타당성 두 개 평가지표, 보조사업의 효과성의 세 가지 평가지표, 보조사업의 필요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사회적 가치 가산점이 포함되었으며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에는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의 세 가지 평가지표가 포함되었으며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는 사업자선정 적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사업집행 적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부정수급관리 적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자체노력 가산점이 포함되었다.

끝으로 2021년도에는 평가지표의 소폭 변화가 있었는데,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에는 법령 및 목적 타당성 두 개 평가지표, 보조사업의 효과성의 세 가지 평가지표, 보조사업의 필요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사회적 가치 가산점이 포함되었으며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에는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의 네 가지 평가지표가 포함되었으며,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는 사업자선정 적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사업집행 적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부정수급관리 적정성의 두 가지 평가지표, 자체노력 가산점이 포함되었다.

## 나. 평가결과의 표준화

평가결과도 연도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2011년의 평가에서는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즉시폐지, 통폐합 등이 있었다.

2012년에는 감축, 감축사업방식 변경, 단계적폐지, 단계적폐지사업방식 변경, 단

계적폐지통폐합사업방식 변경,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즉시폐지, 즉시폐지통폐합사업방식 변경, 통폐합, 통폐합사업방식 변경 등 내역 사업에 대한 세부평가가 있어서 평가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3년에는 감축, 단계적폐지,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즉시폐지, 통폐합, 혼합판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평가결과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2016년에는 평가결과의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감축, 감축사업방식 변경, 단계적폐지, 단계적폐지감축, 단계적폐지사업방식 변경, 단계적폐지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즉시폐지, 즉시폐지사업방식 변경, 통폐합, 통폐합감축, 통폐합감축사업방식 변경, 통폐합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2017년에는 감축, 감축사업방식 변경, 단계적폐지,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즉시폐지, 통폐합사업방식 변경 등의 평가결과가 있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감축, 감축사업방식 변경, 단계적폐지, 단계적폐지사업방식 변경,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즉시폐지, 통폐합 등의 결과가 있었고, 2020년에는 감축, 감축사업방식 변경, 단계적폐지, 단계적폐지감축사업방식 변경, 단계적폐지사업방식 변경, 단계적폐지통폐합사업방식 변경,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즉시폐지, 통폐합, 통폐합감축사업방식 변경, 통폐합사업방식 변경 등의 결과가 있었다. 2021년에는 다양한 평가결과가 제시되어 완전히 새로운 재코딩이 필요하였다.

평가결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복수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등으로 강도를 정리하였다.

## 다. 기타 입력 사항

2011년과 2013년에서 1-1. 불용액(이·전용)의 불용액, 이용액, 전용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① 예산자료설명서의 결산내역, ② 기초조사보고서 4. 사업예산 표 아래의 불용액 내역 ③ 평가보고서 등의 순으로 내용을 확인하였다. 1-2. 이·전용이 합산된 결산내역의 경우 이용액 칸에 그대로 표기하였고, 예산액은 기초조사보고서의 4. 사업예산 표를 기준으로 평가결과표(엑셀)와 비교하였으나, 값이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3-1. 국고율은 보조사업 유형이 혼합이거나 지역별, 내역사업별로 보조사업이 나뉘진 경우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최저값~최고값(범위)을 표기한 후 보조유형별 또는 지역별 보조율을 입력하였다.

3-2. '정액' 보조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정액 표기 후 전년도 보조율을 표시하였고, 3-3. 예산자료설명서의 전년도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값이 없는 경우 'NA' 표기와 함께 작성 연도의 국고율이 있으면 고려하였다. 사업코드는 작성 연도와 전년도가 서로 다른 경우 최신 연도 코드를 사용하였고 전년도 코드를 별도로 사용하였다. 평가결과표(엑셀)와 기초조사보고서의 값이 다른 경우도 예산액, 보조유형, 세부사업 구분 등으로 구분하였다. 대통령공약사업, 국정과제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입력하였다.

## 2. 연도별 평가 특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앞 절에서 2011~2021년까지의 평가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아울러 평가결과<sup>19)</sup>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가. 2011년

2011년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성과 평가를 시행한 첫 해로 보조금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보조사업 운용평가가 시행되었다.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일반재정사업 전반에 대해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05~2010년까지 국고보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틀에서 평가하였다.<sup>20)</sup>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에 평가를 별도로 설치하여 평가를 한 이유는 정부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19) 연도별 평가결과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1~2015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6~2021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0) 2005~2010년까지 국고보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틀 내에서 통일된 평가를 하되, 국고보조금에 대해 추가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방식 등에 대해서는 원종학 외(2018)를 참조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정비 차원에서 2010년 예산안 편성 시 보조사업에 대해 일몰 심층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828개 사업 중 413개(49.9%) 사업에 대해 폐지(66개), 집행방식 개선(34개), 감액(313개) 조치를 하였고, 전년 대비 2,926억원(△3.7%)을 감축(기획재정부, 2010)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보조금 존치 평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3년 주기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와 제도 운용 목적에서 차별적으로 접근하였는데,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국가의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외부성과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즉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렵지만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지와 국가가 보조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인지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상이한 평가결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평가 기준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점형태가 아닌 예/아니오 응답방식으로 평가되었다. 1단계는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항목으로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2)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한지 3)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로 점검하여 사업 그 자체에 대해 판단하였다. 2단계는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항목으로 1)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2)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절한지를 살펴보아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점검하였다. 3단계는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항목으로 1) 사업내용(세부사업 및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2)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한지 3)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 존재 여부 및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 후 정부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관리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구조로 평가가 설계되었다. 각 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사례는 예시적 설명을 통해 보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1〉 2011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예시적 설명
<b>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b>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가 분명하고, 사업의 수혜자, 지역적 범위 등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면 “예”</li> <li>○ 사업의 상위목표(예,성과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있으며,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면 “예”</li> </ul>
1-2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별표1의2) 지원제외 사업은 “아니오”</li> <li>○ WTO협정 상 금지보조금,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오”</li> <li>-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 시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li> <li>○ 자체적인 수입증대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으로 총당이 가능한 사업은 “아니오”</li> <li>○ 교부 목적 부적합 단체에 지원한 사업은 “아니오”</li> <li>○ 출연기관의 경우 다음의 경우*외에는 “아니오”(일몰원칙)</li> <li>* 출연기관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사업자로 결정된 경우</li> <li>**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li> </ul>
1-3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까지 사업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아니오”</li> <li>○ 여건 변화로 인해 차년도 이후 사업의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아니오”</li> <li>○ 사업의 공공성(공익성) 및 외부성(지역적 수혜 범위 및경제·사회적 계층간 파급효과 등)등을 고려할 때, 국가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미약하면 “아니오”</li> <li>○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른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그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아니오”</li> <li>○ 사업목적, 수혜대상에서 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 “아니오”</li> <li>○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 유사 사업 간 협의 등 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li> <li>○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아니오”</li> <li>○ 여타 회계·기금의 재정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오”</li> <li>○ 균특법 제34조에 따라 광특회계 지원 대상 22개 포괄보조사업)인 여타 회계·기금의 중복적인 사업은 “아니오”</li> <li>* 지역개발계정 자율편성사업으로 흡수하여 추가 재정 소요 최소화</li> </ul>
<b>2.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b>		
2-1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등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아니오”</li> <li>○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점 없이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면 “아니오”</li> <li>○ 이미 다른 명목으로 재정 지원(조세감면포함)을 받았으면 “아니오”</li> <li>○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사업 운용 규모 대비 10% 이하이고,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경우 “아니오”</li> <li>○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면 “아니오”</li> </ul>
2-2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하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적은 예산으로 수행가능하면 “아니오”</li> <li>○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면(50%이상) “아니오”</li> <li>○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재원부담비율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아니오”</li> </ul>

〈표 Ⅲ-1〉의 계속

	배점	예시적 설명
<b>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b>		
3-1 사업내용(세부사업 및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세부내용이 명확하고, 사업추진방식, 서비스전달체계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관리·통제되는지가 분명하면 “예”</li> <li>○ 사업의 세부내용이 사업의 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 “예”</li> </ul>
3-2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면 “아니오”</li> <li>○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선정절차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니오”</li> <li>○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반영하지 않았으면 “아니오”</li> <li>○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시 지자체 간 상호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으면 “아니오”</li> </ul>
3-3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오”</li> <li>○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심각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아니오”</li> </ul>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2011, pp. 31~33.

평가는 크게 세 차례의 평가와 조정회의로 진행되었는데, 1회의 서면평가와 사업담당자 및 예산담당자 중심의 2회의 대면평가, 평가단의 총괄 조정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평가는 서면평가로 사업당 2인의 평가위원들이 배정되어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와 기초조사보고서를 검토 후 정상추진과 심층평가 필요 사업으로 구분한다.

2차 평가는 ‘심층평가 필요 사업’을 대상으로 두 평가위원과 간사/총괄간사가 부처의 사업담당자와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① 정상추진 ② 조건부 존치(단계적 감축, 사업내용/방식 변경, 기타 개선) ③ 폐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다. 평가결과, ②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상응한 개선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개선 보고서’ 제출을 통보하고 다음 연도 재심사 대상이 되며 ③ 폐지 사업의 경우 ‘소명의견서’ 제출을 통보한다.

3차 평가는 대면평가방식으로 진행하며 조건부 유지 및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개선보고서/소명의견서에 대해 해당 사업 평가위원과 간사/총괄

간사가 부처 사업담당자 및 예산담당자와 질의 답변하여 ① 정상추진 ② 조건부 존치(단계적 감축, 사업내용/방식 변경, 기타 개선) ③ 폐지(사업개선안 불승인) 중에서 판정한다.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3차 평가의견서, 소명의견서, 사업개선보고서(수정안)를 토대로 평가단장과 총괄간사 2인, 간사 2인이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① 정상추진 ② 단계적 감축 ③ 사업내용/방식변경 ④ 폐지 중 하나를 결정하여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2011년의 기초조사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조사업평가결과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 첫해였기 때문에 평가대상 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보조사업을 선별하여 평가하였는데, 부처가 제출한 평가대상 사업의 기초조사보고서상 오류가 일부 발견되었다. 또한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의견서 역시 평가위원별 하부양식 구성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관성 있는 재정 및 성과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기초조사보고서 양식도 완비되지 않아 사업정보를 데이터화하는 데 애로사항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조사보고서 양식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의 예산액만 작성하도록 하여 결산액 및 이용·전용·불용액을 보고서에서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보조사업 유형 구분 역시 부처가 직접 표기하도록 작성 양식이 구성되지 않았고, 법적근거 및 표현 부분 역시 의무사항(보조“해야 한다”)인지 재량사항(보조“할 수 있다”)인지 혹은 선언적·규범적인지(보조 관련 기타 다양한 법문 등)를 부처가 명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표 III-2〉 2011년도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양식

1. 사업기간

2. 사업목적

1)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목적

구분	사업목적
2010년	
2011년	
2012년(예상)	

〈표 III-2〉의 계속

2) 사업목적의 변경유무

변경유무	변경이유

3. 법적근거

--

4. 사업예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체사업비 (자체예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국고보조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기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편람』, 2011의 기초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양식만 발췌함

따라서 기초조사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정보들은 근거자료로 제출된 예산자료 설명서를 토대로 파악하였고, 기초조사보고서와 평가결과보고서 양자 간에 예결산액이 상이한 경우는 평가 과정에서 오차가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입력하였다.

불용·이용·전용액은 평가보고서의 수치를 우선 기재하였고,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예산자료 설명서의 결산내역, 기초조사보고서의 4. 사업예산 표 아래의 불용액 내역<sup>21)</sup> 순으로 입력하였다. 한편 이·전용액이 합산되어 결산된 경우에는 이용액 칸에 표기하였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해당 금액의 표기시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였다.

국고보조율은 기초조사보고서의 4. 사업예산 표에 기재된 보조율을 기재하였고, 보조유형이 혼합이거나 지역별, 내역사업별로 보조율을 나눈 경우 최저값~최고값(범위)을 표기한 후 보조유형별 또는 지역별 보조율을 메모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

21) 4. 사업예산 표 하단에 불용액을 작성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하였다.

어 국토교통부의 '독도지속가능 이용 및 보존사업'의 경우 내역사업별 보조율이 상이하여 50~7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 교육훈련(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는 정액지원, 민간자본보조는 50%와 90% 지원, 지자체 경상·자본 보조의 경우 국고 50% 지원되었으므로 데이터 시트에 '정액, 50~90'으로 코딩하였다. 법적표현은 이를 기입한 경우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기타'로 유형화하여, 부처가 기초조사보고서에 기입한 3. 법적 근거의 법조문을 분석하여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근거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신규 혹은 계속사업인지 여부, 일몰사업 여부, 사업목적이 중도 변경되었는지 여부,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지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기초조사보고서와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입력하였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

2011년 평가결과를 데이터화하는 과정은 평가결과가 단계별 세부 평가기준까지 예/아니오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코딩하였고, 최종판정결과는 정상추진, 사업내용/방식변경, 단계적 감축, 폐지의 네 가지가 있으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입력은 사업별 해당 최종 평정 결과를 1, 나머지는 0으로 코딩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평가결과 중 단계적폐지는 부재하므로 데이터 입력값은 없다.

2011년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22개 부처, 총 254개의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정상추진 167건(65.7%), 감축 17건(6.7%), 사업방식 변경 45건(17.7%), 폐지 25건 (9.8%)으로 판정되었다. 총예산 규모는 5조 8,852억원으로 정상추진사업의 예산 규모는 4조 6,544억원(79.1%), 감축이 2,914억원(5.0%), 사업방식 변경이 6,406억원 (10.9%), 폐지가 2,987억원(5.1%)이었는데, 예산 규모가 큰 경우에 정상추진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예산 규모가 작은 경우에 사업방식 변경과 폐지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폐지되는 25개 사업 중 10개(40%)가 2012년에 폐지되며,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예산 규모로 보았을 때 통폐합되는 예산 규모가 2,594억원으로 폐지되는 사업 예산액의 86.8%를 차지한다.

국고보조사업을 민간, 지자체, 지자체·민간 세 가지 보조방식으로 구분하여 볼 때, 민간사업의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폐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지자체·민간 방식의 폐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업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사업이 10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은 환경부(94.1%), 국가보훈처(86.7%), 복지부(71.1%), 지식경제부(72.7%)의 사업들이었고, 낮은 사업은 중소기업청(25.0%), 국토해양부(27.3%), 교과부(33.3%), 행안부(42.9%), 농촌진흥청(50.0%) 소관의 사업들이었다. 4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규모에 따른 정상추진 정도를 살펴보면, 추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은 환경부(99.8%), 국가보훈처(99.5%), 복지부(96.4%) 소관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은 지식경제부(36.0%), 문화부(32.0%) 소관이었다.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2012년 예산안 편성 시 87개의 개선 필요 사업은 2011년 대비 1,268억원 삭감(△10.3%)되었다.

## 나. 2012년

2011년 7월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되었다. 보조금 일몰제란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폐지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sup>22)</sup>이다.

2012년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전년도에 실시된 평가체계 및 절차를 큰 틀에서 준용하여 진행하였다. 평가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나, 평가결과의 판정 방식은 ① 정상추진 ② 단계적 감축 ③ 사업내용/방식변경 ④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① 정상추진 ② 단계적 감축 ③ 사업내용/방식변경 ④ 즉시폐지 ⑤ 단계적폐지 ⑥ 통폐합으로 폐지 하부 유형을 세분화하였고,<sup>23)</sup> 최종 판정 시 복수 응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평가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표 III-1>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의 기초조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평가결과 DB를 구축한 방식 역시 전년도 입력 기준을 준용하여 구성요소별로 코딩하였다. 다만 전년과 달라진 최종 판정의 복수 응답 허용을 반영하여 정상추진·사업추진방식변경, 방식변경·통폐합 등 복수로 응답된 평가결과의 해당 항목에 모두 1로 표기하였다. 예를

22) 기획재정부, 『2012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p. 15.

23) ②의 단계적 감축과 ③의 사업내용/방식 변경을 '조건부존치'라고 할 수 있다.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산업유통지원 사업의 경우 최종판정결과가 감축과 사업 방식 변경으로 복수 응답되어 각각에 1을 코딩하였다.

한편 전년과 달리 기초조사보고서상 불용액 여부를 기재하도록 양식이 보완되었고, 평가보고서에도 최근 3개년의 불용·이용·전용액과 전년도 결산액, 당해 연도 예산액 및 차년도 예산요구액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예결산액의 정확성이 다소 높아졌다.

〈표 III-3〉 2012년도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양식

1. 사업기간

2. 사업목적

1)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목적

구분	사업목적
2011년	
2012년	
2013년(예상)	

2) 사업목적의 변경유무

변경유무	변경이유

3. 법적근거

4.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자체사업비 (자체예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국고보조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기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예산불용액(%) 2011년도:  
2012년도: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편람』, 2012의 기초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양식만 발췌함

2012년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304개 사업 중 정상추진이 164건(53.9%), 감축이 39건(12.8%), 사업방식 변경이 74건(24.3%), 폐지가 27건(8.9%)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 정상추진 비중은 줄어들고,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폐지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최종 판정에서 복수 응답을 허용한바, 정상추진에는 정상추진 163개 사업과 정상추진·방식변경 1개 사업이 포함되었고, 감축에는 단계적 감축, 단계적 감축·단계적폐지 2개 사업, 단계적 감축·방식변경 23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사업방식 변경에는 방식변경 69개 사업, 방식변경·통폐합 5개 사업이 포함되었고, 폐지에는 단계적폐지 8개 사업, 단계적폐지·통폐합 1개 사업, 단계적폐지·방식변경 4개 사업, 단계적폐지·통폐합·방식변경 1개 사업, 즉시폐지·통폐합·방식변경 1개 사업, 즉시폐지 6개 사업, 통폐합 6개 사업이 포함된 수치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를 예산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평가 대상액 3조 8,582억원 중 정상추진은 2조 2,991억원(59.9%), 감축은 3,727억원(9.7%), 사업방식 변경은 8,154억원(21.1%), 폐지는 3,710억원(9.7%)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을 민간, 지자체, 지자체·민간 세 가지 보조방식으로 구분하여 볼 때, 민간사업의 정상추진 비율이 전년과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지자체·민간 혼합 보조 방식의 폐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업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사업이 5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중소기업청(80.0%), 여성가족부(77.8%), 보건복지부(68.2%)였다. 중소기업청은 전년(25.0%)과 대조적으로 정상추진 비율이 높았고, 보건복지부는 전년보다 비중이 다소 낮아졌지만 정상추진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상추진 비율이 낮은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21.7%), 국토해양부(34.6%), 문화체육관광부(45.1%)로,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는 전년(33.3%, 27.3%)과 유사하게 정상추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농촌진흥청(100%), 소방방재청(98.4%), 환경부(78.5%)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2.9%)이었다.

## 다. 2013년

2013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2012년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평가 일정 및 평가절차 모두 그대로 준용하였고, 평가지표 및 최종평가결과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DB구축 방식도 전년도 입력 방식을 준용하여 코딩하였다.

2013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328개 사업 중 정상추진이 161건(49.1%), 사업 방식 변경이 74건(22.6%), 감축이 54건(16.5%), 폐지가 39건(11.9%)으로 나타났다(〈표 III-4〉 참조).

〈표 III-4〉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1~2013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폐지		합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11년	167	65.7	45	17.7	17	6.7	25	9.8	254
2012년	164	53.9	74	24.3	39	12.8	27	8.9	304
2013년	161	49.1	74	22.6	54	16.5	39	11.9	328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2013, p. 37.

3개년도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정상추진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폐지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13년에도 평가결과의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각각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감축 54개 사업에는 감축 18개 사업과 감축·사업내용/방식변경이 36개 사업이었다. 폐지 39건은 폐지 10개 사업(즉시폐지(8), 즉시폐지·통폐합(1), 사업내용/방식변경·즉시폐지(1)), 통폐합 20개 사업(통폐합(6), 사업내용/방식변경·통폐합(8), 감축·사업내용/방식변경·통폐합(2), 감축·통폐합(4)), 단계적폐지 9개 사업(단계적폐지(3), 감축·단계적폐지(2), 감축·사업내용방식변경·단계적폐지(3), 감축·사업내용/방식변경·단계적폐지·통폐합(1))으로 구성되었다.

예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328개 사업의 5조 3,150억원 중 정상추진 예산 규모는 2조 6,353억원(49.6%), 사업방식 변경이 1조 1,263억원(21.2%), 감축이 4,084억원(7.7%), 폐지가 1조 1,450억원(21.5%)으로 폐지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비중 역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은 특기할 만하다.

〈표 III-5〉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1~2013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폐지		합계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2011년	46,544	79.1	6,406	10.9	2,914	5.0	2,987	5.1	58,852
2012년	22,991	59.9	8,154	21.1	3,727	9.7	3,710	9.7	38,582
2013년	26,353	49.6	11,262	21.2	4,084	7.7	11,450	21.5	53,150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2013, p. 38.

국고보조사업을 민간, 지자체, 지자체·민간 세 가지 유형으로 비교해 보면, 민간사업의 정상추진 비율이 매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폐지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전년과 달리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폐지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가대상 사업이 5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농촌진흥청(80.0%), 농림축산식품부(70.0%), 보건복지부(65.3%)이며, 정상추진 비율이 낮은 부처는 해양수산부(12.5%), 국가보훈처(20.0%), 환경부(20.8%)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청(100%), 농림축산식품부(94.6%), 안전행정부(81.9%)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처는 환경부(14.9%)였다. 환경부는 전년도에 비해 정상추진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점이 특기사항이다.

2013년 평가 중 눈여겨 볼 점은 전년 대비 넓은 의미의 폐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 규모 중, 민간사업의 예산 규모는 1,195억원(2012년 2,570억원)이며, 지자체 사업의 예산 규모는 1조 256억원(2012년은 1,140억원)으로 지자체 사업의 폐지 대상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예시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8,393억원, 문화부의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이 1,097억원으로 동 사업들은 감축,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폐지 등의 권고를 받았다.

## 라. 2014년

2014년도 기획재정부는 당시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비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정보도 대폭 확대하며,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결정하였다.<sup>24)</sup> 이러한 기초를 반영하여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 평가방식의 개편이 있었다.

2014년 평가에서는 과거 평가방식과 달리 평가대상 사업을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방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동일한 사업명칭이더라도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등 사업 유형이 다른 경우는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취업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민간경상보조 유형과 지자체경상보조 유형이 존재하는데, 2014년에는 민간경상보조와 지자체경상보조 각각에 대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현충시설건립 세부사업의 경우도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를 각각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평가절차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는데, 1회의 서면평가, 사업담당자 및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의 대면평가, 평가단의 총괄 조정회의를 거치는 4단계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차 평가는 서면평가로 기초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업당 평가위원 2인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정상추진’과 ‘추가평가 필요’로 분류하여 1차 평가요약표/평가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때 추가요청 자료 및 질의사항을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 2차 평가에 활용한다. 2차 평가는 ‘추가평가 필요’ 사업을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실시하는데,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이 합의를 원칙으로 필요시 분과장/총괄팀의 조정에 따라 보조금 규모와 사업방식별로 판정한다.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① 정상추진 ② 단계적 감축(감축 시작년도와 규모 명시) ③ 단계적폐지(폐지년도 명시) ④ 통폐합 ⑤ 즉시폐지 중에서 결정하며, 보조사업 방식을 기준으로 ① 정상추진 ② 사업내용/방식 변경 중에서 결정하여 2차 평가 요약표/평가의견서(1차 평가의견서 수정)를 작성한다. 이때 ② 단계적 감축 ② 사업내용/방식 변경 사업의 경우, 상응한 개선내용을 포함한 사업개선보고서를, ③ 단계

24) 기획재정부,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 없는 보조금사업의 예산삭감」, 보도자료, 2014. 3. 20. 참고

적폐지 ④ 통폐합 ⑤ 즉시폐지 사업의 경우 소명의견서 제출을 각각 통보받는다.

3차 평가 역시 대면평가방식으로 ① 정상추진 이외의 판정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은 부처가 제출한 사업개선보고서/소명의견서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거쳐 3차 평가의견서(2차 평가의견서 수정)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단장, 총괄간사, 분과장이 모여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 기준 역시 전년과 비교해 보강되었다.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과 같은 큰 틀은 유지하되, 2-2. 재정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3-2.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해 예시를 각각 추가하였고, 3-4.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 환류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의 영향력과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III-6〉 2014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 기준표

	배점	예시적 설명
<b>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b>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가 분명하고, 사업의 수혜자, 지역적 범위 등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면 “예”</li> <li>○ 사업의 상위목표(예, 성과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면 “예”</li> </ul>
1-2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별표1의2) 지원 제외 사업은 “아니오”</li> <li>○ WTO협정 상 금지보조금,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오”</li> <li>-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 시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li> <li>○ 자체적인 수입증대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은 “아니오”</li> <li>○ 교부 목적 부적합 단체에 지원한 사업은 “아니오”</li> <li>○ 출연기관의 경우 다음의 경우*외에는 “아니오”(일몰원칙)</li> <li>* 출연기관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사업자로 결정된 경우</li> <li>**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li> </ul>

〈표 III-6〉의 계속

	배점	예시적 설명
<b>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b>		
1-2 2014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까지 사업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아니오”</li> <li>○ 여건 변화로 인해 차년도 이후 사업의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아니오”</li> <li>○ 사업의 공공성(공익성) 및 외부성(지역적 수혜 범위 및 경제·사회적 계층간 파급효과 등)등을 고려할 때, 국가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미약하면 “아니오”</li> <li>○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른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그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아니오”</li> <li>○ 사업목적, 수혜대상에서 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 “아니오”</li> <li>○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 유사 사업 간 협의 등 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li> <li>○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아니오”</li> <li>○ 여타 회계기금의 재정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오”</li> <li>○ 균특법 제34조에 따라 광특회계 지원 대상(2014년 24개 포괄보조사업)인 여타 회계기금의 중복적인 사업은 “아니오”</li> <li>* 지역개발계정 자율편성사업으로 흡수하여 추가 재정 소요 최소화</li> </ul>
<b>2.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b>		
2-1 2014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등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아니오”</li> <li>○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점 없이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면 “아니오”</li> <li>○ 이미 다른 명목으로 재정 지원(조세감면 포함)을 받았으면 “아니오”</li> <li>○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사업 운용 규모 대비 10% 이하이고,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경우 “아니오”</li> <li>○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면 “아니오”</li> </ul>
2-2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하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적은 예산으로 수행가능하면 “아니오”</li> <li>○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면(50%이상) “아니오”</li> <li>○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재원 부담비율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아니오”</li> <li>○ 보조율이 낮은 경우(예: 10% 이하인 경우) “아니오”</li> </ul>
<b>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b>		
3-1 사업내용(세부사업 및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세부내용이 명확하고, 사업추진방식, 서비스전달체계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관리·통제되는지가 분명하면 “예”</li> <li>○ 사업의 세부내용이 사업의 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 “예”</li> </ul>

〈표 III-6〉의 계속

	배점	예시적 설명
<b>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b>		
3-2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면 “아니오”</li> <li>○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선정 절차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니오”</li> <li>○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반영하지 않았으면 “아니오”</li> <li>○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시 지자체 간 상호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으면 “아니오”</li> <li>○ 지방비의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아니오”</li> </ul>
3-3 과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있다.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가 ‘단계적 감축’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수입 증대방안 및 예산 감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li> <li>○ 과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가 ‘단계적폐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이후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니오”</li> <li>○ 과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가 ‘통폐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유사사업과 통합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아니오”</li> <li>○ 과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가 ‘폐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속하는 경우 “아니오”</li> </ul>

주: 굵게 표시된 부분은 2014년에 추가된 평가지표 및 예시적 설명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2014, pp. 23~26.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보조금 규모에 따라 각각 정상추진, 단계적감축(차년도 재심사), 단계적폐지, 통폐합, 즉시폐지로, 보조사업 방식에 따라서는 정상추진과 사업내용/방식변경(차년도 재심사)로 유형을 나누어 적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표 III-7〉을 참고할 수 있다.

〈표 III-7〉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활용방안

평가항목	평가결과	활용방안
보조금 규모	정상추진	○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단계적 감축 (차년도 재심사)	○ 즉각적 폐지가 곤란한 경우,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병행하여 지원규모 단계적 축소, 또는 보조금 지원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예산 감액 ▶ 구체적인 감축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
	단계적폐지	○ 즉시폐지는 아니지만 차년도 이후 폐지에정인 사업, 구체적 해당연도 표기
	통폐합	○ 유사사업 등으로 통합하여 시행 * 통폐합 결론에도 불구, 부처가 예산을 요구해 온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 직권으로 사업 폐지 검토
	즉시폐지	○ 각 부처는 차년도 예산요구 단계에서 해당 보조사업은 미요구(차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 예정)

〈표 III-7〉의 계속

평가항목	평가결과	활용방안
보조사업 방식	정상추진	○ 사업성고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사업내용/ 방식 변경 (차년도 재심사)	○ 지적된 개선사항을 사업개선계획서에 반영하게 하고 차년도 재심사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 요구 ➡ 예산요구 시 비목 변경토록 조치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편람』, 2014, p. 9.

2014년의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방식은 과거 DB와 시계열적으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의 기준을 준용하였다.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이더라도 전년도와 달리 보조사업의 유형별로 각각 평가하였으므로 보조사업 유형이 혼합되어 코딩되지 않은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2014년도 최종평가결과는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방식 각각에 대해 판정되었고, 보조금 규모 기준에서는 복수 평정도 허용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2014년에만 적용되었으므로 DB자료의 시계열적 비교용이성을 위해 ① 정상추진 ② 사업방식 변경 ③ 감축 ④ 통폐합 ⑤ 단계적폐지 ⑥ 즉시폐지의 해당 항목에 1로 코딩하였다.

한편 이전 데이터들과 달리 최근 3개년의 이·전용 및 불용액, 정액보조 여부 및 정액보조액을 기초조사보고서에 작성하도록 양식이 개정되어 해당 데이터는 기초조사보고서에서 해당 값을 추출하였고, 국정과제 여부, 대통령공약사업 여부, 일몰사업 여부, 신규사업 여부 등은 여전히 기초조사보고서상에 미기재되어 있으므로 근거자료로 제출된 예산자료 설명서를 토대로 파악하였다.

계속사업의 경우 1, 신규사업은 0으로 코딩하였고, 일몰사업의 경우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대통령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으면 1, 아니면 0, 해당 여부가 누락된 경우 2로 코딩하였다. 사업목적 변경이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고,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지적이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 단계별 평가항목은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코딩하였다.

〈표 III-8〉 2014년도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양식

1. 사업기간

2. 사업목적

1)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목적

구분	사업목적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 사업목적의 변경유무

변경유무	변경이유

3. 법적근거

--

4.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		2012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자체사업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지자체부담***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합계****	백만원 100.0%	백만원 100.0%	백만원 100.0%	백만원 100.0%

〈표 III-8〉의 계속

구분	2013		2014(예산)	2015(요구액)
	예산	결산		
자체사업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지자체부담***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합계****	백만원 100.0%	백만원 100.0%	백만원 100.0%	백만원 100.0%

※ 정액보조의 경우, 기준 및 정액보조액을 아래에 명시:

--

5. 불용액

구분	2011(결산)	2012(결산)	2013(결산)
예산 불용액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예산이용액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예산전용액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사유*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편람』, 2014, pp. 35~38.

단계별 평가결과 입력 시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코딩하였고, 최종판정결과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으므로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중 해당 항목에 1로 코딩하였다.

2013년의 평가와 달리 2014년의 평가에서는 보조금의 감축 범위를 평가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규모 측면에서의 총감축 범위는 평가보고서에 기

재된 퍼센트를 코딩하였다.

2014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422개 사업 중 보조금 규모에서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수는 247개(58.5%), 보조사업 방식에서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수는 232개 사업(55.0%)이었다. 폐지 건수를 살펴보면 단계적폐지 및 즉시폐지가 10.2%로 2013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표 III-9〉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4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사업방식 변경	합계
보조금 규모	247 (58.5)	109 (25.8)	23 (5.5)	27 (6.4)	16 (3.8)	-	422 (100)
보조사업 방식	232 (55.0)	-	-	-	-	190 (45.0)	422 (100)

주: 정상추진통폐합(2), 단계적감축통폐합(7)은 통폐합으로, 단계적감축단계적폐지(5), 통폐합단계적폐지(2)는 단계적폐지로, 즉시폐지통폐합(1)은 즉시폐지로 구분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4, p. 36을 2012~2013년도 복수 응답 항목의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재구성함

예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422개 사업의 10조 5,057억원 중 정상추진 예산 규모는 보조금 규모 부분에서는 7조 5,176억원(71.6%), 보조사업 방식 부문에서는 5조 1,081억원(48.6%)이다.

〈표 III-10〉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4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사업방식 변경	합계
보조금 규모	75,176 (71.6)	23,447 (22.3)	3,671 (3.5)	1,677 (1.6)	1,086 (1.0)	-	105,057 (100)
보조사업 방식	51,081 (48.6)	-	-	-	-	53,976 (51.4)	105,057 (100)

주: 정상추진통폐합(2), 단계적감축통폐합(7)은 통폐합으로, 단계적감축단계적폐지(5), 통폐합단계적폐지(2)는 단계적폐지로, 즉시폐지통폐합(1)은 즉시폐지로 구분함( ) 안의 숫자는 사업 수

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4, p. 37을 2012~2013년도 복수 응답 항목의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재구성함

평가대상 사업이 10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규모 부분에서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82.9%), 여성가족부(77.8%), 보건복지부(68.4%), 산업통상자원부(68.4%)이며, 정상추진 비율이 낮은 부

처는 해양수산부(26.7%), 국가보훈처(43.8%), 고용노동부(45.5%), 산림청(48.0)이었다. 보조사업 방식 부분에서의 정상추진 비율이 높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84.2%), 산림청(76.0%), 여성가족부(74.1%), 문화체육관광부(65.4%)이고, 낮은 부처는 해양수산부(6.7%), 국가보훈처(31.3%), 환경부(32.0%), 국토교통부(50.0%)이다.

예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규모 부분에서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통일부(100%), 산업통상자원부(97.3%), 농림축산식품부(96.5%), 중소기업청(89.1%)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처는 안전행정부(0.0%), 국가보훈처(32.6%), 고용노동부(33.4%), 해양수산부(40.9%)였다. 보조사업 방식 부분에서의 정상추진 비율이 높은 부처는 통일부(100%), 산업통상자원부(99.7%), 산림청(96.3%), 낮은 부처는 해양수산부(2.1%), 농림축산식품부(8.2%), 안전행정부(12.0%)이다.

2014년도 평가는 2013년도 검·경 합동수사에서 비리사업으로 적발된 사업과 국무총리실 부정수급센터에 신고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비리사업으로 선정된 32개의 사업 중 사업 건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방식별로 각각 살펴보면, 정상추진이 18건(56.2%)/17건(53.1%), 단계적감축이 14건(43.8%)/15건(46.9%)이었는데, 이는 전체 사업의 정상추진 비율(58.5%)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비리사업 3조 1,675억원의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방식별로 각각 살펴보면, 정상추진이 2조 3천억원(72.6%)/1조 1,777억원(37.2%), 단계적감축이 8,675억원(27.4%)/1조 9,898억원(62.8%)이었는데, 전체 사업과 비교해 보면 보조금 규모 기준 정상추진 판정 비율보다 약간 높고, 보조사업 방식 기준 정상추진 판정 비율보다는 낮았다(전체 사업의 정상추진 비율 중 보조금 규모 기준 71.6%, 보조사업 방식 기준 48.6%).

## 마. 2015년

2015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전년과 비교해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4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sup>25)</sup> 현행 평가제도가

25) 이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2014를 일부 활용하였다.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보아,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된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필요성 및 존속 여부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평가기준에 부정수급 발생가능성 및 부정수급 대책 적절성 지표를 추가하고, 일몰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2016 회계연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보조사업 선정 기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및 『검증지침』, 『보조사업 평가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및 회계감사 세부기준』 등을 제공하여 평가자, 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사업 관리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였다.

이러한 보조금 운용 개선 기초를 이어받아 2015년의 평가는 기존의 효율성 검토 위주의 평가에서 보조사업의 축소·폐지 및 통폐합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보조사업 정비를 위해 평가가 추진되었고, 다음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평가대상의 확대이다. 매년 1/3씩 실시하던 보조사업 평가를 2015년에는 전체 보조사업 1,422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하였다. 둘째, 평가지표의 차별적 적용이다. 1,422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평가 대상을 예산액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사업으로 유형화하고, 사업 규모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여 실시하였다. 대규모 사업은 200억원 초과사업으로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모두를 평가하고,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및 50억~200억원 이하의 중규모 사업은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및 방법 역시 전년과 비교해 대폭 변경되었는데,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적절성을 검토하던 방식에서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로 변경하였다. 또한 단계별 하부지표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예/아니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합평정 결과만을 6개 유형(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감축, 정상추진) 중에서 복수로 결정하였다.

〈표 III-11〉 2015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착안사항
<b>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b>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어느정도 강한가를 고려 ②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을 보이는지를 고려 ※ 출연 기관의 경우 다음의 경우*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고려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 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고유 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① 보조사업(세부사업 기준)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 지 고려 * 보조율이 80% 이상인 경우 국가적 관점의 사업필요성이 커야 함 * 보조율이 40%이하인 경우 국가가 굳이 관여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 지 고려 * 외부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는지 검토 * 보조사업의 1차적(직접적)수혜자와 2차적(간접적)수혜자를 구분해서 평가하고 외부효과가 클 수록 2차적 수혜자가 많은 사업임 ③ 보조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지 고려 ④ 보조사업의 수행이 직· 간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고려 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 운영이 필요한지 또는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지를 고려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①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고려 ②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를 고려 * 행정비용 (i) 중앙부처의 보조사업 신청비용 (ii) 재정당국의 보조사업 심사비용 (iii) 중앙부처의 보조사업 선정비용 (iv) 중앙부처의보조사업자관리· 감독비용 (v)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자 결산처리 및 감사비용 * 소액사업정리에 중점을 두고 판단(각 자치단체별로 1~2억씩 배정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검토)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소규모사업)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
<b>2. 관리의 적정성</b>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① 중앙부처가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는지 고려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공모가 실시되어 있는지 검토 ②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고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19조(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준수했는지를 검토 * 보조사업 관리체계에 관리계획, 현장실사를 비롯한 실행체계 점검제도,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도, 적정한 회계정산을 위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지 검토 ③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했는지를 고려 ④ 보조사업의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했는지를 고려

〈표 III-11〉의 계속

평가항목	착안사항
<b>3. 규모의 적정성</b>	
3-1. 보조율의 합리성	(1)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있는 경우 ①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 고려  (2) 「보조금법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①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지 고려 * 보조율 산정기준의 합리성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i)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유사사업과 비교 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고려 (ii) 보조사업의 외부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시 보조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고려 (iii) 보조사업자의 자체조달능력을 고려해서 보조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고려
3-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①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는지를 고려 ② 이러한 재정 소요액이 적정한지를 고려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5, pp. 31~33.

평가절차를 살펴보면 1차는 서면평가로 부처가 제출한 기초조사보고서를 근거로 ① 폐지 확정 대상사업 ② 폐지 검토 대상사업 ③ 계속사업 판정으로 구분한다. 2차 평가 역시 서면평가로 기초조사보고서 및 추가요청 자료 그리고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중규모 및 소규모사업 중 1차 평가에서 폐지 검토 대상사업과 계속사업으로 판정 받은 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3차 평가는 대면평가로 소명의견서 및 서면 질의답변을 통한 2차 평가결과 ‘정상추진’ 이외의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실시하여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정상추진에 대한 최종판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대상사업 조정위원회에서 평가단계별로 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쟁점사업에 대한 조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2015년의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방식은 과거 DB와 시계열적으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의 기준을 준용하였다. 한편 동일한 세부사업이더라도 보조사업의 유형별로 각각 평가받았던 2014년도와 달리, 2015년에는 함께 평가받아 보조사업 유형이 종전처럼 혼합되어 코딩되어 있다.

2015년부터 개정된 기초조사표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유형, 법적근거 및 표현, 사업계속성 여부, 일몰사업 여부, 대통령 공약사업 여부, 국정과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보조사업 개요 항목에서 보조사업자별 보조율, 3개년 이전용 및 불용

액,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외부지적 유무 등 사업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었다.

〈표 III-12〉 2015년도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양식

I. 기초조사표						
회계명						
계 정(해당하는 경우)						
예산서 분야코드 (세자리)						
프로그램예산 코드 (네자리)						
단위사업 코드 (네자리)						
세부사업 코드 (세자리)						
보조사업 유형 (복수 체크)	① 민간경상, ② 민간자본, ③ 자치단체경상, ④ 자치단체자본, ⑤ 직접 수행, ⑥ 특별지방행정기관, ⑧ 기타 ( )					
[민간사업] 보조사업수혜자수	2013		2014		2015	
[자치단체사업] 보조사업 수혜 자치단체 수	2013		2014		2015	
법적근거 및 표현	법적 근거:					
	법적표현: ① 할 수 있다 ② 해야 한다 ③ 기타					
사업주체 (모두 체크)	① 광역 ② 기초 ③ 광역 및 기초 ④ 중앙부처 ⑤ 출연기관 ( ) ⑥ 민간단체 ( ) ⑦ 기타 ( )					
사업 계속성 여부	① 계속사업 (시작년도 : , 종료예상년도 : ) ②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③ 신규사업 (지속사업)					
일몰사업 여부	① 일몰사업 아님 ② ( 년) 일몰사업					
사업의 최종 수혜자 (구체적으로 명시)						
대통령 공약 사업 여부	① 대통령 공약 사업, ② 공약사업 아님					
국정과제여부 (국정과제 번호 명시)	① 국정과제(국정과제 번호: ), ② 국정과제 아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여부	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 ② 계획사업 아님					

〈표 III-12〉의 계속

II. 보조사업 개요

1. 사업기간

〈시작년도 ~ 종료(예상)년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기간: 0년)

2. 사업예산

구분	2013(결산)	2014(예산)	2015(예산)
자체사업비 (중앙부처)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 자치단체보조

구분	2013(결산)	2014(예산)	2015(예산)
국고보조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자치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2) 민간단체보조

구분	2013(결산)	2014(예산)	2015(예산)
국고보조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3) 정액보조

--

3. 불용액

구분	2011(결산)	2012(결산)	2013(결산)
예산 불용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예산이용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예산전용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사유*			

〈표 III-12〉의 계속

4. 보조사업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조항, 내용, 재·개정일
----------------------

5. 보조사업 목적

1) 2013년, 2014년, 2015년의 사업목적

구분	사업목적
2013년	
2014년	
2015년	

2) 사업목적의 변경유무

변경유무	변경이유
유/무	

6. 외부지적사항

1) 국회나 감사원 등의 유사중복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내용
유사중복 지적사항	
조치결과	

2) 부정수급 등 비리발생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내용
부정수급 등 비리발생 지적사항	
조치결과	

7. 예산코드 및 회계 변경유무 (2013 ~ 2015)

변경유무	변경이유
유/무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편람』, 2015. pp. 22~26.

평가결과의 경우, 단계별 평가는 미 실시되어 데이터가 부재하였고, 최종판정결과  
 과는 내역사업별 판정결과에 따라 복수판정이 도출될 수 있었으므로 즉시폐지, 단  
 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중에 해당 항목에 모두 1을 코딩  
 하였다. 총 감축 범위는 전년도와 달리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퍼센트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코딩하였다.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광역) 사업의 경우 판정결과 향후 3년간 30%까지 감축하도록 하였으므로, 2015년 예산인 53억 2,000만원의 20%인 10억 6,400만원을 총 감축액으로 기재하였다.

2015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1,422개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수는 734개(51.6%), 사업방식 변경은 202개(14.2%), 단계적 감축 275개(19.3%), 통폐합 71개(5.0%), 단계적폐지 75개(5.3%), 즉시폐지는 65개(4.6%)로 나타났다.

〈표 III-13〉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5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사업수	734	202	275	71	75	65	1,422
비율	(51.6)	(14.2)	(19.3)	(5.0)	(5.3)	(4.6)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5, p. 43.

예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약 49조 1,380억원 중 정상추진 예산 규모는 약 32조 8,143억원(66.8%),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7조 8,763억원(16.05%),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6조 7,091억원(13.7%), 통폐합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조 3,337억원(2.7%), 단계적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2,833억원(0.6%), 즉시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213억원(0.2%)이었다.

〈표 III-14〉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5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예산액	328,143	78,763	67,091	13,337	2,833	1,213	491,380
비율	(66.8)	(16.0)	(13.7)	(2.7)	(0.6)	(0.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5, p. 44.

〈표 III-15〉와 같이 사업 건수 기준 정상추진, 조건부준치로서의 사업방식 변경 및 감축 그리고 폐지 등 네 가지 유형에 따른 연도별로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연도별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폐지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상추진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15〉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1~2015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폐지		합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11년	167	65.7	45	17.7	17	6.7	25	9.8	254
2012년	164	53.9	74	24.3	39	12.8	27	8.9	304
2013년	161	49.1	74	22.6	54	16.5	39	11.9	328
2014년	247	58.5	-	-	109	25.8	66	15.6	422
2015년	734	51.6	202	14.2	275	19.3	211	14.8	1,422

주: 각 연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하되,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를 모두 폐지로 묶어서 집계하였고, 2014년 평가는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집계하였기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 항목이 없음에 유의할 필요  
 자료: 저자 작성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예산 규모별로 5개년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폐지 결과에 따라 폐지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보조사업 건수 기준 폐지비율과 비교해 대규모사업은 매우 낮은 폐지 비중을 보였다.

〈표 III-16〉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1~2015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폐지		합계
	액수	%	액수	%	액수	%	액수	%	
2011년	46,544	79.1	6,406	10.9	2,914	5.0	2,987	5.1	58,852
2012년	22,991	59.9	8,154	21.1	3,727	9.7	3,710	9.7	38,582
2013년	26,353	49.6	11,262	21.2	4,084	7.7	11,450	21.5	53,150
2014년	75,176	71.6	-	-	23,447	22.3	6,434	6.1	105,057
2015년	328,143	66.8	78,763	16.0	67,091	13.7	17,383	3.5	491,380

주: 각 연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하되,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를 모두 폐지로 묶어서 집계하였고, 2014년 평가는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집계하였기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 항목이 없음에 유의할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예년과 달리 2015년에는 평가대상 사업을 부처별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분야별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 건수 기준, 분야별 총 사업 수가 20개 이상인 분야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비율이 높은 분야는 교통 및 물류(66.5%), 보건(59.2%), 환경(57.3%) 순이었으며, 낮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42.5%), 일반·지방행정(4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5.2%) 순이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분야별 전체 예산 규모가 1천억원이 초과하는 분야 중 정상추진 판정 사업의 예산 규모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지방행정(87.6%), 외교통일(86.5%), 사회복지(81.4%) 순이었고, 낮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34.2%), 환경(39.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2.5%)의 순이었다. 사업 건수 및 예산 규모 모두에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정상추진 비중이 낮았는데 동 분야가 재량사업적 특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보조사업자의 존재 등이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바. 2016년

2016년도의 보조사업 평가 역시 전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4년 12월에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작업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를 위해 근거조항을 보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가 3년 주기로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폐지를 원칙으로 2016년 말을 기점으로 3년의 존속기간이 만료사업 중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이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의 폐지 및 통폐합을 중점에 두고 평가하였다. 또한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신설되는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가 처음 도입되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대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매년 선정하는데, 2012년에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과 2012~2014년간 보조사업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 697개, 15.3조원이 평가 대상이었고, 최종적으로 평가실익이 있는 472개, 12.5조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지표 역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있었다. “예/아니오”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배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정량평가방식으로 85점 이상을 준치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평가항목 중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항목에서

0점을 받을 경우, 평가결과 총점이 85점을 초과해도 폐지 또는 조건부폐지 결과가 부여되었다.

평가지표는 연장평가의 목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크게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배점을 부여하였다. ‘보조사업의 타당성’은 법적근거의 명확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은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집행의 적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평가대상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한편 1-5.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항목은 보조 규모에 따른 평가지표의 차별적 적용 기초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항목은 사업 수행 주체인 민간과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표 III-17〉 2016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착안사항
<b>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50)</b>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과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정도를 고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10	①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명확한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 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	①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고려 ②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0	① 사업목적 달성에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 ②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려 ④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고려

〈표 III-17〉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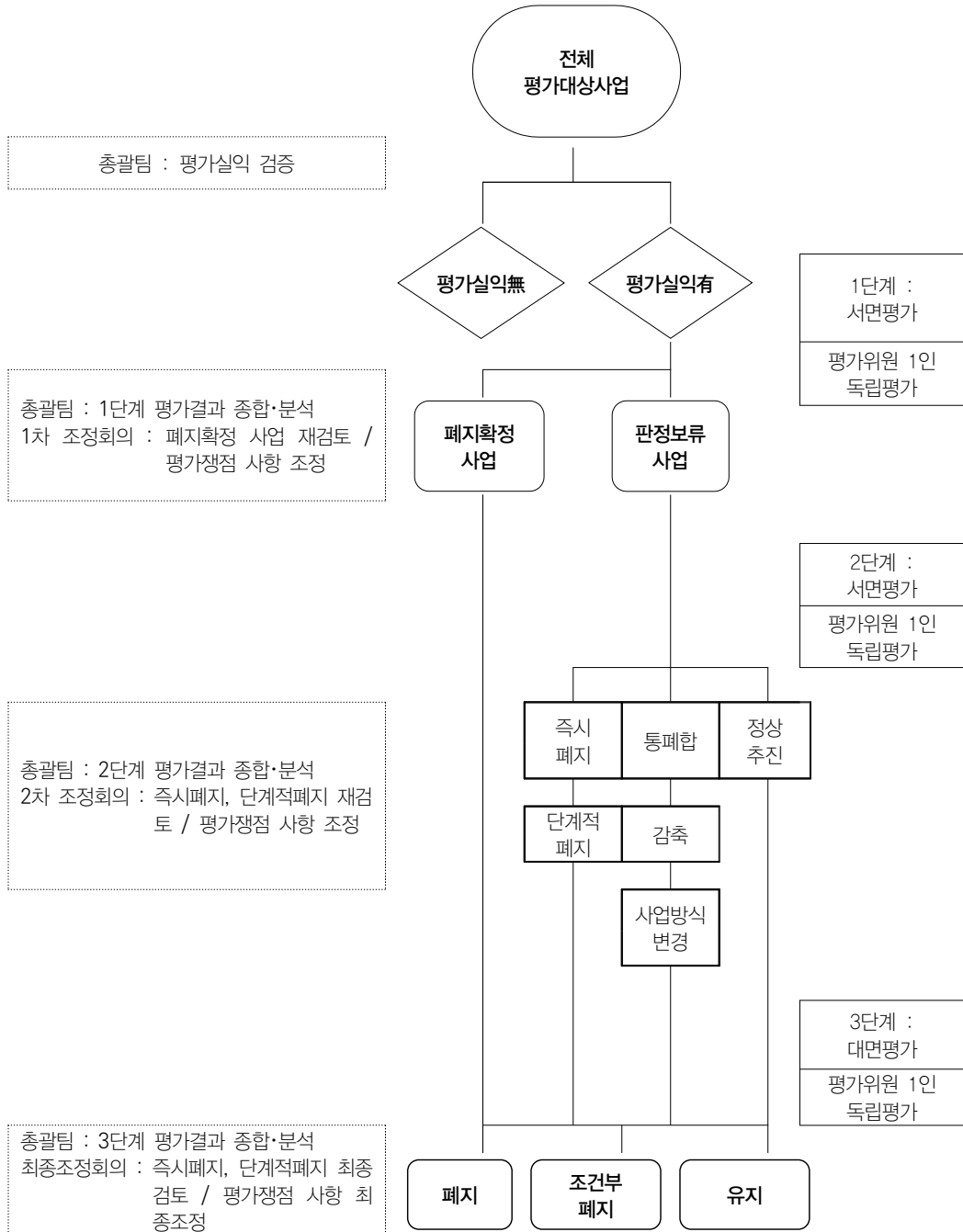
평가항목	배점	착안사항
<b>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50)</b>		
1-5.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10	<p>(소규모사업)</p> <p>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p> <hr/> <p>(전체사업)</p> <p>②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한지 여부,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p> <p>③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 지를 고려</p> <hr/> <p>(대규모사업)</p> <p>④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p>
<b>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50)</b>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	<p>〈지자체보조〉</p> <p>①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p> <p>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p> <hr/> <p>〈민간보조〉</p> <p>① 공모절차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p> <p>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 고려</p>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15	<p>①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p> <p>②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등을 고려</p>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15	<p>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p> <p>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p>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	<p>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p> <p>②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p>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2016, pp. 41~42.

평가절차는 예년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는데, 1·2단계 서면평가, 3단계 대면평가와 최종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평정하였다. 1단계는 사업당 1인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총괄팀 및 조정위에서 교차검토 후 합의하에 판정하며, 폐지확정 사업과 판정보류 사업으로 구분한다. 1차 조정회의에서는 1단계 폐지확정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1단계 평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2단계 역시 서면평가로 1단계에서 판정보류를 받았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중에서 판정하며, 2차 조정회의에서 2단계의 즉시폐지 및 단계적폐지 판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2단계 평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3단계는 대면평가로 2단계 평가결과 중 정상추진 이외의 사업과 1단계 평가결과 폐지확정 사업을 대상으로 폐지(즉시폐지/단계적폐지), 조건부폐지(통폐합/감축/사업방식 변경), 유지(정상추진) 중에서 판정한 후 최종 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년도와 다르게 각 평가단계별로 총괄팀이 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쟁점사항 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한 것을 [그림 III-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 2016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 도식도



주: 평가실의무가 없는 경우는 연장평가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론적으로 평가실의무 여부를 총괄팀에서 검토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2016, p. 45.

2016년의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방식은 전년도 기준을 준용하였다. 2015년부터 개정된 기초조사표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유형, 법적근거 및 표현, 사업계속성 여부, 대통령 공약사업 여부, 국정과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정과제 항목에서 부처가 예/아니오 항목을 모두 체크한 경우, 전년도와 달리 3의 코드를 부여하였고, 일몰사업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2016년 기초조사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지만, 사업계속성 여부 항목에서의 종료예상연도 표기 사항을 기준으로 일몰 여부를 파악하였다.

보조사업 개요 항목에서는 보조사업자별 보조율, 3개년 이전용 및 불용액,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유사중복 유무, 부정수급 유무 등 사업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에서 직접 이용하여 해당 금액과 유무에 따라 1과 0으로 코딩할 수 있었다. 한편 2015년도에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년도 평가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2015년도 평가결과도 입력하였다.

평가결과의 경우, 전년도에 평가되지 않았던 단계별 평가항목이 부활되어 해당 항목의 배점을 코딩하였고, 최종판정결과는 내역사업별 판정결과에 따라 복수판정이 도출될 수 있었으므로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중에 해당 항목에 모두 1을 코딩하였다.

단계별 평가항목의 경우 착안사항별로 평정하여 각각 배점하였는데, 1-1. 법적근거의 명확성을 구성하는 1-1-a.구체성과 1-1-b. 명확성을 각각 평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고용부의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법적근거의 명확성이 10점 만점에 7.5점을 받았는데, 1-1-a. 구체성이 10점 중 5점을 받아 2.5점으로 환산되고, 1-1-b. 명확성이 10점 중 10점을 받아 5점으로 환산되어 총 7.5점으로 계산되었다. 이하의 평가지표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최종적인 평가결과값이 도출되었다.

총 감축 범위는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퍼센트를 2016년도 예산액을 반영하여 금액으로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3년간 매년 10%씩 감축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총 감축액은 2016년 예산 약 315억원 기준 30%인 약 95억원을 입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태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의 경우 단계적폐지 판정을 받아 2년 후 폐지하도록

권고 받았으므로 2016년 예산액인 3,200만원 전액을 총 감축액 란에 입력하였다.

2016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 총 472개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수는 223개(47.2%), 사업방식 변경은 70개(14.8%), 감축 129개(27.3%), 통폐합 19개(4.0%), 단계적폐지 26개(5.5%), 즉시폐지는 5개(1.1%)로 나타났다.

〈표 III-18〉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6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사업 수	223	70	129	19	26	5	472
비율	(47.2)	(14.8)	(27.3)	(4.0)	(5.5)	(1.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6. p. 33.

예산 규모 기준 약 12조 4,888억원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예산 규모는 약 7조 3,624억원(59.0%), 사업방식 변경은 약 1조 1,610억원(9.3%), 감축은 약 3조 6,487억원(29.2%), 통폐합은 약 1,295억원(1.0%), 단계적폐지는 약 1,769억원(1.4%), 즉시폐지는 약 102억원(0.1%)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6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예산액	73,624	11,610	36,487	1,295	1,769	102	124,888
비율	(59.0)	(9.3)	(29.2)	(1.0)	(1.4)	(0.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6. p. 33.

평가대상 사업이 10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76.9%), 행정자치부(62.5%), 보건복지부(60.5%), 해양수산부(60.0%)이었다. 예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100%), 법무부(98.1%), 행정자치부(95.6%), 보건복지부(92.4%)이었다.

## 사. 2017년

2017년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개통된 첫 해이다. 1월부터 회계연도와 예산순기에 맞추어 집행관리 서비스가 먼저 시작되었고, 7월에 e나라도움 구축을 완료하여 중복·부정수급 관리 및 보조금 집행 후 정산관리 기능, 보조사업 정보공개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었다.

2017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2013년 보조사업평가를 받은 사업 215개, 4조 1,329억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되고 하부 요소도 2-1의 민간보조 적용항목을 제외하고 전년과 동일하지만, ‘보조사업의 타당성’의 배점이 50점에서 70점으로 상승하였고,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은 50점에서 30점으로 하강하였다.

타당성 중 법적근거 명확성 배점이 10점에서 4점으로, 보조사업 목적 타당성 배점이 10점에서 6점으로 하락한 반면, 보조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 항목은 각각 10점에서 25점으로 2.5배 상승하였다. 이는 연장평가라는 제도 목적에 비추어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업 등에 대한 폐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보조사업의 성과를 보다 강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 적정성 중에서도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항목은 각각 10점에서 5점으로 하락하였는데, 2017년 1월에 개통된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관련 항목들이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에 평가항목으로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III-20〉 2017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착안사항
<b>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70)</b>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4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과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정도를 고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	①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명확한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표 III-20〉의 계속

평가항목	배점	착안사항
<b>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70)</b>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	①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고려 ②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5	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 ②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업인지 고려 ④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고려
1-5.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10	(소규모사업)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 (중체사업) ②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한지 여부,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 ③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 지를 고려 (대규모사업) ④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 있으며 적절한지를 고려
<b>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30)</b>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	<지자체보조>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여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민간보조> ①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10	①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등을 고려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	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	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 ②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주: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항목 중 <민간보조>의 굵게 표시된 부분은 전년 대비 변경된 착안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착안 의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2017, pp. 8~9.

평가절차는 전년과 같이 3단계로 추진되었으나, 3단계 심사결과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가 이의가 제시된 사업에 한하여 추가 심사를 실시하였고, 평가단은 단계별 평가마다 평가 쟁점사항 정리, 평가결과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절차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의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방식은 전년도 기준을 준용하였다. 기초조사표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유형, 법적근거 및 표현, 사업계속성 여부, 대통령 공약사업 여부, 국정과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보조사업 개요 항목에서 보조사업자별 보조율, 3개년 이·전용 및 불용액,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유사중복 유무, 부정수급 유무 등 사업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었다.

평가결과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복수판정이 가능하며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중에 해당 항목에 모두 1을 코딩하였다. 또한 단계별 평가항목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착안사항별로 평정하여 배점하였다.

총 감축 범위는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입력하였다. 다만 평가보고서에 감축액을 적시하는 경우와 감축 범위를 퍼센트로 기재한 혼용되어 있어 전년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감축액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감축 범위를 기재한 경우는 2017년의 예산액의 감축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33,285백만원의 감축을 권고하여 그 값을 그대로 코딩하였고,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의 경우 2017년 예산 대비 10% 감축하라는 평가보고서의 제언을 반영하여 DB에 감축액을 300백만원으로 표기하였다.

2017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 총 215개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수는 54개(25.1%), 사업방식 변경은 64개(29.8%), 감축 86개(40.0%), 통폐합 2개(0.9%), 단계적폐지 5개(2.3%), 즉시폐지는 4개(1.9%)로 나타났다.

〈표 III-21〉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7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사업 수	54	64	86	2	5	4	215
비율	(25.1)	(29.8)	(40.0)	(0.9)	(2.3)	(1.9)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7, p. 39.

예산 규모 기준 약 4조 1,329억원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예산 규모는 약 7,112억원(17.2%), 사업방식 변경은 약 1조 7,155억원(41.5%), 감축은 약 1조 6,717억원(40.5%), 통폐합은 약 137억원(0.3%), 단계적폐지는 약 154억원(0.4%), 즉시폐지는 약 56억원(0.1%)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7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예산액	7,112	17,155	16,717	137	154	56	41,329
비율	(17.2)	(41.5)	(40.5)	(0.3)	(0.4)	(0.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7, p. 39.

국고보조금 감축 제안은 향후 3년 동안, 즉시폐지 판정을 통해 약 56억원, 단계적폐지 판정을 통해 약 154억원, 감축 판정을 통해 약 2,552억원 등 총 약 2,762억원이 제안되었다.

평가대상 사업이 5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여성가족부(50.0%), 보건복지부(44.0%), 해양수산부(42.9%)이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1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 비율이 높은 부처는 특허청(100%), 해양수산부(47.5%), 행정안전부(43.8%)이었다. 다만 특허청은 1개 사업만 평가대상이었고, 행정안전부는 6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정상추진이었으나, 해당 사업 규모가 매우 커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고보조금 감축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감축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순이었고, 예산 대비 감축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순이었다.

## 아. 2018년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14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기한 3년이 도래한 375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장평가의 결과를 각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3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도록 평가시기를 조율하였다. 또한 전년도에 배점을 낮췄던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항목 배점을 부정수급의 관리 강화를 위해 다시 10점으로 상향하였다.

〈표 III-23〉 2018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착안사항
<b>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70)</b>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4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과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정도를 고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	①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명확한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 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	①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고려 ②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5	① 사업목적 달성에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 ②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려 ④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고려
1-5.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10	(소규모사업)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  (전체사업) ②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 ③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 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대규모사업) ④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표 III-23〉의 계속

평가항목	배점	착안사항
<b>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30)</b>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	<지자체보조>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민간보조> ①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	①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등을 고려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	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 ②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주: 1-5. 재정지원규모의 합리성 항목 중 굵게 표시된 부분은 전년 대비 추가된 착안사항이며, 2-2와 2-4의 배점이 전년 대비 변경되었으므로 굵게 표기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2018, pp. 11~12.

또한 2016년 제정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각 부처의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정보고시 세부 항목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신규보조사업 신규 적격성심사에서도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발생가능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평가절차는 전년도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2018년의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한 방식은 전년도 기준을 준용하였다. 기초조사표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유형, 법적근거 및 표현, 사업계속성 여부, 대통령 공약사업 여부, 국정과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보조사업 개요 항목에서 보조사업자별 보조율, 3개년 이전용 및 불용액,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유사중복 유무, 부정수급 유무 등 사업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었다.

평가결과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복수판정이 가능하며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중에 해당 항목에 모두 1을 코딩하였다. 또한 단계별 평가항목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착안사항별로 평정하여 각각 배점하였다. 총 감축 범위는 평가보고서에 퍼센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데이터 입력의 일관성을 위해 금액으로 환산하여 입력하였다.

2018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 총 375개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수는 147개(39.2%), 사업방식 변경은 121개(32.3%), 감축 96개(25.6%), 통폐합 1개(0.3%), 단계적폐지 9개(2.4%), 즉시폐지는 1개(0.3%)로 나타났다.

〈표 III-24〉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8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사업 수	147	121	96	1	9	1	375
비율	(39.2)	(32.3)	(25.6)	(0.3)	(2.4)	(0.3)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8, p. 37.

예산 규모 기준 약 13조 524억원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예산 규모는 약 5조 7,124억원(43.8%), 사업방식 변경은 약 4조 4,206억원(33.9%), 감축은 약 2조 8,285억원(21.7%), 통폐합은 약 14억원(0.01%), 단계적폐지는 약 885억원(0.7%), 즉시폐지는 약 10억원(0.01%)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8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예산액	57,124	44,206	28,285	14	885	10	130,524
비율	(43.8)	(33.9)	(21.7)	(0.01)	(0.7)	(0.0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8, p. 37.

국고보조금 감축 제안은 향후 3년 동안, 즉시폐지 판정을 통해 약 10억, 단계적폐지 판정을 통해 약 885억원, 감축 판정을 통해 약 2,472억원이 제안되었다. 총 규모 기준으로 2019년 약 1,938억원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약 1,430억원의 감축이 제안되어 향후 3년간 총 3,368억원(전체 사업비의 약 2.6%)의 감축이 제안되었다.

평가대상 사업이 5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산림청(78.6%), 행정안전부(58.3%), 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55.6%)이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1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 비율이 높은 부처는 특허청(100%), 여성가족부(95.3%), 산림청(87.8%)이었다.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감축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부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순이었고, 예산 대비 감축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순이었다.

한편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이 제정된 이후 2018년도에 처음으로 보조사업 재평가가 실시되었다. 보조사업 재평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이후 소관부처가 최종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2018년 보조사업 재평가 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에 연장평가를 받은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 지적사항을 이행하거나 국회 감사원 지적, 사정 변경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 받아 재평가를 진행하였다. 총 10개의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기존 평가결과를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4개 사업에 대해 평가결과를 일부 변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경우 재평가를 통해 추가 감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관광활성화지원 사업은 단계적폐지에서 사업방식 변경으로,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도 단계적폐지에서 단계적폐지의 기한을 조정받았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감축(70%)에서 감축시기를 조정받았다.

## 자. 2019년

2019년의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 기한 3년이 도래한 사업 449개, 11조 5,463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는 보조사업의 타당성 70점과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30점 배점은 유지하되 평가항목

별 배점을 일부 변경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지표를 가점 형태로 추가하였으며, 동일 평가항목 내의 착안사안별로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 배분하는 등 전년도 평가와 비교해 제도 운영에 변경이 발생하였다.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명확성 항목은 4점에서 3점으로, 1-4.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25점에서 24점으로 배점이 하락하였는데,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항목은 6점에서 8점으로 상향되었다. 1-6.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추가되었다.

〈표 III-26〉 2019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b>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b>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1.5	
	②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1.5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①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한지를 고려	5.0	
	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 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3.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①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고려	8.0	
	②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고려	7.0	
	③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 지를 고려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	8.0	
	②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	8.0	
	③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려	4.0	
	④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고려	4.0	
1-5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소규모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	4.0
	중규모 대규모	②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고려	3.0 (5.0*)
		③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3.0 (5.0*)
	대규모	④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4.0
1-6 사회적가치 실현 (가산점 최대 3.0*)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8.3)	최대 3.0	

〈표 III-26〉의 계속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b>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분석(30)</b>			
2-1 보조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지자체보조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2.5 (5.0*)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2.5 (5.0*)
	민간 보조	①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 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2.5 (5.0*)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 고려	2.5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①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2.5	
	②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리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등을 고려	2.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2.5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	2.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	5.0	
	②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5.0	

주: 배점의 \*는 민간보조 또는 지자체보조사업만 있는 등 한 가지 유형의 사업만 있는 경우 각 5점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2019, pp. 11~12.

평가절차는 전년도와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었다. 기초조사보고서의 1차 검토를 사전적으로 수행한 뒤 1단계 서면심사가 이루어졌고, 2단계 심사가 서면평가에서 대면평가로 변경되었다. 3단계 심사도 대면평가방식으로 이루어져 부처의 대면 설명기회를 확대하였고, 각 심사 단계별로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방향을 논의하였다. 3단계 심사 이후 폐지 및 통폐합 수용 불가 사업, 사실관계가 다른 보고서 서술내용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추가심사가 이뤄지고 최종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다.

2019년의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방식은 전년도 기준을 준용하되 일부 변화가 있다. 대통령공약사업과 국정과제의 경우, 2018년까지는 해당여부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 경우 3으로 코딩하였으나, 2019년에는 사업담당자의 입력오류가 발생되지 않아 3은 제외하고 예는 1, 아니오는 0, 표시누락은 2로 코딩하였다.

기초조사표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유형, 법적근거 및 표현, 사업계속성 여부, 대통령 공약사업 여부, 국정과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보조사업 개요 항목

에서 보조사업자별 보조율, 3개년 이·전용 및 불용액,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유사중복 유무, 부정수급 유무 등 사업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었다.

평가결과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복수판정이 가능하며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중에 해당 항목에 모두 1을 코딩하였다. 또한 단계별 평가항목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착안사항별로 평정하여 각각 배점하였다. 총 감축액은 평가보고서에 금액으로 제시된 값을 입력하였다.

2019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 총 449개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수는 155개(34.5%), 사업방식 변경은 176개(39.2%), 감축 105개(23.4%), 통폐합 1개(0.2%), 단계적폐지 8개(1.8%), 즉시폐지는 4개(0.9%)로 나타났다.

〈표 III-27〉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19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사업 수	155	176	105	1	8	4	449
비율	(34.5)	(39.2)	(23.4)	(0.2)	(1.8)	(0.9)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9, p. 37.

예산 규모 기준 약 11조 5,463억원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예산 규모는 약 5조 9,382억원(51.4%), 사업방식 변경은 약 4조 911억원(35.4%), 감축은 약 1조 3,633억원(11.8%), 통폐합은 약 17억원(0.01%), 단계적폐지는 약 1,486억원(1.3%), 즉시폐지는 약 34억원(0.03%)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19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예산액	59,382	40,911	13,633	17	1,486	34	115,463
비율	(51.4)	(35.4)	(11.8)	(0.01)	(1.3)	(0.03)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9, p. 37.

국고보조금 감축 제안은 향후 3년 동안, 즉시폐지 판정을 통해 약 34억원, 단계적폐지 판정을 통해 약 1,486억원, 통폐합 판정을 통해 약 11억원, 감축 판정을 통

해 약 1,440억원이 제안되었다. 총 규모 기준으로 2020년 약 1,299억원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약 1,672억원의 감축이 제안되어 향후 3년간 총 2,971억원(전체 사업비의 약 2.6%)의 감축이 제안되었다.

평가대상 사업이 5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농촌진흥청(75.0%), 법무부·특허청(60.0%), 통일부·식품의약품안전처(50.0%)이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1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 비율이 높은 부처는 통일부(99.2%), 고용노동부(92.9%), 행정안전부(90.4%)이었다.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감축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이었고, 예산 대비 감축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처는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순이었다.

2019년도에도 보조사업 재평가가 실시되었는데, 총 17개의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기존 평가결과를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6개 사업에 대해 평가결과를 일부 변경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기반구축’ 사업, 통일부의 ‘이산가족문제해결지원’ 사업의 경우 감축에서 사업방식 변경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은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에서 감축은 면제되었다.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사업은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에서 감축액이 줄어들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및공간문화진흥’ 사업의 경우 단계적 감축에서 2019년 예산의 20%만 감축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하도록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 차. 2020년

2020년의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17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기한 3년이 도래한 사업 241개, 8조 5,526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20년에는 평가지표의 항목 및 배점이 상당히 변경되었는데, 보조사업의 타당성의 배점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되었고,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이 30점에서 20점으로 하락하였다.

평가항목의 경우 전년도의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과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통합하여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으로 재구성하였고, 1-2. 보조사업의 효과성의 배점을 10점 상향시켜 30점으로 배분하였다.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항목 역시 24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되, 착안사항을 전년에 비해 간소화하였다.

2-1. 보조사업자 산정의 적정성 항목의 경우 착안사항을 간소화하였고, 전년도의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재조정하여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항목을 설정하였다.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항목은 신설된 평가항목으로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독려하고 자 사회적 가치 항목과 같이 가점형태로 추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29〉 2020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b>1. 보조사업의 타당성 (80)</b>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2.0
	②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8.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0)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10.0
	②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10.0
	③ 보조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고려	1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①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 고려	20.0
	②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지 고려	10.0
1-4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소규모 (50억 미만 사업만 해당)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고려	4.0
	중규모 대규모 (전체사업) ②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6.0 (10 중규모)
	대규모 (200억 이상 사업만 해당) ③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절한지를 고려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가산점 최대 3.0)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8.3)	최대 3.0

〈표 III-29〉의 계속

평가항목		척안사항	배점
<b>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분석(20)</b>			
2-1 보조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지자체 보조	①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2.0
	민간 보조	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3.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①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고려	3.0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고려	2.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10.0)		①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려	5.0
		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	5.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가산점 최대 3.0)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노력이 우수한지 고려 -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외 부외적발 실적보다 많은 경우 등	최대 3.0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2020, pp. 11~12

평가절차도 전년도와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었다. 기초조사보고서의 1차 검토를 사전적으로 수행한 뒤 1단계 서면심사가 이루어졌고, 2단계 심사가 서면평가에서 대면평가로 변경되었다. 3단계 심사도 대면평가방식으로 이루어져 부처의 대면 설명기회를 확대하였고, 각 심사 단계별로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방향을 논의하였다. 3단계 심사 이후 폐지 및 통폐합 수용 불가 사업, 사실관계가 다른 보고서 서술내용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추가심사가 이뤄지고 최종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다.

2020년의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방식은 전년도 기준을 준용하되 일부 변화가 있다. 대통령공약사업과 국정과제의 경우 2019년까지 있었던 표시누락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2로 코딩한 사업은 없으며,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모두 처리하였다. 또한 전년도부터 추가된 사회적가치 가산점과 올해 추가된 자체노력가산점이 부여된 사업은 해당 점수를 코딩하였다.

기초조사표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유형, 법적근거 및 표현, 사업계속성 여부, 대통령 공약사업 여부, 국정과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보조사업 개요 항목

에서 보조사업자별 보조율, 3개년 이전용 및 불용액,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유사 중복 유무, 부정수급 유무 등 사업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었다.

평가결과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복수판정이 가능하며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중에 해당 항목에 모두 1을 코딩하였다. 또한 단계별 평가항목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착안사항별로 평정하여 각각 배점하였다. 감축과 관련해서는 이전 평가보고서에 금액이나 퍼센트로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일정 수준' 혹은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 해당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각 내용을 입력하였다.

2020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 총 241개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수는 24개(10.0%), 사업방식 변경은 130개(53.9%), 감축 68개(28.2%), 통폐합 5개(2.1%), 단계적폐지 12개(5.0%), 즉시폐지는 2개(0.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함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sup>26)</sup>

〈표 III-30〉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20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사업 수	24	130	68	5	12	2	241
비율	(10.0)	(53.9)	(28.2)	(2.1)	(5.0)	(0.8)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0, p. 35.

예산 규모 기준 약 8조 5,526억원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예산 규모는 약 9,112억원(10.7%), 사업방식 변경은 약 5조 4,054억원(63.2%), 감축은 약 2조 255억원(23.7%), 통폐합은 약 527억원(0.6%), 단계적폐지는 약 1,540억원(1.8%), 즉시폐지는 약 39억원(0.05%)으로 나타났다.

26) 기획재정부, 「2020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22. 5. 7. 참고

〈표 III-31〉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20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예산액	9,112	54,054	20,255	527	1,540	39	85,526
비율	(10.7)	(63.2)	(23.7)	(0.6)	(1.8)	(0.05)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0, p. 35.

국고보조금 감축 제안은 향후 3년 동안 즉시폐지 판정을 통해 약 39억원, 단계적폐지 판정을 통해 약 1,540억원, 통폐합 판정을 통해 약 527억원, 감축 판정을 통해 약 1,265<sup>27)</sup>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가대상 사업이 5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행정안전부(50.0%), 국토교통부(33.3%),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28.6%)이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1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 비율이 높은 부처는 행정안전부(96.6%), 해양수산부(48.2%), 농림축산식품부(42.2%)이었다.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5,572억원, 국토교통부 3,639억원, 보건복지부 3,308억원 순으로 감축 대상이 되는 예산 규모가 컸다.

2020년 보조사업 재평가는 총 4개의 사업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 사업의 경우 감축에서 사업방식 변경으로, ‘국토공간 정보인력 양성’ 사업은 감축(1.2억원) 및 사업방식 변경 판정에서 감축(0.8억원) 및 사업방식 변경의 내용이 정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운영지원’ 사업, ‘도핑방지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각각 감축(높은 수준) 및 사업방식 변경에서 감축이 삭제되고 사업방식 변경만 판정받게 되었다.

### 카. 2021년

2021년의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기한 3년이 도래한 사업 461개, 20조 5,343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21년 평가지표는 2020년과 비교해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과 관련해 감점 항목이 추가되었다.

27)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 2조 255억원 중 평가결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예산 대비 목표 감축범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높은수준’의 감축을 판정받은 사업 예산액 5,051억원의 10%인 505억원과 ‘일정 수준’의 감축을 판정 받은 사업 1조 5,203억원의 5%인 760억원을 합계하여 도출하였다.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의 배점은 80:20으로 유지되었지만,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 실질행률과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이 감점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가점형태로만 구성되어 있던 자체 사업관리 노력에 감점도 추가되어 부정징후 모니터링의 적극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2〉 2021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b>1. 보조사업의 타당성 (80)</b>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2.0
	②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8.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0)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10.0
	②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10.0
	③ 보조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고려	1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①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 고려	20.0
	②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지 고려	10.0
1-4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소규모 (50억 미만 사업만 해당)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고려	4.0
	(전체사업) ②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6.0 (10 중규모)
	대규모 (200억 이상 사업만 해당) ③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가산점 최대 3.0)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8.3)	최대 3.0
<b>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분석(20)</b>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지자체 보조 ①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2.0
	민간 보조 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3.0

〈표 III-32〉의 계속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b>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분석(20)</b>										
2-2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0)	①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 는지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고려	3.0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①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려 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	5.0 5.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감점 최대 △3.0 ~ +3.0)	①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노력이 우수한지 고려 -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이 외부적발 실적보다 많은 경우 등 ②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였는지 고려 -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부정징후 사업에 대한 조치현황	최대 3.0 최대 △3.0								
2-5 평가결과 이행여부 (감점 최대 3.0)	과거 평가결과를 준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고려 - 평가결과(감축 또는 폐지) 준수 여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실적 등	최대 △3.0								
2-6 실집행 실적 (감점 최대 3.0)	예산 대비 실집행 실적(3년평균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감점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3년 평균 실집행률</td> <td>85미만~78%</td> <td>78미만~70%</td> <td>70%미만</td> </tr> <tr> <td>배점</td> <td>△1</td> <td>△2</td> <td>△3</td> </tr> </table> <p>*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되, n-3은 20%, n-2년 30%, n-1은 50% 가중치 적용 ** 천재지변, 자연재해, 낙찰차액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점 조정 가능</p>	3년 평균 실집행률	85미만~78%	78미만~70%	70%미만	배점	△1	△2	△3	최대 △3.0
3년 평균 실집행률	85미만~78%	78미만~70%	70%미만							
배점	△1	△2	△3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2021, pp. 8~9.

평가절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되었으며, 2021년의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방식은 전년도 기준을 준용하되 올해 추가된 감점 사항을 반영하였다.

기초조사표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유형, 법적근거 및 표현, 사업계속성 여부, 대통령 공약사업 여부, 국정과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보조사업 개요 항목에서 보조사업자별 보조율, 3개년 이전용 및 불용액,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유사 중복 유무, 부정수급 유무 등 사업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었다.

평가결과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복수판정이 가능하며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중에 해당 항목에 모두 1을 코딩하였다. 또한 단계별 평가항목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정 수준’ 혹은 ‘높은 수준’

으로 제시되어 해당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각 내용을 입력하였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sup>28)</sup>에 따르면, 2021년도의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99개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하여, 사업 수 기준 구조조정비율이 43.2%에 달했다.

사업 수 기준 총 461개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수는 68개(14.8%), 사업방식 변경은 194개(42.1%), 감축 180개(39.0%), 통폐합 1개(0.2%), 단계적폐지 13개(2.8%), 즉시폐지는 5개(1.1%)로 나타났다.

〈표 III-33〉 사업 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2021년)

(단위: 건수,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사업 수	68	194	180	1	13	5	461
비율	(14.8)	(42.1)	(39.0)	(0.2)	(2.8)	(1.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1, p. 36.

예산 규모 기준 약 20조 5,343억원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예산 규모는 약 3조 1,476억원(15.3%), 사업방식 변경은 약 8조 2,925억원(40.4%), 감축은 약 9조 153억원(43.9%), 통폐합은 2억원(0.001%), 단계적폐지는 약 600억원(0.3%), 즉시폐지는 약 187억원(0.1%)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2021년)

(단위: 억원, %)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합계
예산액	31,476	82,925	90,153	2	600	187	205,343
비율	(15.3)	(40.4)	(43.9)	(0.001)	(0.3)	(0.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1, p. 36.

국고보조금 감축 제안은 향후 3년 동안, 즉시폐지 판정을 통해 약 187억, 단계적 폐지 판정을 통해 약 600억원, 통폐합 판정을 통해 약 2억원 등 총 789억원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8) 기획재정부, 「연장평가 대상사업 43.2%인 199개 사업 구조조정」, 보도자료, 2021. 5. 14. 참고

‘높은 수준’의 감축과 ‘일정 수준’의 감축 등 두 단계로 구분하여 목표 감축범위를 적용받았는데, 해당 수준은 전년도의 10%, 5% 기준을 준용하여 높은 수준의 감축 사업은 약 3,638억원, 일정 수준의 감축사업은 약 5,37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평가대상 사업이 10건 이상인 부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상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산림청(25.0%), 농림축산식품부(21.6%), 환경부(18.0%),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16.7%)이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5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 비율이 높은 부처는 환경부(45.5%), 고용노동부(31.1%), 산업통상자원부(29.1%)이었다.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평가대상 중 21개 부처, 180개 사업이 감축 판정을 받았으며, 사업 개수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25개, 문화체육관광부 23개,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사업 순으로 사업의 개수가 많았으며, 예산 규모로 볼 때 고용노동부 1조 6,118억원, 보건복지부 1조 4,890억원, 행정안전부 1조 1,615억원 순으로 감축 대상이 되는 예산 규모가 컸다.

2021년 보조사업 재평가는 총 14개 사업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7개의 사업에 대해 평가결과가 조정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섬발전협력 사업추진’은 단계적폐지(2021년 말) 및 사업방식 변경에서 단계적폐지(2022년 말)로 변경되고 사업방식 변경은 삭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정책지원 사업’의 경우 감축(일정 수준)에서 사업방식 변경으로 재평가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사업의 경우 감축(일정 수준) 및 사업방식 변경에서 감축은 삭제되었고, ‘세계엑스포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단계적폐지(2021년 말)에서 감축(높은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 사업의 경우 즉시폐지에서 단계적폐지(2022년 말)로 재평가 되었고,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감축(일정 수준) 및 사업방식 변경에서 감축이 삭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감축(일정 수준)에서 정상추진으로 재평가되었다.

## 타. 소결

이상에서는 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처음 실시되었던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개 연도 동안의 연도별 현황과 특징 및 데이터구축 과정을 상술하였다. 평가항목과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은 2015년을 전후하여 구분해 볼 수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2.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3.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차별화된 평가로 자리매김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금 지원을 점검하고자 지원의 법적근거 여부나 추진방식 및 관리감독의 절차적 합리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 및 종합대책 수립을 반영하여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평가하였고 평가항목 역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3.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6년 이후에는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자체와 보조사업을 운용하는 주체의 관리 적절성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평가결과 도출방식은 크게 체크리스트 방식과 배점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예/아니오 방식으로 점검하였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항목별 점수를 배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의 경우도 2015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011년만 정상추진, 사업내용/방식변경, 단계적감축, 폐지 등 4단계로 평가결과가 도출되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사업내용/방식변경), 단계적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등 6단계로 평가결과를 구분하였다. 2016년부터는 단계적감축을 감축으로 변경하여 현행 6단계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내역사업에 따른 복수 평정이 가능해졌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평가항목과 평가결과는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매년 평가항목이 달라지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평가항목이 변하지 않음에 따른 일관성 유지, 사업수행자가 평가형태를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국고보조금의 등장, 국고보조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이 변화할 경우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이 고정화될 경우, 기존의 평가항목이

나 평가방식이 완전하지 못함에 따른 폐해가 누적될 수 있으나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면 사업을 변화된 환경하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국고보조금의 운영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이나 평가방식이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식이 너무 자주 변한다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사업 본연의 효율성 추구보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어떤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이나 평가방식을 고정할 것인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해진 결론은 없다. 각종 평가가 놓인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평가의 경우, 적절히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항목이나 평가방식이 바뀌어 왔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제3장 이후의 평가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지금까지의 평가방식이 국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추구한 결과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이나 평가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II-35〉 연도별 평가항목 표준화

평가항목 표준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b>사업 타당성</b>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	
법적근거의 명확성	○	○	○	○	○	○	○	○	○			
사업목적의 타당성	○	○	○	○	○	○	○	○	○			
사업 구성의 명확성과 실효성	○	○	○	○	○							
사업의 효과성						○	○	○	○	○	○	
사업의 필요성	○	○	○	○		○	○	○	○	○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합리성)						○	○	○	○	○	○	
향후 국가적 사업으로서 필요성	○	○	○	○								
<b>규모 적정성</b>	○	○	○	○								
보조율의 합리성					○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							
사회적 가치실현(가점 항목)									○	○	○	
<b>관리 적정성</b>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	○	○	○	○	○	○	○	○	○	
사업 집행의 적정성	○	○	○	○		○	○	○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	○	○			○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	○	○	○	○	○
과거 보조사업 평가결과 환류				○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감점 항목)										○	○	
평가결과 이행여부(감점 항목)											○	
실집행 실적(감점 항목)											○	
<b>평가방식</b>	체크리스트				점수							

주: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의 정확한 표현은 연도별 평가결과보고서 및 평가편람 참조. 2011~2014년까지 평가영역은 "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2.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정성", 2015년은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3.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 2016년 이후에는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됨

자료: 연도별 평가결과보고서 및 평가편람의 내용을 재정리

88 • 국고보조사업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표 III-36〉 연도별 평가결과 표준화

결과 표준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상추진	○	○	○	○	○	○	○	○	○	○	○
사업방식 변경	○ (사업내용/ 방식변경)	○ (사업내용/ 방식변경)	○ (사업내용/ 방식변경)	○ (사업내용/ 방식변경)	○	○	○	○	○	○	○
감축	○ (단계적 감축)	○ (단계적 감축)	○ (단계적 감축)	○ (단계적 감축)	○ (단계적 감축)	○	○	○	○	○	○
통폐합		○	○	○	○	○	○	○	○	○	○
단계적폐지		○	○	○	○	○	○	○	○	○	○
즉시폐지	○(폐지)	○	○	○	○	○	○	○	○	○	○

주: 연도별 평가 유형 중 ( )의 별도 표기는 해당 연도에 사용된 판정 유형의 용어임  
 자료: 연도별 평가편람의 내용을 재정리

## IV. 국고보조사업 및 평가결과 추세 분석

### 1. 국고보조사업 예산 추세

#### 가. 국가재정 규모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수치로 설명을 하면 추정 기준 총지출 예산 규모는 680조원이나, 행정안전부 2022년 예산 설명에서는 예산액 기준으로 국가가 456조원, 지방자치단체가 288조원, 지방교육은 83조원의 예산 규모를 가져 중앙과 지방을 합친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는 827조원에 이른다. 지난 16년간 부문별 예산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중앙정부가 약 55%, 지방자치단체는 약 35% 그리고 지방교육이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규모의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8~2009년에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가한 후 2010~2017년 동안은 3%~5% 대로 증가한 이후 2018년 이후 증가율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 우리나라 재정 규모(예산액 기준)

(단위: 조원, %)

연도	총지출	중앙정부예산		지방예산		지방교육예산		합계	전년 대비 증감률
			(%)		(%)		(%)		
2007	237	177	(54.8)	112	(34.7)	34	(10.4)	322	-
2008	257	195	(54.5)	125	(34.9)	38	(10.6)	358	(11.18)
2009	285	217	(55.1)	138	(34.8)	40	(10.1)	395	(10.34)
2010	293	226	(55.5)	140	(34.4)	41	(10.1)	407	(3.04)
2011	309	236	(56.0)	141	(33.5)	44	(10.4)	421	(3.44)
2012	325	249	(55.6)	151	(33.8)	48	(10.7)	447	(6.18)
2013	349	264	(55.9)	157	(33.2)	51	(10.9)	472	(5.59)
2014	356	275	(55.9)	164	(33.3)	53	(10.8)	491	(4.03)
2015	385	286	(55.7)	173	(33.7)	54	(10.6)	514	(4.68)

〈표 IV-1〉의 계속

연도	총지출	중앙정부예산		지방예산		지방교육예산		합계	전년대비 증감율
			(비율)		(비율)		(비율)		
2016	399	296	(55.1)	185	(34.4)	56	(10.5)	536	(4.28)
2017	410	303	(54.6)	193	(34.8)	59	(10.6)	555	(3.54)
2018	433	331	(54.4)	211	(34.7)	66	(10.9)	608	(9.55)
2019	475	362	(54.5)	231	(34.8)	71	(10.6)	663	(9.05)
2020	555	386	(54.1)	253	(35.5)	74	(10.4)	713	(7.54)
2021	605	417	(55.5)	263	(35.0)	72	(9.6)	752	(5.47)
2022	680	456	(55.1)	288	(34.9)	83	(10.0)	827	(9.97)

주: 1. 총지출의 경우 2013년 이후는 추경예산 수치임. 중앙과 지방예산 구분은 순계기준으로, 총지출에는 자치단체 이전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2. ( ) 안은 비율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각 연도.

이러한 재정 규모를 우리나라 GDP와 비교하는 경우, 2021년 예산액 기준으로 총지출은 GDP의 29.2%, 중앙정부 예산 규모는 GDP의 20.1%, 지방자치단체는 GDP의 12.7%, 교육청은 GDP의 3.5%를 사용하여 국가와 지방은 GDP의 약 36.3%를 사용한 다. 2007년 이후의 추세를 살펴보면 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는 2017년까지는 약 30% 수준이었던 반면, 2018년 이후에는 30% 중반대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 GDP 대비 우리나라 재정 규모 비중(예산액 기준)

(단위: 조원, %)

연도	GDP	총지출	중앙정부예산	지방예산	지방교육예산	합계
2007	1,090	(21.7)	(16.2)	(10.3)	(3.1)	(29.6)
2008	1,154	(22.3)	(16.9)	(10.8)	(3.3)	(31.0)
2009	1,205	(23.6)	(18.0)	(11.4)	(3.3)	(32.8)
2010	1,323	(22.2)	(17.1)	(10.6)	(3.1)	(30.8)
2011	1,389	(22.2)	(17.0)	(10.2)	(3.2)	(30.3)
2012	1,440	(22.6)	(17.3)	(10.5)	(3.3)	(31.0)
2013	1,501	(23.3)	(17.6)	(10.5)	(3.4)	(31.4)
2014	1,563	(22.8)	(17.6)	(10.5)	(3.4)	(31.4)
2015	1,658	(23.2)	(17.2)	(10.4)	(3.3)	(31.0)
2016	1,741	(22.9)	(17.0)	(10.6)	(3.2)	(30.8)

〈표 IV-2〉의 계속

연도	GDP	총지출	중앙정부예산	지방예산	지방교육예산	합계
2017	1,836	(22.3)	(16.5)	(10.5)	(3.2)	(30.2)
2018	1,898	(22.8)	(17.4)	(11.1)	(3.5)	(32.0)
2019	1,924	(24.7)	(18.8)	(12.0)	(3.7)	(34.5)
2020	1,941	(28.6)	(19.9)	(13.0)	(3.8)	(36.7)
2021	2,072	(29.2)	(20.1)	(12.7)	(3.5)	(36.3)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GDP 통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검색일자: 2022. 11. 14.

## 나. 국고보조사업 예산

### (1) 유형별

2007년부터 2021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세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201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2007년 31.3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21년 97.9조원으로 증가하여 15년 동안 3.1배가 증가하였다.

둘째,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국가재정 규모와 대비해 볼 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전년 대비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재정 규모 대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비율은 2007년 9.7%에서 2009년에 1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의 경우에는 13%를 차지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을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이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사업예산 규모의 관점에서 두 유형 모두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 민간이전 사업 예산은 2007년 9조원에서 2021년 23조원의 증가를 나타내고, 자치단체이전 사업 예산은 2007년 22.3조원에서 2021년에는 74.8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에서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이전 사업의 비중은 연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25: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치단체이전 사업 예산의 비율이 민간이전 사업 예산에 비해 3배 정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민간이전 보조사업과 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을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세분화하여 보면 민간이전 보조사업의 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예산은 증가한 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유형을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의 비중은 2007년 21.73%에서 2021년 21.25%로 유사한 반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의 비중은 2007년 7.03%에서 2021년 2.25%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의 예산을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누어 보면 지자체경상보조사업 예산과 지자체자본보조사업 예산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예산 규모의 상대적 증가 비율로 보면 지자체경상보조사업의 예산이 2007년 11.8조원에서 2021년 55.6조원으로 4.7배 증가한 반면, 지자체자본보조사업의 예산은 2007년 10.5조원에서 2021년 19.2조원으로 1.8배 증가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 두 유형을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율로 살펴보면 지자체경상보조사업 예산은 2007년 37.7%에서 2021년 56.79%로 증가하였지만, 지자체자본보조사업 예산은 33.55%에서 19.6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유형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 및 비율(예산액 기준)

(단위: 조원, %)

연도	정부 예산 (A)	국고보조금							정부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H/A*100)	국고보조금 대비 비율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총합 (H=D+G)		민간경상 보조 (I=B/H*100)	민간자본 보조 (J=C/H*100)	민간이전 (I+J)	지자체 경상 보조 (K=E/H*100)	지자체 자본 보조 (L=F/H*100)	자치단체이전 (K+L)
		민간경상 보조(B)	민간자본 보조(C)	합계 (D)	지자체 경상보조 (E)	지자체 자본보조 (F)	합계 (G)								
2007	322	6.8	2.2	9.0	11.8	10.5	22.3	31.3	9.7	21.73	7.03	28.75	37.70	33.55	71.25
2008	358	7.3	2.5	9.8	14.0	11.0	25.0	34.7	9.7	21.04	7.20	28.24	40.35	31.70	71.76
2009	395	8.5	2.2	10.7	16.0	13.4	29.4	40.1	10.2	21.20	5.49	26.68	39.90	33.42	73.32
2010	407	8.3	2.2	10.5	17.4	14.2	31.6	42.2	10.4	19.67	5.21	24.88	41.23	33.65	75.12
2011	421	8.6	2.8	11.4	18.1	14.2	32.3	43.7	10.4	19.68	6.41	26.09	41.42	32.49	73.91
2012	447	9.4	2.9	12.3	19.3	14.9	34.2	46.5	10.4	20.22	6.24	26.45	41.51	32.04	73.55
2013	472	10.2	2.2	12.4	21.6	15.1	36.7	49.2	10.4	20.73	4.47	25.20	43.90	30.69	74.80
2014	491	10.8	1.8	12.6	25.6	14.4	40.0	52.5	10.7	20.57	3.43	24.00	48.76	27.43	76.00
2015	514	11.3	2.0	13.3	29.9	15.2	45.1	58.3	11.3	19.38	3.43	22.81	51.29	26.07	77.19
2016	536	12.2	2.0	14.2	31.3	14.7	46.0	60.3	11.2	20.23	3.32	23.55	51.91	24.38	76.45
2017	555	11.5	1.7	13.2	32.3	14.1	46.4	59.6	10.7	19.30	2.85	22.15	54.19	23.66	77.85
2018	608	15.2	1.6	16.8	35.9	14.3	50.2	66.9	11.0	22.72	2.39	25.11	53.66	21.38	74.89
2019	663	17.4	1.7	19.1	43.4	15.5	58.9	77.9	11.7	22.34	2.18	24.52	55.71	19.90	75.48
2020	713	19.1	2.0	21.0	49.4	16.2	65.6	86.7	12.2	22.03	2.31	24.34	56.98	18.69	75.66
2021	752	20.8	2.2	23.0	55.6	19.2	74.8	97.9	13.0	21.25	2.25	23.50	56.79	19.61	76.5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각 연도.

## (2)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표IV-4〉).

첫째, 2007년부터 2022년 동안 세 가지 회계 중 일반회계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다. 사업 예산의 경우 2007년 13조원에서 2022년 62.6조원으로 4.8배가 증가하였고, 전체 국고사업 예산 대비 비율도 2007년 41.53%에서 2022년 61.19%로 20.66%p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특별회계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가 2007년 14.3조원에서 2022년 21.2조원으로 약 48% 증가하였지만 전체 국고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5.69%에서 2022년 20.72%로 오히려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기금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금 보조사업의 예산은 2007년 4.0조원에서 2022년 18.6조원으로 증가하였고, 그 비중도 2007년 12.78%에서 2022년 18.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4〉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 및 비율

(단위: 조원, %)

연도	총합계	회계별 예산 규모			회계별 비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7	31.3	13.0	14.3	4.0	41.53	45.69	12.78
2008	34.7	15.3	15.2	4.2	44.09	43.80	12.11
2009	40.1	18.2	16.9	4.9	45.39	42.14	12.47
2010	42.2	20.1	16.7	5.4	47.63	39.57	12.80
2011	43.7	21.2	16.8	5.6	48.51	38.44	13.05
2012	46.5	22.7	17.7	6.1	48.82	38.06	13.12
2013	49.2	25.2	16.9	7.1	51.22	34.35	14.43
2014	52.5	28.6	16.4	7.6	54.48	31.24	14.28
2015	58.3	31.8	17.3	9.2	54.55	29.67	15.78
2016	60.3	33.1	17.1	10.1	54.89	28.36	16.75
2017	59.6	33.7	15.9	10.0	56.54	26.68	16.78

〈표 IV-4〉의 계속

연도	총합계 (조원)	회계별 예산 규모			회계별 비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8	66.9	39.8	16.7	10.5	59.49	24.96	15.55
2019	77.9	47.7	18.2	12.0	61.23	23.36	15.41
2020	86.7	53.3	18.1	15.3	61.48	20.88	17.64
2021	97.9	61.1	19.7	17.1	62.41	20.12	17.47
2022	102.3	62.6	21.2	18.6	61.19	20.72	18.09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검색일자: 2022. 7. 23.

### (3) 분야별

2007년부터 2022년 동안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야로 구분하여 그 추세를 살펴보면 〈표 IV-5〉와 같다.

첫째, 15개 분야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규모는 2007년 10.7조원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34.2%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예산이 55.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해 국고보조사업 전체 예산의 54.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국고보조사업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5개 분야는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교통 및 물류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나타난다. 이 5개 분야가 2022년에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02.3조원 중 86.2조원으로 84.3%의 비중을 나타낸다. 이 같은 비중은 2007년부터 2022년 동안의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15년 동안 5개 분야의 전체 예산은 89.8조원으로 같은 기간 국고보조사업 예산 950.8조원의 83%의 비중을 보인다.

〈표 IV-5〉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공공질서 및 안전	0.3	0.4	0.6	0.7	0.9	1.0	1.0	0.9	1.2	1.0	1.0	1.0	1.1	0.9	1.8	1.3	15.1
과학기술	0.0	0.0	0.0	0.0	0.1	0.1	0.1	0.0	0.1	0.1	0.1	0.1	0.0	0.1	0.1	0.1	1
교육	0.7	0.6	1.1	0.6	0.6	0.6	0.6	0.6	0.2	0.2	0.1	0.1	0.2	0.4	0.6	1.0	8.2

〈표 IV-5〉의 계속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교통 및 물류	5.0	5.3	5.4	4.5	4.0	4.0	3.9	3.4	3.6	3.5	2.9	2.9	2.7	3.6	3.9	4.1	62.7
국방	0.0	0.0	0.0	0.0	0.0	0.1	0.1	0.1	0.2	0.1	0.1	0.1	0.1	0.1	0.0	0.0	1
국토 및 지역개발	0.8	0.9	1.1	1.4	1.6	2.1	2.0	1.9	1.7	1.7	1.3	1.6	1.9	1.5	2.2	2.1	25.8
농림수산	5.6	6.2	6.9	7.6	7.8	8.7	8.0	8.2	8.6	8.6	8.2	8.4	9.0	9.9	10.7	10.9	133.3
문화 및 관광	1.7	1.9	2.3	2.6	2.8	3.0	3.3	3.4	4.0	4.4	4.6	4.1	4.7	5.0	5.2	5.5	58.5
보건	0.5	0.6	0.6	0.7	0.8	0.9	1.1	1.1	1.4	1.4	1.4	1.5	1.7	1.7	2.0	3.3	20.7
사회복지	10.7	12.7	14.6	16.0	16.8	17.9	20.5	24.4	27.9	29.7	30.6	37.8	46.1	51.2	56.0	55.7	468.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	2.4	2.8	3.0	2.9	2.8	3.0	2.9	3.1	3.1	2.9	3.0	3.7	4.3	5.5	7.6	55.4
일반지방행정	0.6	0.5	0.7	0.8	0.9	1.1	0.9	0.9	0.8	0.8	0.8	0.8	0.8	0.9	1.9	1.7	14.9
통신	0.0	0.1	0.1	0.0	0.0	0.0	0.0	0.0	0.0	0.2	0.2	0.2	0.4	0.1	0.2	0.2	1.7
통일외교	0.6	0.7	1.0	0.9	0.9	0.8	0.9	0.8	0.9	1.0	0.9	0.9	0.9	0.9	0.9	1.1	14.1
환경	2.3	2.5	3.0	3.4	3.6	3.6	3.8	3.9	4.7	4.6	4.5	4.5	4.7	6.1	6.7	7.9	69.8
합계	31.3	34.7	40.1	42.2	43.7	46.5	49.2	52.5	58.3	60.3	59.6	66.9	77.9	86.7	97.9	102.3	950.8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https://www.open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검색일자: 2022. 7. 23.

##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추세

### 가. 유형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처음 도입된 2011년 이후 11년 동안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매년 차이를 보인다(〈표 IV-6〉).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를 평가 연도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의 비율로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2015년에는 84.22%에 달하고 있으나 2015년은 전수조사의 성격을 띠고 연장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국고보조사업 총예산 대비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 비중은 적게는 2017년 6.88%에서 많게는 2021년 20.94%의 수준을 보인다.

연장평가 대상 사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11년 동안 지자체 경상보조사업 평가 예산 규모가 총 66.1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민간

경상보조사업 38.3조원, 지자체자본보조사업 37.2조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6조원의 순서를 보인다.

〈표 IV-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예산 규모 및 비중

(단위: 조원, %)

연도	국고보조사업 총예산(A)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연장평가 대상 사업 예산 비중 (B/A*100)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사업 총예산(B)	
2011	43.7	1.0	0.0	2.8	2.4	6.3	(14.42)
2012	46.5	1.6	0.1	0.6	1.3	3.7	(7.96)
2013	49.2	1.3	0.6	1.1	2.4	5.3	(10.77)
2014	52.5	3.3	0.2	2.8	4.3	10.5	(20.00)
2015	58.3	9.2	1.4	29.4	9.1	49.1	(84.22)
2016	60.3	4.2	0.1	5.7	2.5	12.5	(20.73)
2017	59.6	1.1	0.5	1.3	1.3	4.1	(6.88)
2018	66.9	2.7	0.0	6.7	3.6	13.1	(19.58)
2019	77.9	5.1	0.1	3.1	3.2	11.5	(14.76)
2020	86.7	3.8	0.6	2.2	2.0	8.6	(9.92)
2021	97.9	5.0	0.0	10.4	5.1	20.5	(20.94)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을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표 IV-7〉) 대부분의 평가 연도에서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예산 규모와 비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보조사업, 기금 보조사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도별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회계별로 구분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으로 예산 규모와 비중이 높은 현황과 일치한다. 다만 회계별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 비중을 볼 때 일반회계 보조사업의 평가 비율이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보조사업 전체 비중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보조사업의 평가 대상 사업의 예산 비중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회계별 규모 및 비중

(단위: 조원, %)

연도	평가사업 총예산	회계별 평가 예산 규모			회계별 평가 예산 비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1	6.3	2.8	3.5	0.0	(44.44)	(55.56)	(0)
2012	3.7	1.3	1.3	1.1	(35.14)	(35.14)	(29.72)
2013	5.3	2.2	1.8	1.3	(41.51)	(33.96)	(24.53)
2014	10.5	4.1	4.9	1.5	(39.05)	(46.67)	(14.28)
2015	49.1	30.6	11.7	6.8	(62.32)	(23.83)	(13.85)
2016	12.5	6.2	2.4	3.9	(49.60)	(19.20)	(31.20)
2017	4.1	1.6	1.4	1.1	(39.02)	(34.15)	(26.83)
2018	13.1	6.3	4.0	2.7	(48.09)	(30.53)	(21.38)
2019	11.5	3.8	2.5	5.2	(33.04)	(21.74)	(45.22)
2020	8.6	4.2	2.5	1.8	(48.84)	(29.07)	(22.09)
2021	20.5	9.7	6.8	4.1	(47.32)	(33.17)	(19.51)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예컨대 〈표 IV-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1년의 경우, 정부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각각 18.4%, 33.2%, 9.3%를 차지한다. 이 같은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중과는 달리 2021년도 연장평가 대상 사업 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15.9%, 특별회계 34.5%, 기금 국고보조사업 24%로 일반회계 평가대상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중을 밑돌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 보조사업 예산에 비해 일반회계 보조사업의 평가 예산 비중이 낮은 이유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같은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연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일반회계 보조사업 중 의무지출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IV-8〉 2021년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및 평가대상 사업 예산 규모 및 비중

(단위: 조원, %)

구분	예산안 (A)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예산(B)	예산 대비 보조사업 예산 비중 (B/A*100)	예산(C)	보조사업예산 대비 보조사업 예산 비중 (C/B*100)
일반회계	331.5	61.6	(18.4)	9.7	(15.9)

〈표 IV-8〉의 계속

구분	예산안 (A)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예산(B)	예산 대비 보조사업 예산 비중 (B/A*100)	예산(C)	보조사업예산 대비 보조사업 예산 비중 (C/B*100)
특별회계	59.3	19.7	(33.2)	6.8	(34.5)
기금	184.8	17.1	(9.3)	4.1	(24.0)
합계	575.6	97.9	(17.0)	20.5	(2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p. 304; e나라도움, <https://opn.gosims.go.kr/opn/ll/i1002/getIL002005QView.do>, 검색일자: 2022. 11. 14.

## 다. 분야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장평가를 통해 평가된 사업 예산은 총 145조원이며, 이는 동 기간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699.5조원의 20.7%에 해당한다. 평가대상 사업을 15개 분야로 구분해 보면 가장 예산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나타났으며, 11년 동안 총 58.7조원의 사업 예산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대상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규모는 전체 평가대상 예산 145조원의 49.3%에 해당한다. 다만 2011~2021년 사회복지 분야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358.9조원을 감안한다면 평가대상 사업 예산의 비중은 16.3%에 그치고 있다.<sup>29)</sup>

11년 기간 동안 평가를 받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분야는 사회복지(58.1조원), 농림수산(23.3조원), 환경(15.9조원), 문화및관광(11.4조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0조원)로 확인되며, 이 5개 분야의 예산 비중은 전체 평가대상 사업 예산의 82.2%에 해당한다. 앞서 분야별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의 순서와 평가대상 예산 규모의 순서를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예산 규모 상위 5개 분야에는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와 교통및물류 분야가 포함되었지만, 평가대상 사업 예산에서는 이 두 분야가 빠지고 농림수산 분야와 문화및관광 분야가 상위 5개 분야에 포함되었다.

29)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이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중 의무지출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1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의무지출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지급,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35.2조원이며 이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전체의 72.7%에 해당한다(김우림, 2021, p. 7).

〈표 IV-9〉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분야별 평가 예산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공공질서및안전	0.1	0.7	0.1	0.1	0.8	0.5	0.0	0.1	0.6	0.0	0.9	3.9
과학기술	-	0.0	-	-	0.0	0.0	-	0.0	-	0.0	0.0	0
교육	0.0	0.3	0.0	0.0	0.2	0.1	0.0	0.0	0.1	0.0	0.0	0.7
교통및물류	0.1	0.1	0.2	0.5	3.2	0.7	0.1	0.2	0.2	0.7	0.3	6.3
국방	0.0	-	-	0.0	0.1	0.0	-	0.0	0.0	-	0.0	0.1
국토및지역개발	-	0.1	0.8	0.5	1.3	0.1	0.6	0.4	0.1	0.0	1.3	5.2
농림수산	1.7	0.5	1.0	2.4	6.3	2.0	0.9	1.9	1.9	1.3	3.4	23.3
문화및관광	0.2	0.5	0.5	0.4	2.8	1.4	0.7	1.1	1.7	0.7	1.4	11.4
보건	-	0.3	0.4	0.2	1.3	0.7	0.3	0.4	0.9	0.3	0.4	5.2
사회복지	1.8	0.1	1.3	3.2	26.3	3.8	1.1	5.9	2.3	4.2	8.7	5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3	0.8	0.4	0.6	2.6	1.5	0.3	0.4	1.7	0.4	1.0	10.0
일반지방행정	0.2	0.0	0.1	0.0	0.3	0.3	0.0	0.0	0.2	0.0	0.1	1.2
통신	0.0	0.0	-	-	0.0	0.1	0.0	0.1	0.2	0.0	0.0	0.4
통일외교	-	0.0	0.0	0.1	0.9	0.9	0.0	0.0	0.8	0.0	0.0	2.7
환경	2.1	0.1	0.4	2.4	3.1	0.4	0.1	2.6	0.9	0.7	3.1	15.9
<b>합계</b>	<b>6.3</b>	<b>3.7</b>	<b>5.3</b>	<b>10.5</b>	<b>49.1</b>	<b>12.5</b>	<b>4.1</b>	<b>13.1</b>	<b>11.5</b>	<b>8.6</b>	<b>20.5</b>	<b>145.0</b>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2022년 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 가. 재정자립도와 국고보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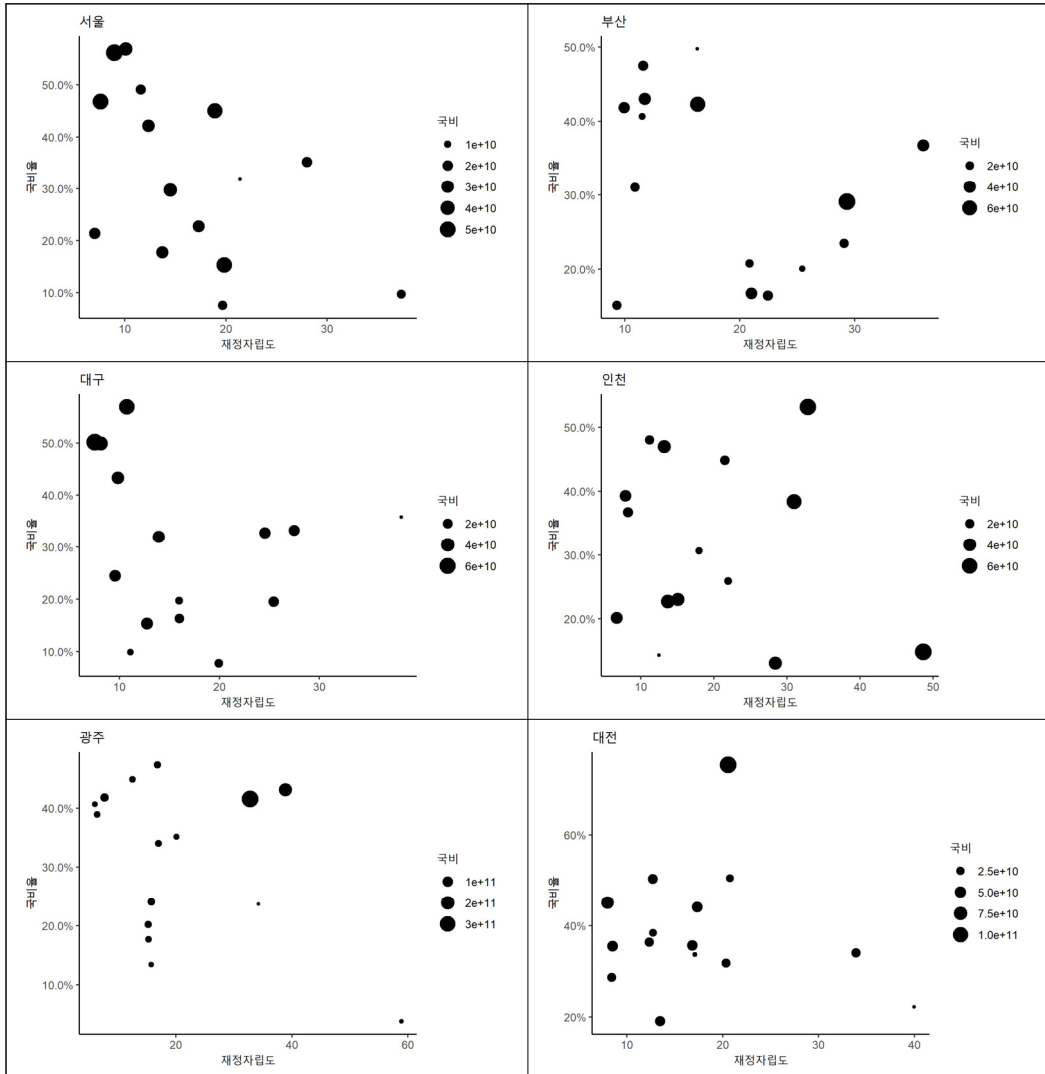
2022년 5월 31일과 2022년 6월 30일에 지방재정365에 접속하여 확인한 일일집행 자료 중에서 국비가 있는 세부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후, 예산현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비율로 정의하고 재정자립도와 국비율의 관계를 지역별로 그려보면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에서 동그라미의 크기는 국비의 크기를 의미한다.

가로축이 지방의 재정자립도이고 세로축이 국비율이므로, 바람직한 형태는 동그라미의 추세가 우하향이 되어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일수록 동그라미의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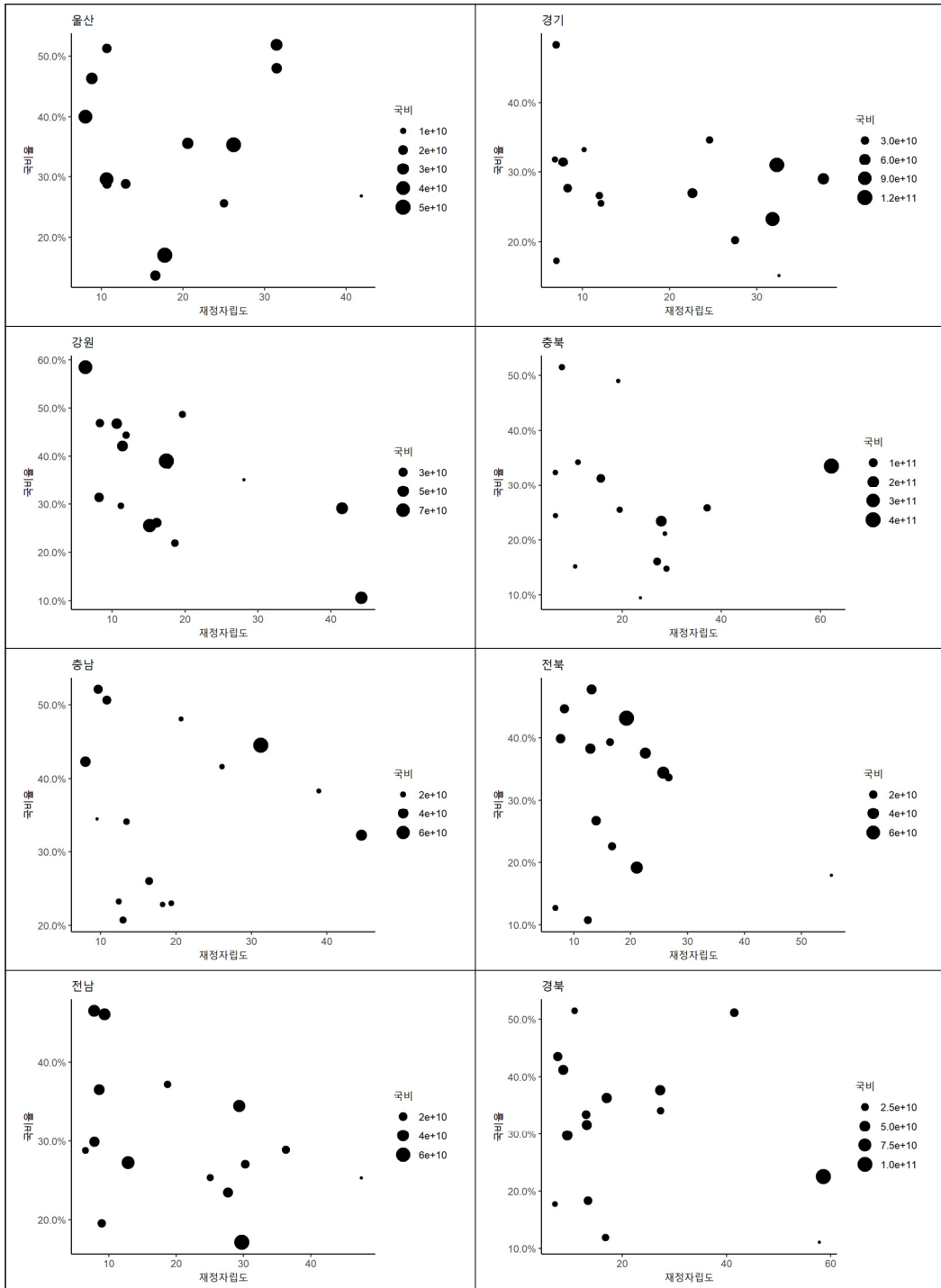
기도 커져야 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국비 규모가 큰 곳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 등의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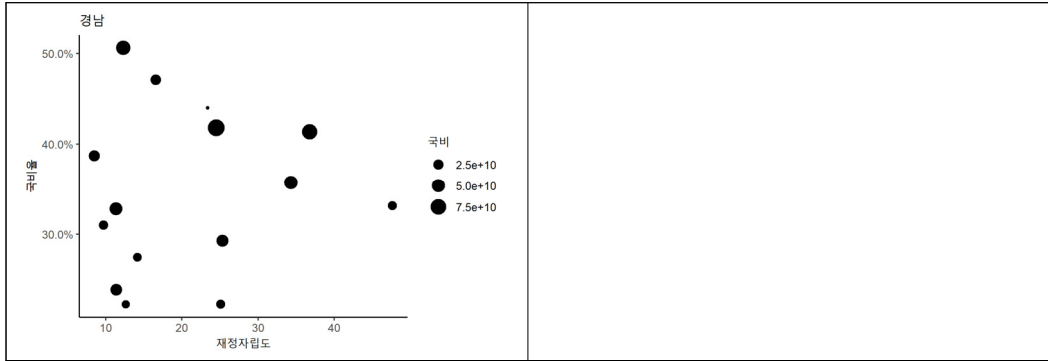
[그림 IV-1] 재정자립도와 국비율의 관계도



[그림 IV-1]의 계속



[그림 IV-1]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 나. 재정자립도와 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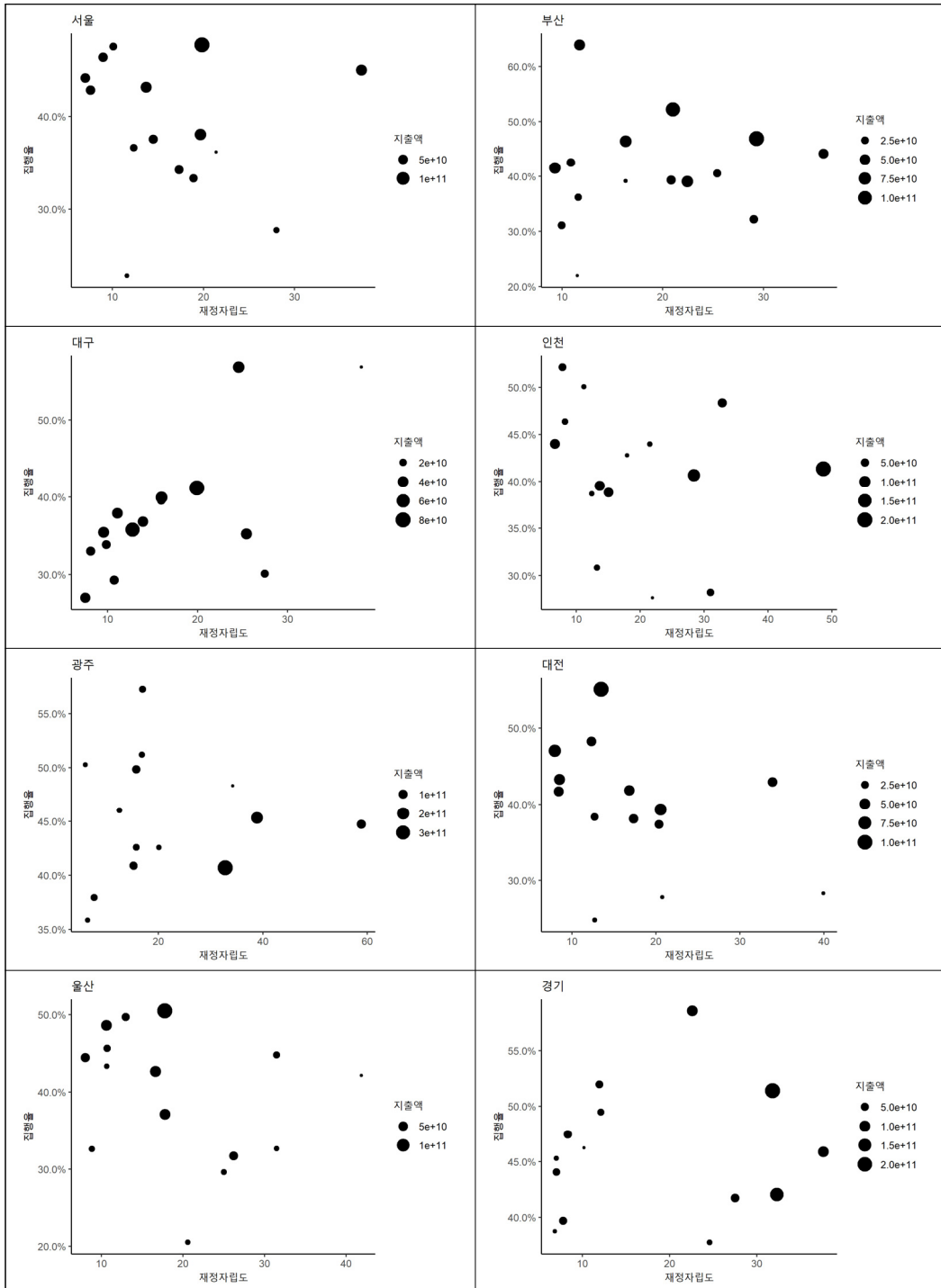
국고보조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많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면, 보조금 평가에서도 바이어스가 발견될 수 있다. 즉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일반적으로 행정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과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인지를 단순한 그림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앞 절의 데이터 추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한 광역자치단체의 일일집행 자료 중에서 국비가 있는 세부사업을 자치단체별로 합산한 후,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집행률로 정의하고 재정자립도와 집행률의 관계를 지역별로 그려 보면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에서 동그라미의 크기는 집행액의 규모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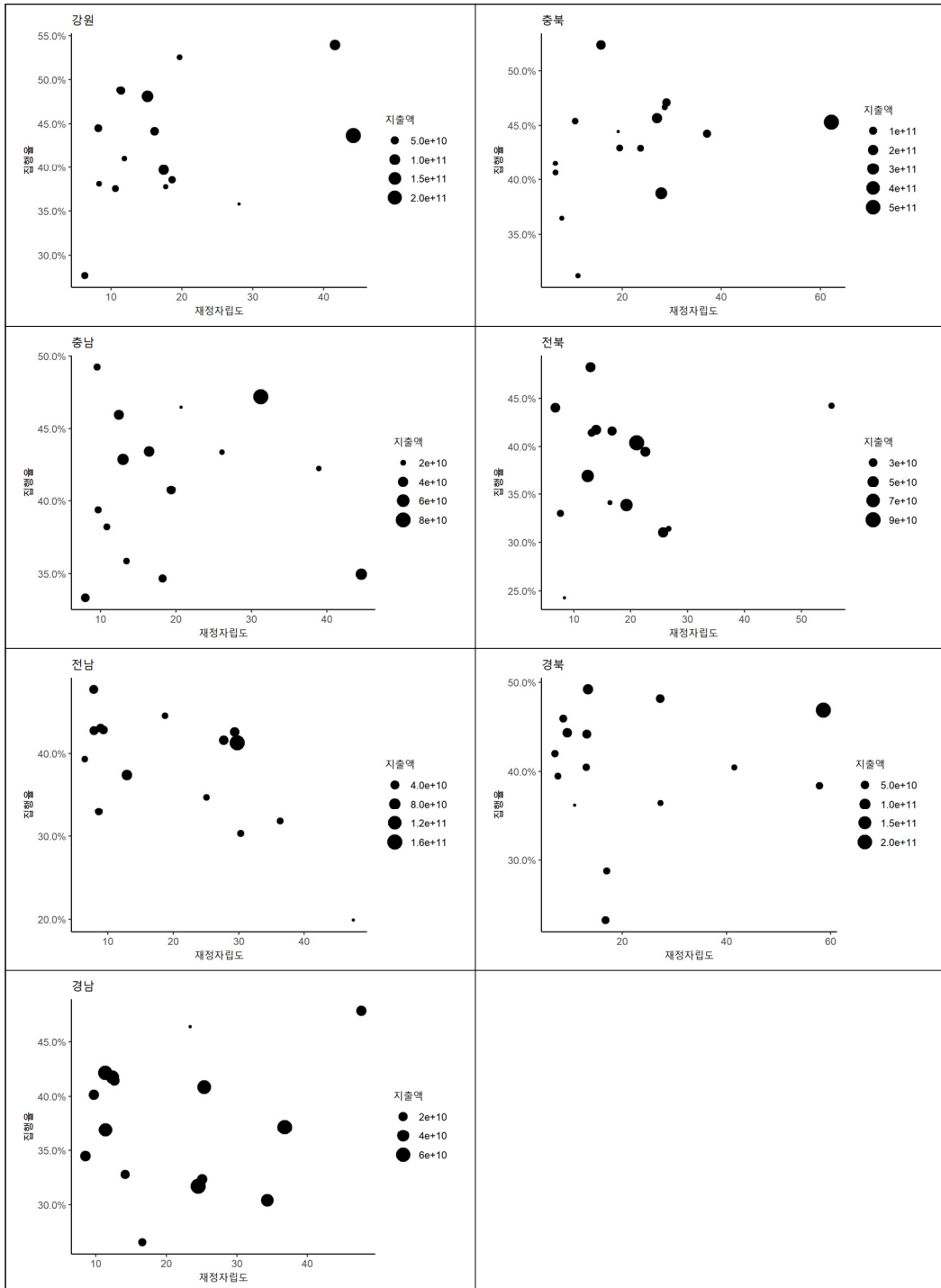
바람직한 형태는 동그라미의 추세가 기울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동그라미의 크기가 재정자립도가 클수록 커져야 한다. 그러나 우상향과 우하향의 추세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지출액의 규모를 나타내는 동그라미의 크기가 중간에 큰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2] 재정자립도와 집행률의 관계도



[그림 IV-2]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 4.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 추세

### 가. 평가결과

여기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의 추세를 살펴본다. 평가결과 구분을 사업 개수로 보면, 처음 평가가 시작된 2011년에는 정상추진의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 사업방식 변경은 2011년에는 44개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193개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 17개 사업에 불과하였던 감축은 2021년에는 180여 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즉시폐지의 경우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

〈표 IV-10〉 사업 개수로 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

(단위: 개)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총합계
2011년	168	44	17	8	0	17	254
2012년	166	62	36	14	16	9	303
2013년	159	76	53	21	8	10	327
2014년	173	74	109	23	27	16	422
2015년	734	194	262	70	94	68	1422
2016년	220	59	135	20	32	6	472
2017년	40	50	52	1	5	4	152
2018년	147	122	95	1	9	1	375
2019년	155	176	105	1	8	4	449
2020년	24	129	69	5	12	2	241
2021년	68	193	180	2	13	5	461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예산 규모로 보면 정상추진의 경우는 2011년 5조원 규모에서 2021년 3조원 규모로 낮아졌으나, 사업방식 변경은 0.6조원에서 6.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감축의 경우는 0.3조원에서 10.6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등은 예산 규모로 본다면 그리 큰 변동은 없다. 결국 우리나라 국고보조평가에서는 사업방식 변경과 감축의 평가가 사업 개수 측면에서나 예산 규모 측면에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V-11〉 예산 규모로 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

(단위: 조원)

구분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통폐합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총합계
2011년	5.0	0.6	0.3	0.3	-	0.0	6.3
2012년	2.2	0.7	0.3	0.3	0.1	0.0	3.7
2013년	2.6	1.1	0.4	0.9	0.2	0.0	5.3
2014년	3.9	3.6	2.3	0.4	0.2	0.1	10.5
2015년	32.8	7.8	6.4	1.4	0.5	0.1	49.1
2016년	4.3	0.9	7.0	0.1	0.2	0.0	12.5
2017년	0.7	1.7	1.7	0.0	0.0	0.0	4.1
2018년	5.7	4.4	2.8	0.0	0.1	0.0	13.1
2019년	5.9	4.1	1.4	0.0	0.1	0.0	11.5
2020년	0.9	5.4	2.0	0.1	0.2	0.0	8.6
2021년	3.1	6.7	10.6	0.0	0.1	0.0	20.5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평가영역별 점수

평가지표를 그룹화하여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연도별 최종평점의 변화는 〈표 IV-12〉와 같다. 각 연도별로 3개의 그룹에 포함되는 평가지표가 다른 것은 본 연구에서 2011년과 2021년 전체의 평가결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본 연구가 그룹화하였기 때문이다. 각 영역별 점수가 변동이 있는 것은 국고보조평가에서 연도별로 강조하는 정책적인 고려사항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2〉 최종평점으로 본 국고보조평가결과

(단위: 점)

구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관리 적정성	최종평점
2011년	55.5	10.1	19.4	85.1
2012년	55.9	9.5	19.7	85.1
2013년	56.1	9.4	19.0	84.6
2014년	54.2	8.0	14.4	76.7
2015년	48.1	2.4	21.9	72.3

〈표 IV-12〉의 계속

구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관리 적정성	최종평점
2016년	38.6	9.7	33.0	81.3
2017년	35.8	8.6	31.2	75.6
2018년	42.4	3.4	34.9	80.7
2019년	34.7	10.2	34.8	79.8
2020년	37.0	8.5	28.9	74.5
2021년	36.5	9.0	28.7	74.2

자료: 저자 작성

사업 타당성의 경우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사업방식 변경과 감축의 판정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 관리 적정성의 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국고보조평가를 통한 관리 필요성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규모 적정성 점수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장평가결과의 연도별 추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연장평가결과에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제 보조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지는 추세가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도 있고, 10년 이상 지속된 연장평가가 정착되어 평가의 엄정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며, 평가가 진행된 연도의 국가재정 여건 등이 고려되어 평가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 V. 국고보조사업평가결과 영향 요인 분석

### 1. 평가요인별 평가결과

#### 가. 평가영역: 사업 타당성

보조사업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과 같이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sup>30)</sup> 이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 타당성 영역의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11년간의 평균값이 45.4점으로 나타난다. 사업 타당성 평가결과 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V-1〉 연도별 사업 타당성 평가점수

(단위: 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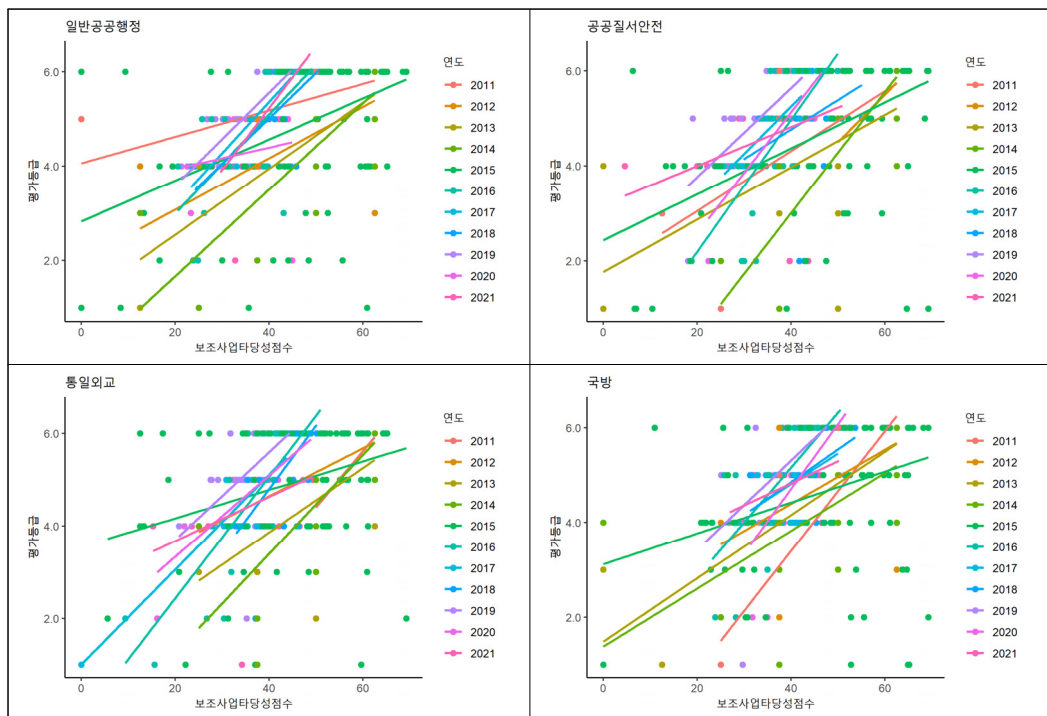
연도	평균	표준편차	평가대상 사업 수
2011	55.5	13.2	254
2012	55.9	12.5	303
2013	56.1	11.9	327
2014	54.2	12.2	422
2015	48.1	15.1	1422
2016	38.6	8.0	472
2017	35.8	9.9	152
2018	42.4	6.2	375
2019	34.7	5.9	449
2020	37.0	6.7	241
2021	36.5	7.4	461
전체	45.4	13.7	487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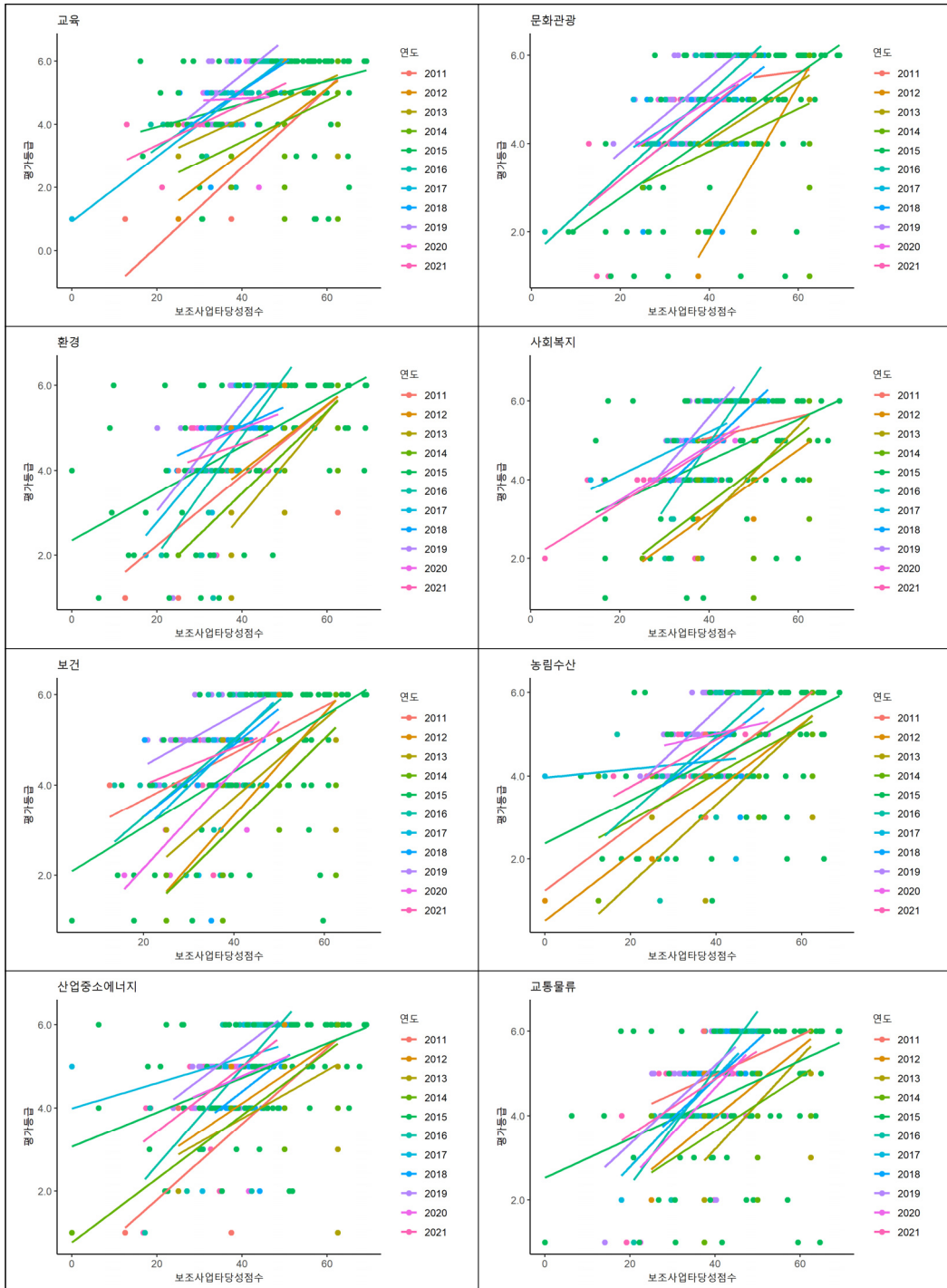
30) 연도별 평가영역 및 세부 평가지표에 관해서는 원종화 외(2021) 참조.

분야별로 보조사업의 타당성 점수가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 [그림 V-1]이다. [그림 V-1]은 연도별·분야별로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와 평가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연도별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에서 실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모든 분야에서,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 증가는 평가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산업중소에너지 등 분야에 따라서는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가 극히 낮더라도 정상추진 등급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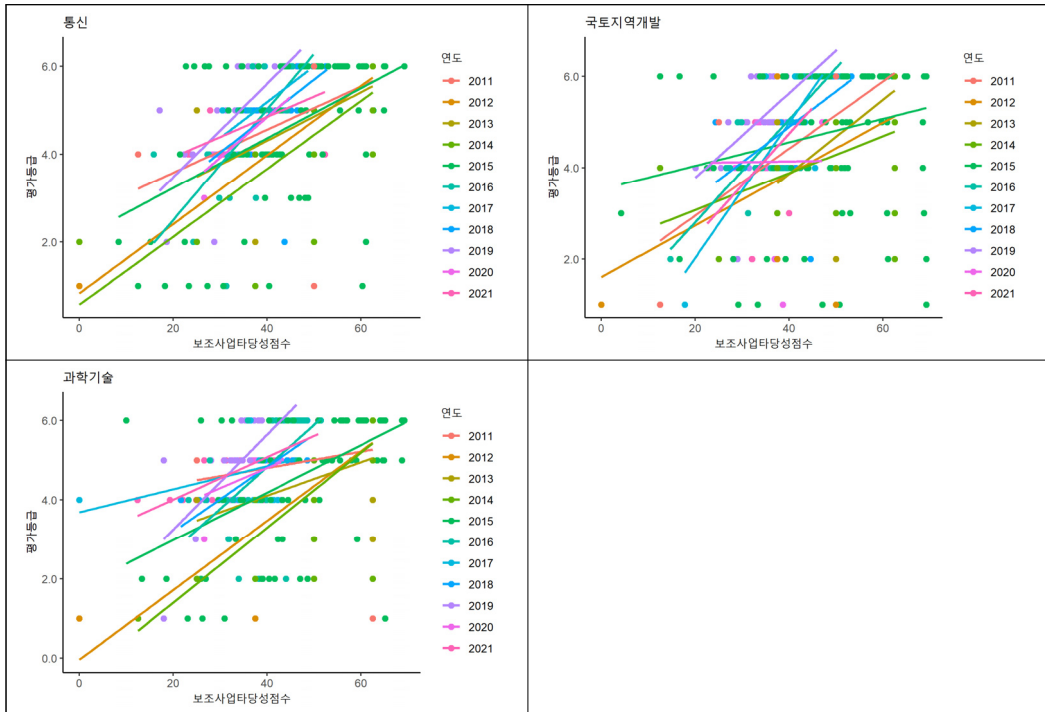
[그림 V-1] 분야별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와 평가등급 간 비교



[그림 V-1]의 계속



[그림 V-1]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 나. 평가영역: 규모 적정성

평가영역 중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은 국고 보조율의 합리성, 사업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는 11년간 평균값이 6.8점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편차가 관찰되지만 특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표 V-2〉 연도별 규모 적정성 평가점수

(단위: 점)

연도	평균	표준편차	평가대상 사업
2011	10.1	4.9	254
2012	9.5	5.3	303
2013	9.4	5.3	327
2014	8.0	5.9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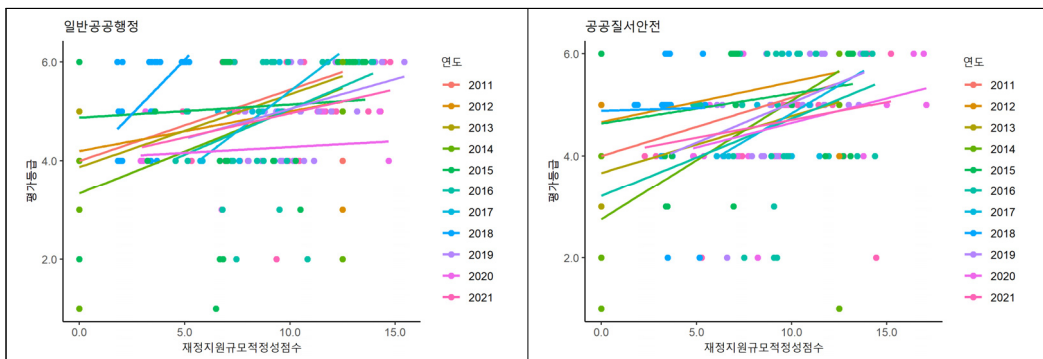
〈표 V-2〉의 계속

연도	평균	표준편차	평가대상 사업
2015	2.4	4.3	1,422
2016	9.7	3.0	472
2017	8.6	3.1	152
2018	3.4	1.0	375
2019	10.2	2.5	449
2020	8.5	3.7	241
2021	9.0	3.2	461
전체	6.8	5.3	4,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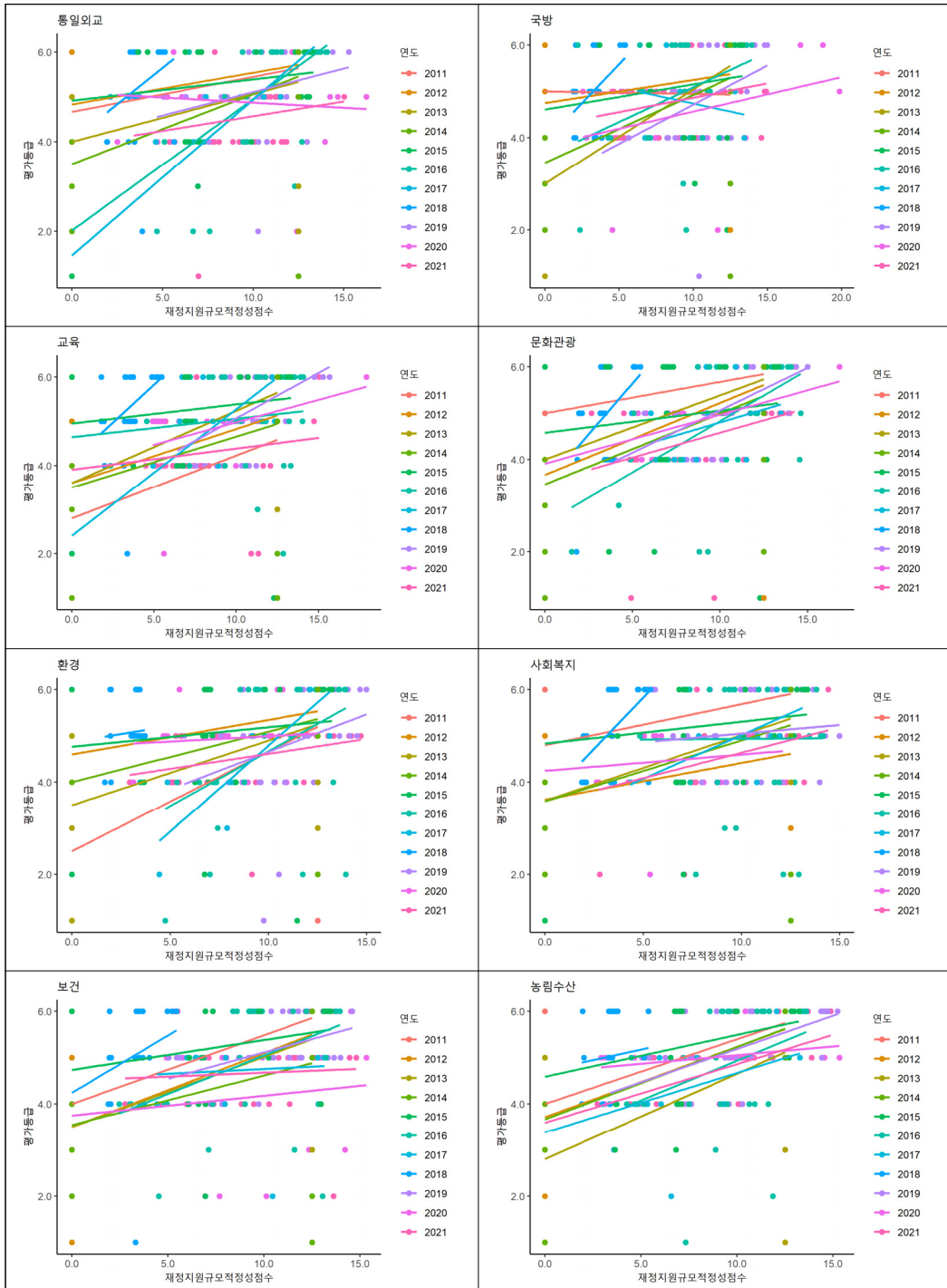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분야별로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점수가 평가등급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2]와 같다. 모든 분야에서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점수 증가는 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분야에서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점수가 극히 낮더라도 정상추진 등급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와는 달리 점수의 절편이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이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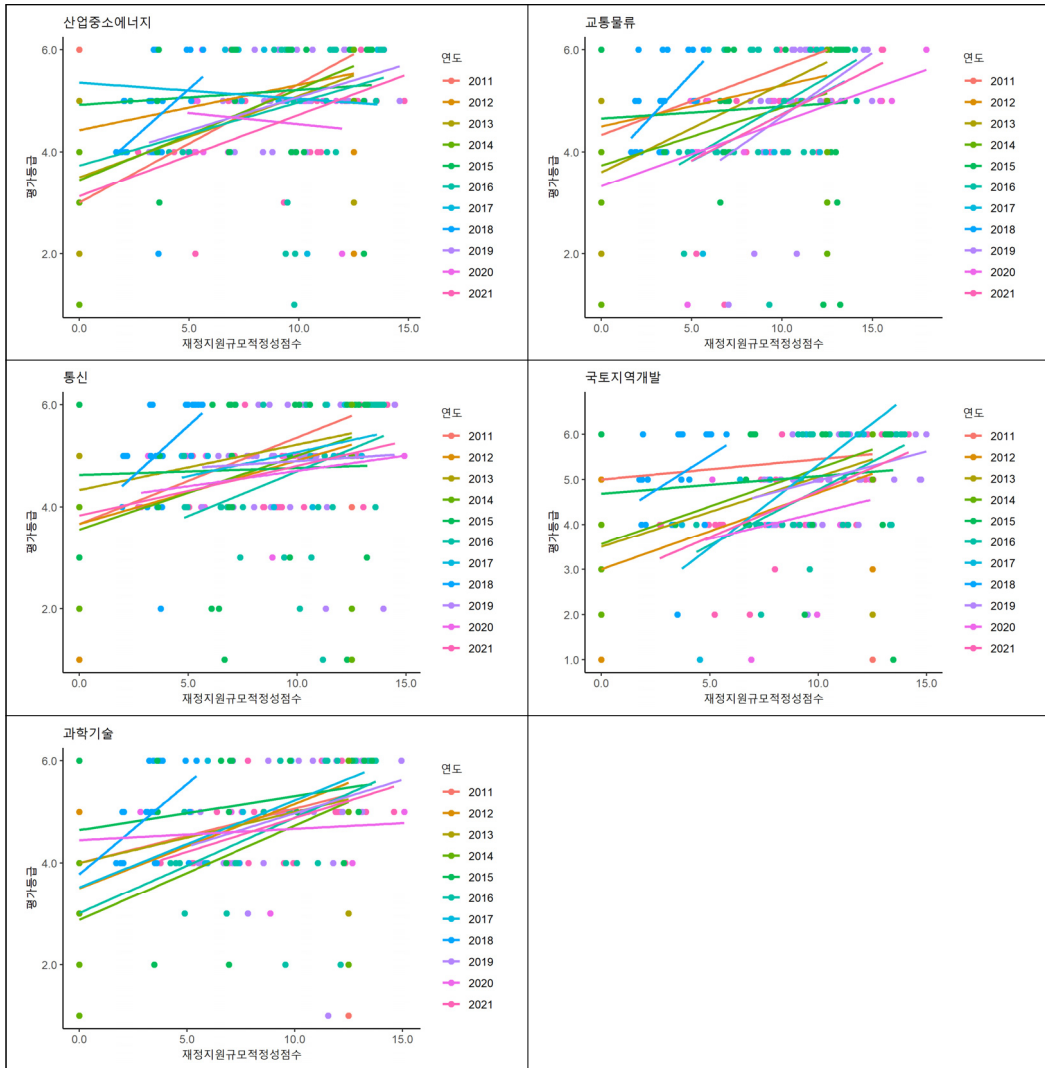
[그림 V-2] 분야별 보조사업 재정지원 규모 적정성 점수와 평가등급 간 비교



[그림 V-2]의 계속



[그림 V-2]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 다. 평가영역: 관리 적정성

평가영역 중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은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조사업 전체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지난 11년의 기간 동안 관리 적정성 영역의 평균값은 25.3점으로, 최근 몇 년간 이 영역의 평가 점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V-3〉 연도별 관리 적정성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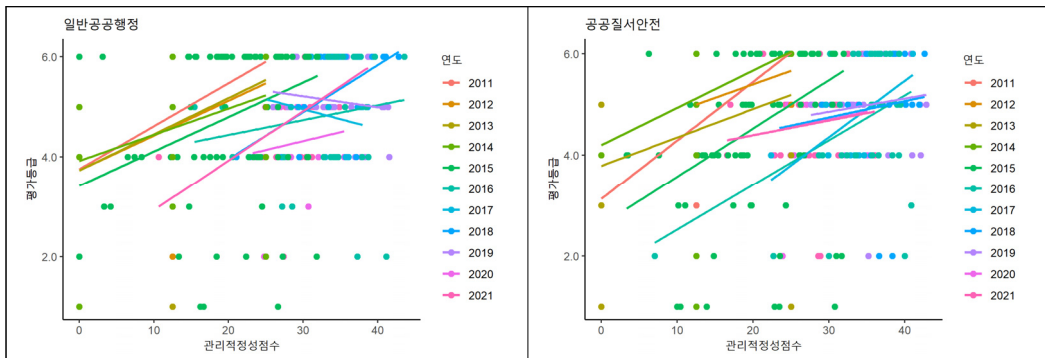
(단위: 점)

연도	평균	표준편차	평가대상 사업
2011	19.4	8.6	254
2012	19.7	7.9	303
2013	19.0	8.6	327
2014	14.4	7.8	422
2015	21.9	7.5	1,422
2016	33.0	6.4	472
2017	31.2	8.1	152
2018	34.9	4.6	375
2019	34.8	4.8	449
2020	28.9	4.6	241
2021	28.7	4.9	461
전체	25.3	9.6	4,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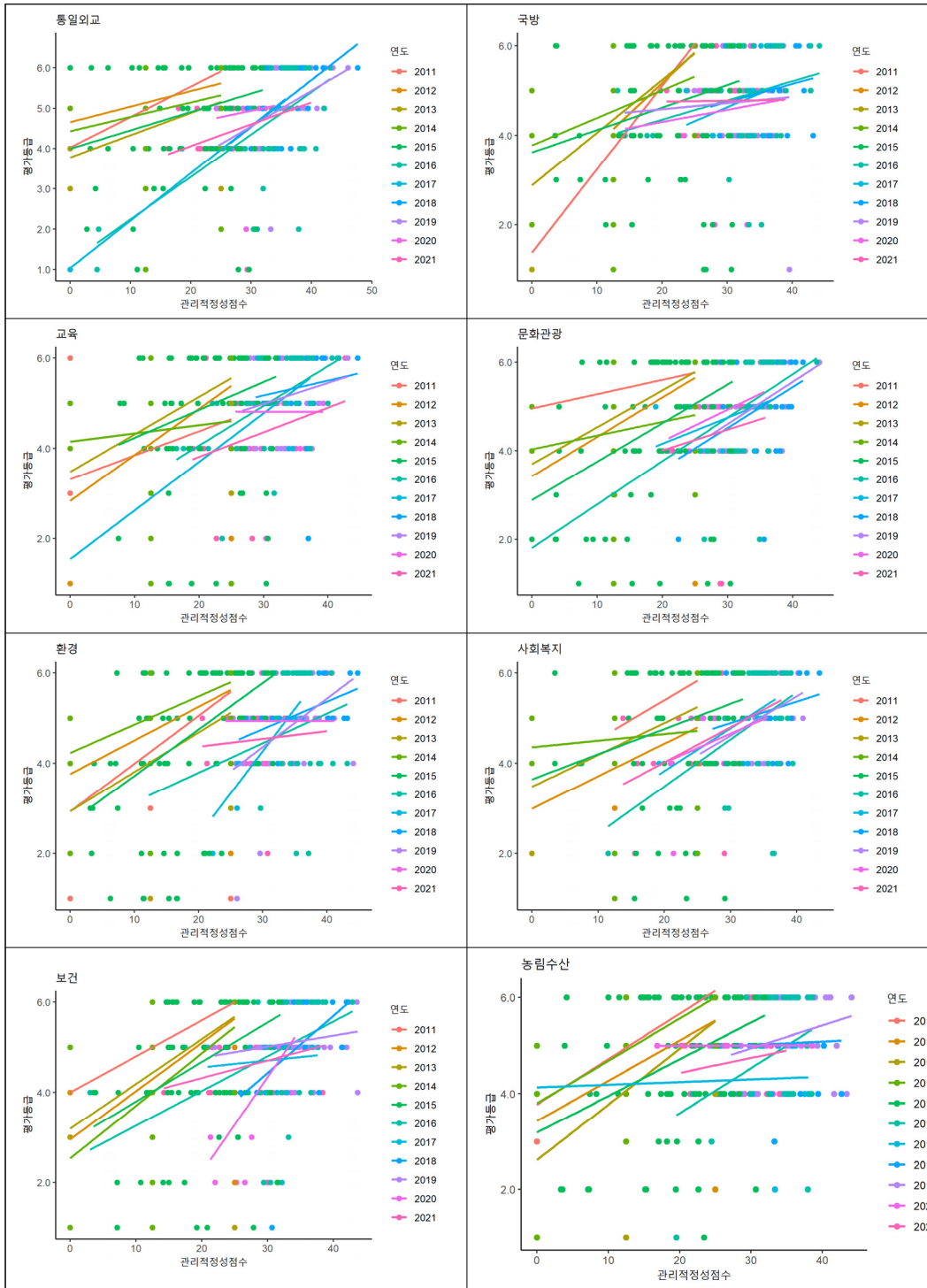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분야별로 보조사업의 관리 적정성 점수가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3]과 같다. 모든 분야에서 관리 적정성 점수 증가는 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관리 적정성 점수는 평가등급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절편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분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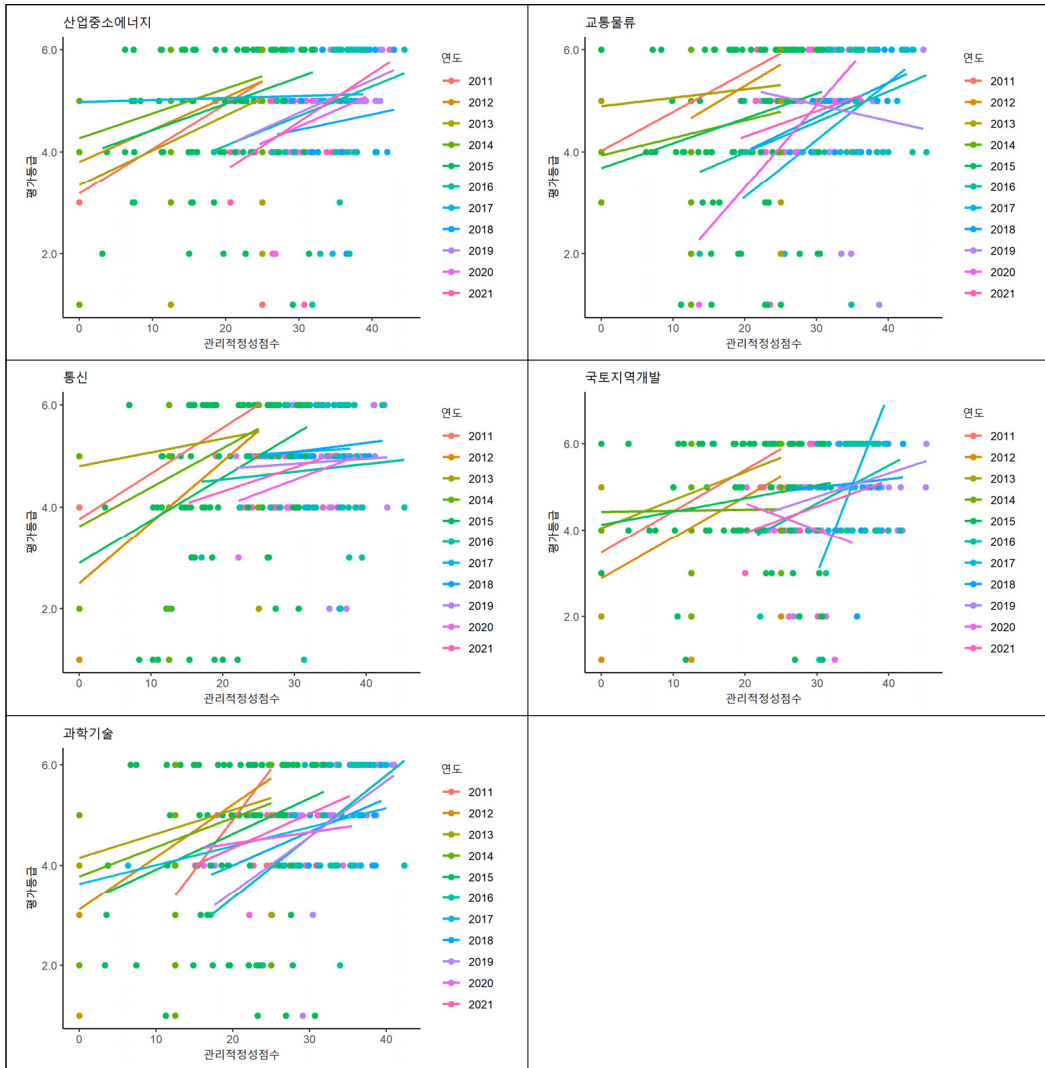
[그림 V-3] 분야별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 점수와 평가등급 간 비교



[그림 V-3]의 계속



[그림 V-3]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 2. 비평가요인별 평가결과

### 가. 분야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평가대상 사업 수는 4,878개이며 이를 15개 분야별로 구분하면 연도별 평가대상 사업 수의 편차가 분야별로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대상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분야의 사업 수와 비중은 문화관광(959개, 19.7%), 농림수산(849개, 17.4%), 사회복지(834개, 17.1%)로 나타나며 전체 평가대상 사업의 54.2%를 차지한다. 반면 평가대상 사업 수가 가장 적은 하위 3개 분야는 과학기술(20개, 0.4%), 국방(21개, 0.4%), 통신(64개, 1.3%)으로 전체의 약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평가결과 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위 3개 분야는 ‘공공질서안전(83.6점)›보건(81.9점)›산업중소에너지(80.3점)’로 전체 4,878개 사업 전체 평균 77.5점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3개 분야는 ‘과학기술(69.8점)›교육(71.2점)›국토지역개발(71.3점)’의 순이다.

〈표 V-4〉 분야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연도	분야																							
	공공질서안전			과학기술			교육			교통물류			국방			국토지역개발			농림수산			문화관광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2011	95.8	8.8	9	-	-	-	72.2	27.7	9	64.7	34.8	11	100.0	-	1	-	-	-	84.3	21.6	51	82.9	21.2	41
2012	93.7	6.8	6	76.5	22.5	8	64.1	30.2	15	74.0	23.0	13	-	-	-	76.2	14.9	10	83.1	22.3	52	85.8	17.3	76
2013	95.4	8.4	11	-	-	-	54.1	37.6	6	92.8	12.1	7	-	-	-	68.7	8.8	2	90.9	18.0	33	78.8	22.8	101
2014	83.3	19.7	9	-	-	-	43.7	29.7	4	55.0	23.3	27	100.0	-	1	76.5	10.4	8	75.1	19.4	75	81.3	19.5	61
2015	80.2	18.3	42	64.1	20.1	5	71.2	27.3	28	76.3	18.6	173	71.4	18.2	7	66.5	26.6	26	72.5	20.8	258	64.9	22.8	285
2016	87.9	8.9	14	88.7	-	1	76.6	17.9	16	78.8	20.0	33	79.3	16.6	5	68.0	27.3	5	81.9	12.0	111	77.7	13.5	93
2017	71.6	9.5	4	-	-	-	82.5	3.2	5	75.7	18.9	4	-	-	-	73.9	1.5	3	79.6	9.6	13	75.0	12.3	36
2018	83.0	7.6	17	85.6	-	1	85.3	-	1	79.8	6.8	20	81.1	-	1	85.0	7.1	6	78.7	10.4	56	79.8	8.1	63
2019	82.6	9.6	14	-	-	-	79.8	7.1	11	81.5	10.2	20	75.6	9.9	5	67.7	12.1	5	77.6	10.0	97	77.8	7.8	85
2020	80.7	8.3	3	59.5	0.9	2	79.4	3.4	8	81.5	6.5	14	-	-	-	70.8	-	1	77.9	5.6	31	71.7	7.0	40
2021	76.3	9.8	19	56.5	6.1	3	69.9	16.7	5	75.2	8.4	22	78.5	-	1	70.4	9.3	14	76.6	7.5	72	72.7	12.7	78
전체	83.6	14.2	148	69.8	19.3	20	71.2	24.4	108	75.4	19.3	344	77.8	15.5	21	71.3	18.8	80	77.7	17.3	849	74.5	19.3	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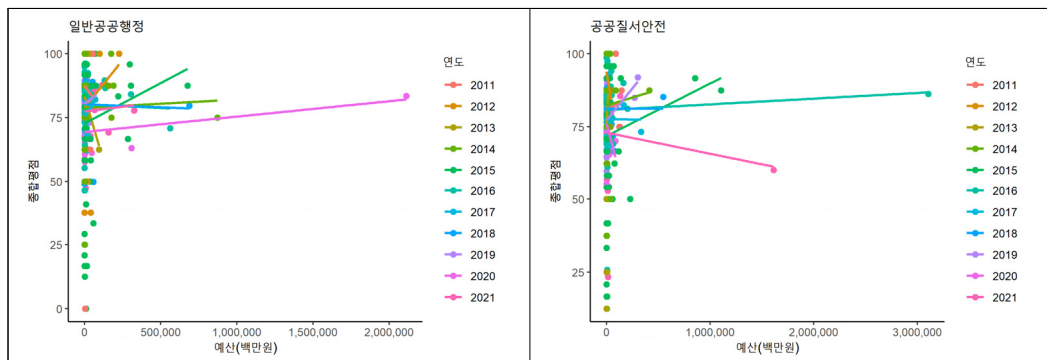
연도	분야																							
	보건			사회복지			산업중소에너지			일반공공행정			통신			통일외교			환경			전체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2011	-	-	-	88.7	19.0	71	88.6	16.9	34	71.8	33.2	8	79.1	36.0	3	-	-	-	91.4	24.8	16	85.0	22.3	254
2012	90.9	16.8	47	88.0	17.4	23	90.1	21.6	28	87.5	-	1	93.7	8.8	2	97.5	5.5	5	88.2	17.9	17	85.1	20.3	303
2013	91.0	17.0	46	87.7	17.2	59	92.0	10.5	22	76.5	27.9	8	-	-	-	100.0	0.0	2	77.5	14.4	30	84.5	20.2	327
2014	71.0	19.5	44	81.2	15.0	122	84.2	17.3	31	66.0	23.6	7	-	-	-	78.5	21.3	7	75.4	20.4	26	76.6	19.9	422
2015	77.9	18.7	103	72.5	24.0	221	75.6	18.3	115	66.6	24.8	37	71.1	18.7	13	67.5	26.0	27	79.7	16.9	82	72.3	21.8	1422
2016	87.7	9.9	34	81.0	12.9	38	82.6	10.3	53	78.6	21.1	19	85.7	6.7	10	81.4	7.2	17	85.1	8.1	23	81.2	13.5	472
2017	86.6	5.6	18	74.4	25.4	32	80.1	6.6	13	47.4	36.1	4	82.3	-	1	22.0	31.1	2	72.6	20.6	17	75.6	18.7	152
2018	80.5	7.2	36	82.5	9.2	77	80.2	7.4	35	81.0	12.0	6	78.4	11.4	6	76.5	2.8	3	80.9	8.3	47	80.7	8.6	375
2019	82.4	8.3	38	78.4	8.6	46	82.4	7.3	59	80.1	10.2	20	85.3	2.2	13	81.0	8.3	15	83.3	7.0	21	79.7	8.9	449
2020	80.1	8.5	22	73.3	9.3	62	68.3	11.7	18	74.7	7.2	7	58.7	8.8	5	62.0	-	1	75.0	9.3	27	74.4	9.3	241
2021	78.4	8.6	43	72.8	12.3	83	71.0	10.0	46	67.6	11.8	12	67.3	11.4	11	84.7	7.2	2	78.0	8.0	50	74.1	10.7	461
전체	81.9	15.8	431	78.4	18.5	834	80.3	15.4	454	72.1	22.0	129	76.6	15.4	64	76.1	21.1	81	79.9	14.8	356	77.5	18.1	487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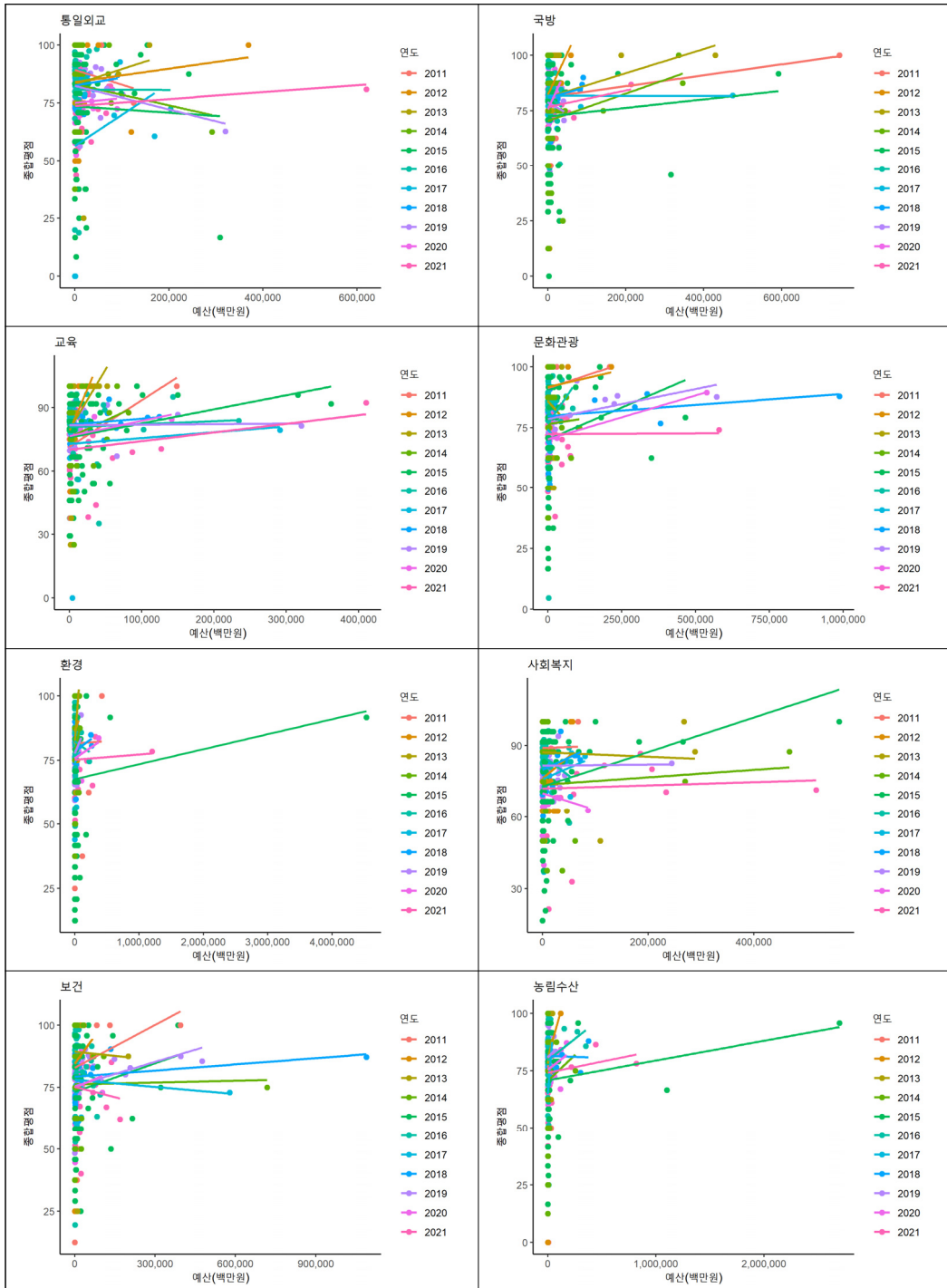
분야별로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가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4]와 같다. 여기에서 예산 규모가 추가적으로 고려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고보조평가에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국고보조평가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과연 이러한 관대화 경향과 예산 규모가 국고보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일반공공행정의 경우는 증가와 감소의 경향이 반복된다. 공공질서안전의 경우도 연도별로 예산액이 증가할 때, 감소 경향과 증가 경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외교,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 교통물류, 통신,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 등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 규모에 따른 관대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예산 규모가 국고보조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방, 교육, 환경, 농림수산,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예산액이 커질수록 종합평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클수록 평가자가 관대하게 평가를 내리거나 국고보조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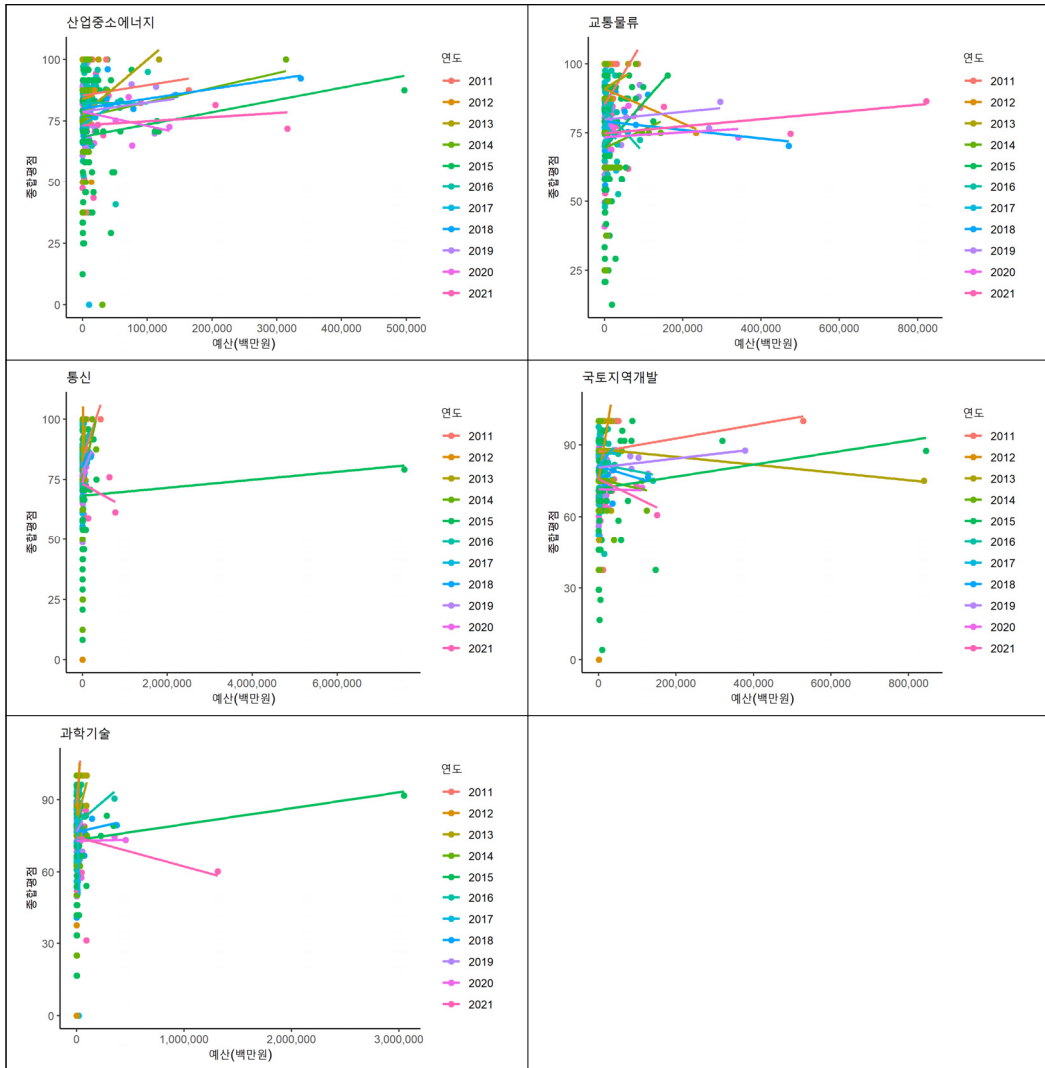
[그림 V-4] 분야별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간 관계 비교



[그림 V-4]의 계속



[그림 V-4]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다음은 Y축에 종합평점 대신에 판정결과를 놓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판정결과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판정결과에서 정상추진은 6, 사업방식 변경은 5, 감축은 4, 통폐합은 3, 단계적폐지는 2, 즉시폐지는 1로 수치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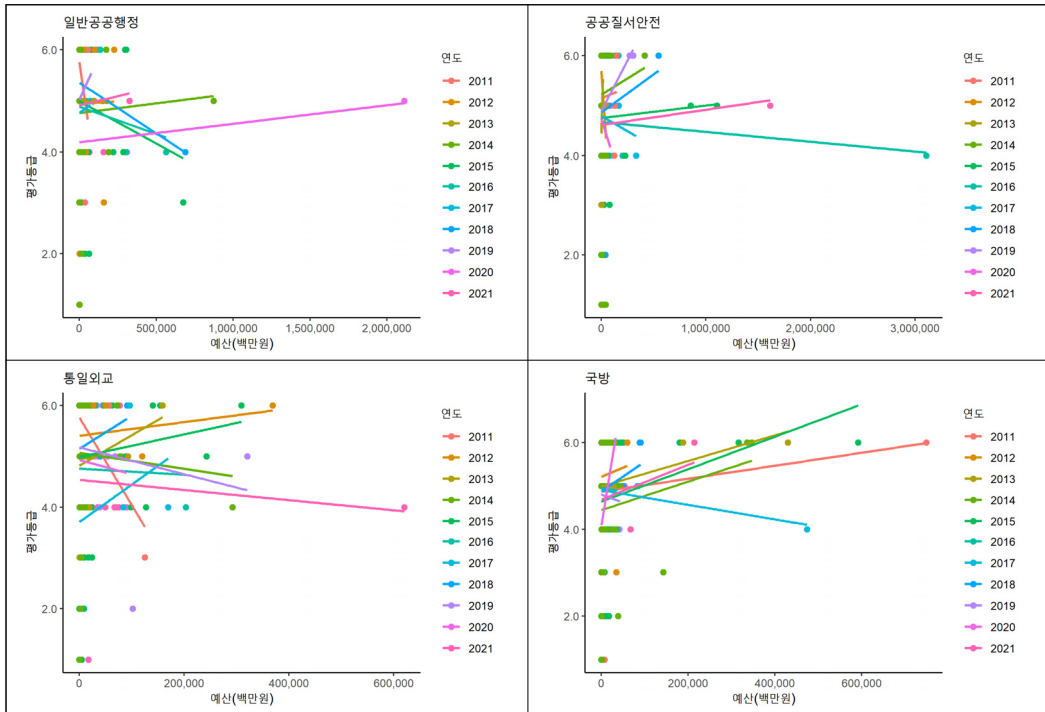
분야별로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등급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5]와 같다.

일반공공행정의 경우는 평가등급의 증가와 감소의 경향이 반복된다. 공공질서안전의 경우도 연도별로 예산액이 증가할 때, 감소 경향과 증가 경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외교,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에너지, 교통물류, 통신,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 등에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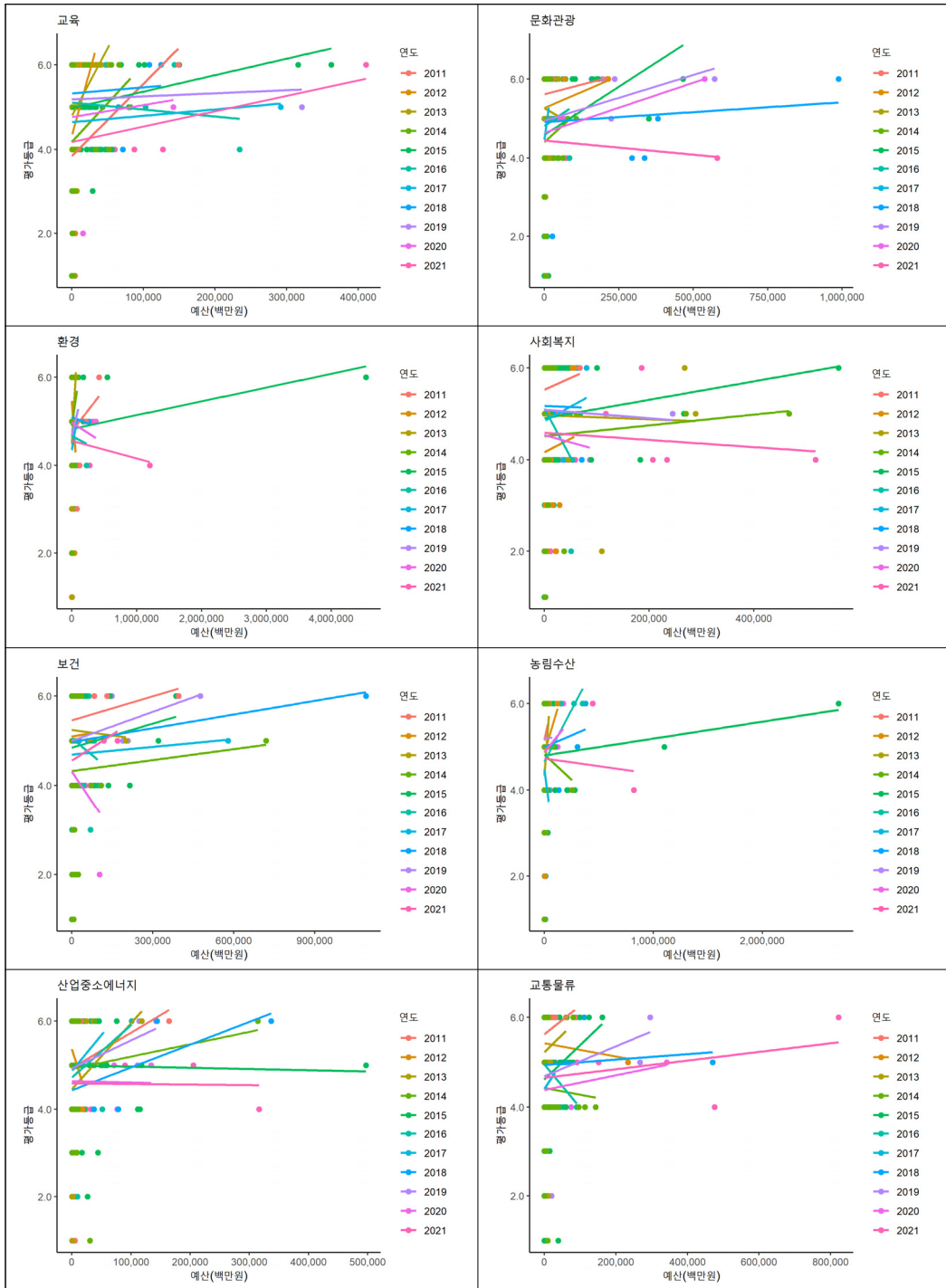
반면 국방, 교육, 문화관광 분야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예산액이 커질수록 종합평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의 경우는 주로 예산 규모가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며, 이때의 판정은 예산액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 규모와 분야가 일정한 판정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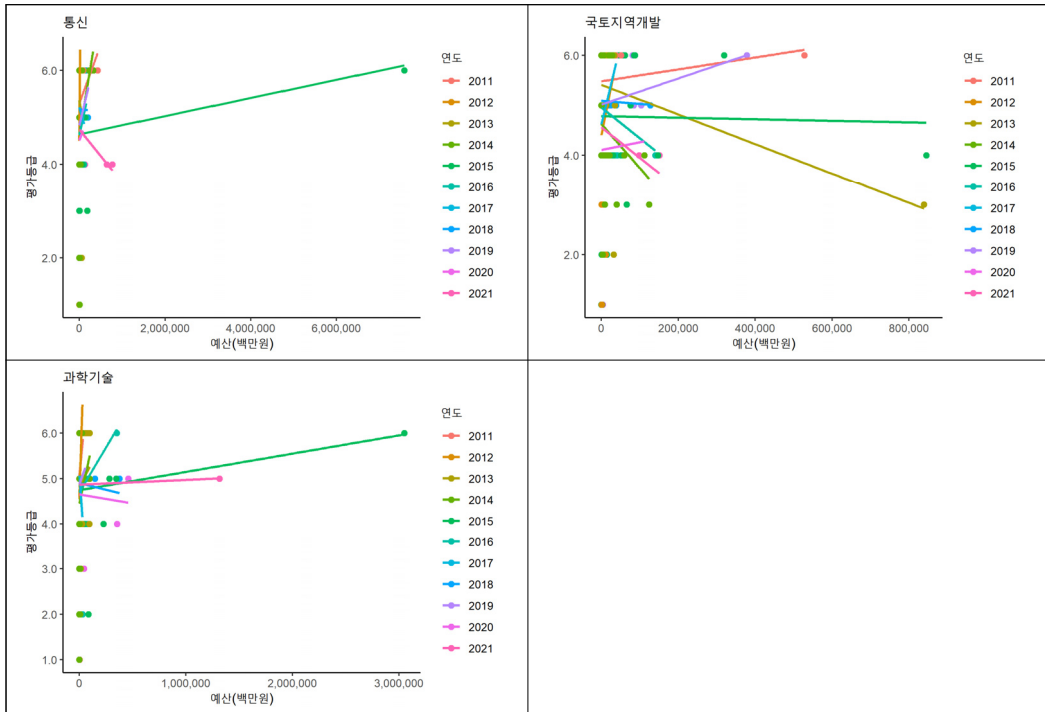
[그림 V-5] 분야별 예산 규모와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



[그림 V-5]의 계속



[그림 V-5]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 나. 회계별

2011년에서 2021년 동안 총 4,878개의 평가대상 사업을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사업의 비중은 47.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의한 사업의 비중은 각각 25.2%, 27.3%를 차지한다. 회계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11년간 전체 평균 값은 ‘특별회계(78.4점)>기금(77.3점)>일반회계(77.2점)’의 순으로 확인되어 특별회계를 통한 보조사업의 점수가 다른 두 회계사업에 비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기금과 일반회계 사업의 경우 평균값의 차이가 0.1점에 불과하여 두 회계별 보조사업 간 평가점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V-5〉 회계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단위: 점)

연도	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2011	84.5	22.2	178	86.5	22.5	75	75.0	-	1	85.0	22.3	254
2012	82.3	21.9	116	86.3	20.6	67	87.1	18.2	120	85.1	20.3	303
2013	85.0	20.8	150	86.7	16.0	66	82.6	21.6	111	84.5	20.2	327
2014	78.1	20.1	221	72.4	21.6	101	77.6	16.9	100	76.6	19.9	422
2015	70.5	23.0	636	76.0	18.4	436	70.9	22.9	350	72.3	21.8	1422
2016	80.3	14.8	202	81.9	11.8	122	81.8	13.1	148	81.2	13.5	472
2017	74.7	21.3	69	75.1	15.8	36	77.2	16.7	47	75.6	18.7	152
2018	81.3	8.4	195	78.4	10.3	76	81.0	7.4	104	80.7	8.6	375
2019	79.7	9.1	208	80.1	9.8	107	79.5	7.7	134	79.7	8.9	449
2020	74.7	8.8	99	75.9	8.3	59	73.0	10.3	83	74.4	9.3	241
2021	74.7	10.2	244	74.3	8.4	85	73.0	12.9	132	74.1	10.7	461
전체	77.2	18.9	2318	78.4	16.9	1230	77.3	17.8	1330	77.5	18.1	487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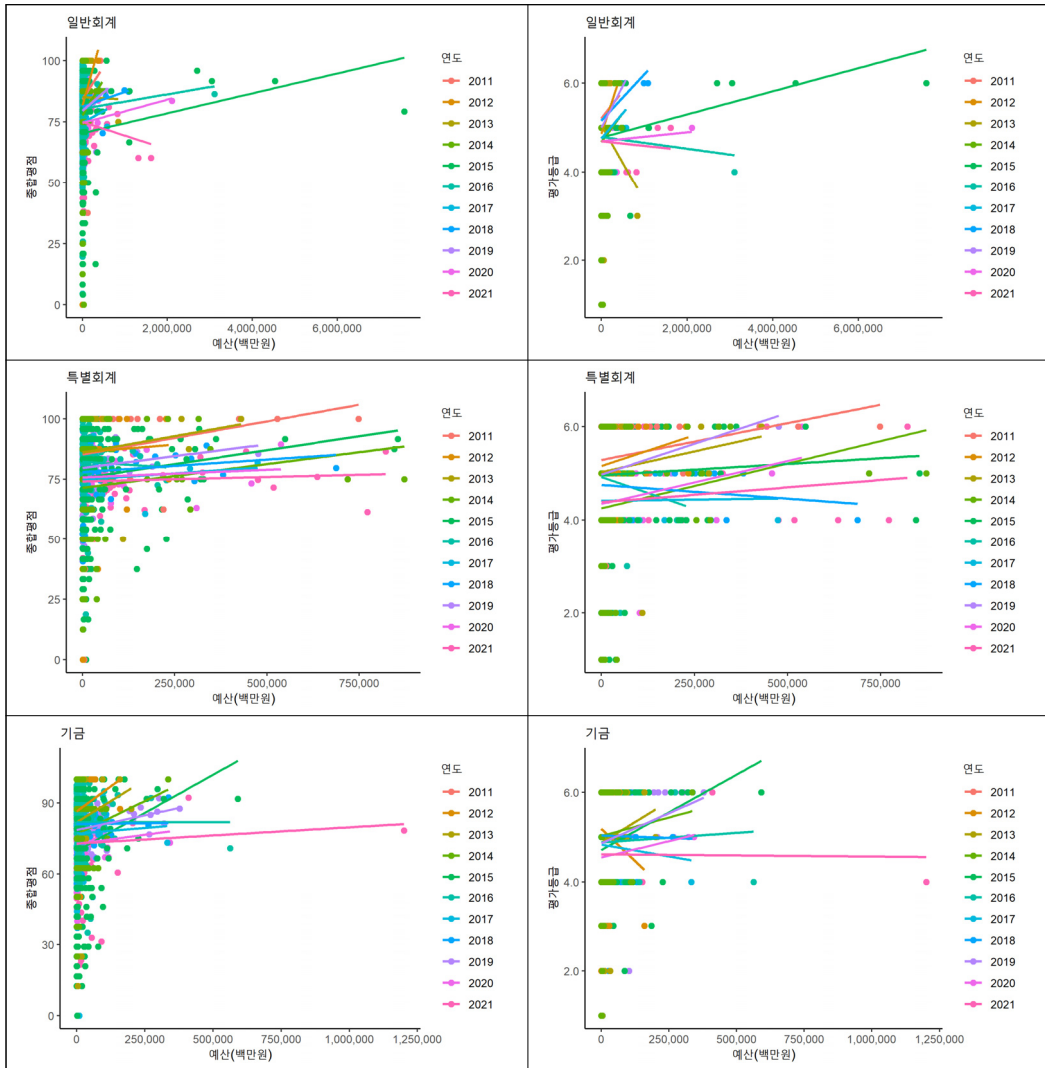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로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6]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종합판정점수와 평가등급에서 증가와 감소의 경향이 반복된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종합판정점수와 평가등급이 증가한다. 기금의 경우는 종합평점에서는 증가의 경향이 보이나, 평가등급에서는 2개연도가 예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평가등급이 낮은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 구분 역시 일정한 정도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6] 회계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다. 유형별

지난 11년 동안 평가를 받은 보조사업을 유형별로 볼 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2,524개로 평가대상 사업의 5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유형은 지자체경상보조사업으로 1,389개로 약 28.5%를 차지하여 경상보조사업이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126개 사업이 평가되어 전체

의 2.6%에 불과하였고, 지자체자본보조사업도 839개로 17.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결과 점수를 네 가지 사업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11년간 평균값의 순서가 '민간자본(79.9점) > 지자체자본(79.2점) > 지자체경상(77.5점) > 민간경상(76.8점)'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 전체적으로 자본보조사업이 경상보조사업보다 평가점수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자본과 지자체자본 그리고 민간경상과 지자체경상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6〉 사업유형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단위: 점)

연도	사업유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전체		
	평균	표준편차	개수	평균	표준편차	개수	평균	표준편차	개수	평균	표준편차	개수	평균	표준편차	개수
2011	84.2	23.4	138	75.0	25.0	3	84.7	22.5	72	89.3	17.3	41	85.0	22.3	254
2012	83.7	20.6	179	84.8	28.6	14	87.2	19.8	59	87.5	16.9	51	85.1	20.3	303
2013	82.8	21.7	172	98.6	4.0	18	86.3	18.0	74	83.1	20.1	63	84.5	20.2	327
2014	77.4	19.5	220	69.0	25.1	21	76.0	19.9	100	77.3	19.3	81	76.6	19.9	422
2015	70.6	22.8	743	79.4	16.8	41	71.9	21.8	352	76.2	18.7	286	72.3	21.8	1422
2016	80.9	13.1	253	76.7	29.6	13	81.0	13.3	137	83.8	11.1	69	81.2	13.5	472
2017	74.1	21.6	66	88.7	9.7	2	77.3	11.3	58	74.6	23.8	26	75.6	18.7	152
2018	80.7	8.8	191	63.6	17.2	3	81.0	8.1	122	80.6	7.7	59	80.7	8.6	375
2019	79.9	8.3	251	77.4	7.7	4	79.5	10.0	133	79.4	8.9	61	79.7	8.9	449
2020	71.5	9.9	97	73.5	12.1	4	76.4	8.0	101	76.5	8.9	39	74.4	9.3	241
2021	74.1	11.1	214	70.4	4.2	3	74.0	11.3	181	74.8	7.4	63	74.1	10.7	461
전체	76.8	19.0	2524	79.9	21.6	126	77.5	17.0	1389	79.2	16.7	839	77.5	18.1	4878

자료: 저자 작성

보조사업을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방자치단체경상, 지방자치단체자본 등으로 구분한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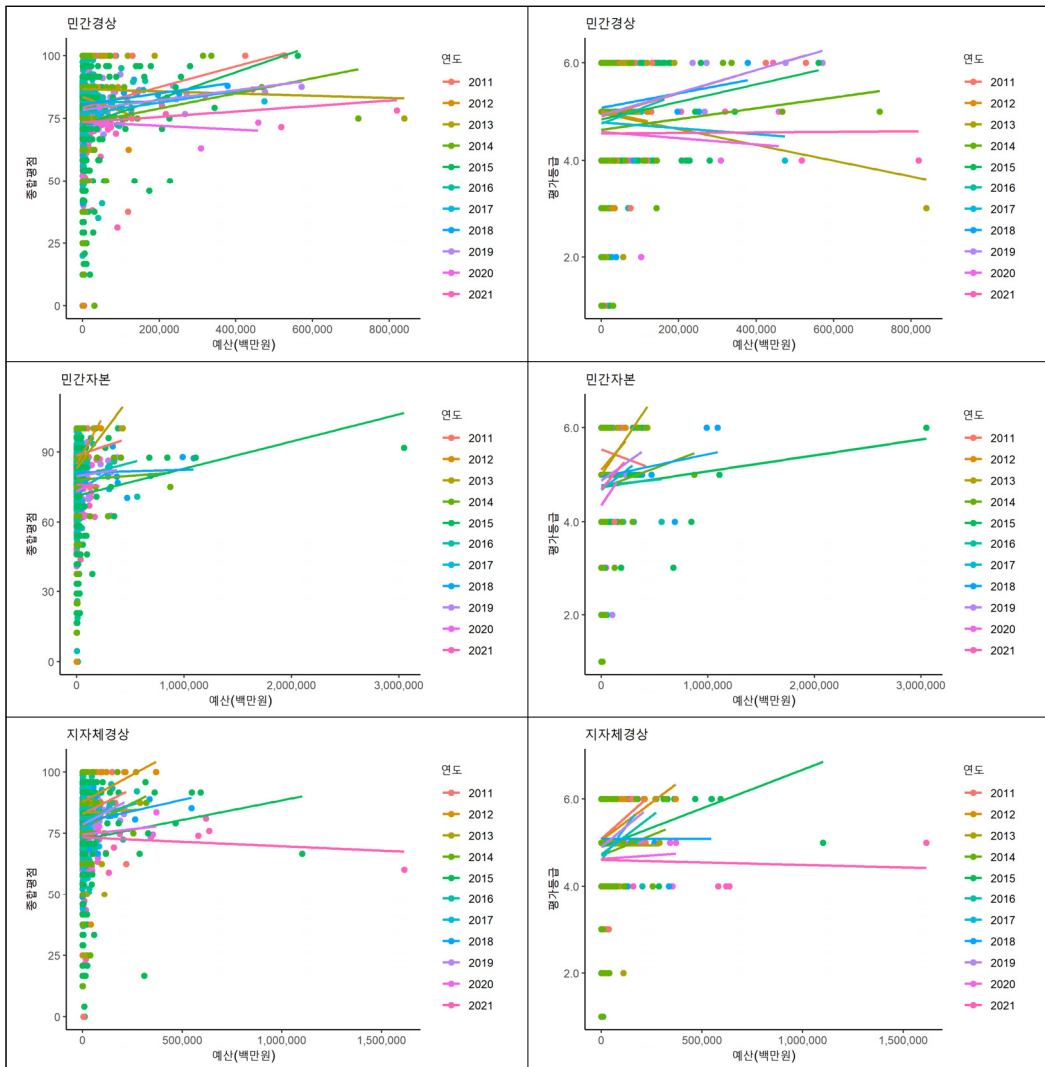
민간경상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나, 민간자본의 경우는 단일 연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가의 경향을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의 경우는 2020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종합평점과 평가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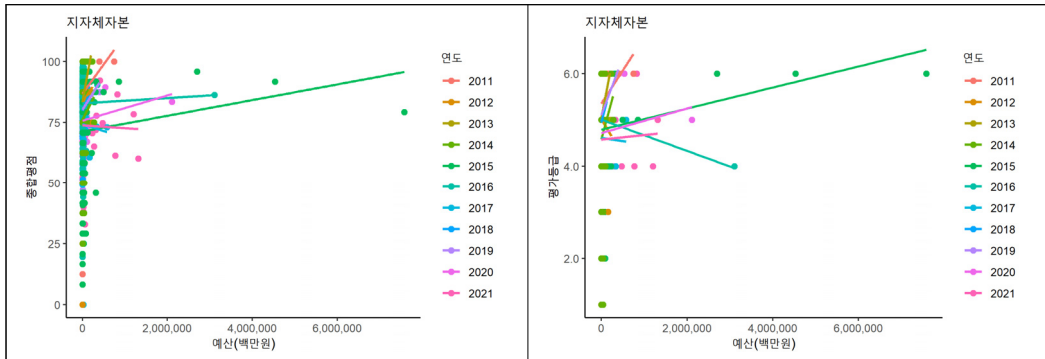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또한 2020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종합평점과 평가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따라서 민간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구분 등 보조사업 유형 구분도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7] 보조사업 유형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



[그림 V-7]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 라. 예산 규모별

11년 동안 평가된 총 4,878개 사업을 사업예산 규모로 구분하면 소규모예산 사업이 2,697개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며, 중규모예산 사업은 24.7% 그리고 대규모예산 사업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조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평가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11년 동안 평균값이 '대규모(79.2점)>중규모(77.5점)>소규모(76.8점)'의 순으로 확인되어 사업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평가점수를 높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7〉 사업예산 규모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단위: 점, 개)

연도	사업예산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2011	84.9	22.3	252	100.0	0.0	2	-	-	-	85.0	22.3	254
2012	83.4	22.7	187	87.6	14.8	80	88.1	16.3	36	85.1	20.3	303
2013	83.0	21.6	210	85.8	18.5	70	89.0	15.5	47	84.5	20.2	327
2014	74.4	20.6	239	80.9	18.9	101	77.8	17.9	82	76.6	19.9	422
2015	69.1	23.0	802	75.1	19.4	361	78.3	18.9	259	72.3	21.8	1422
2016	80.0	14.1	243	82.3	13.9	127	82.8	11.5	102	81.2	13.5	472
2017	73.3	23.0	60	76.5	14.7	53	77.8	15.9	39	75.6	18.7	152
2018	79.7	9.7	165	81.3	7.8	110	81.5	7.3	100	80.7	8.6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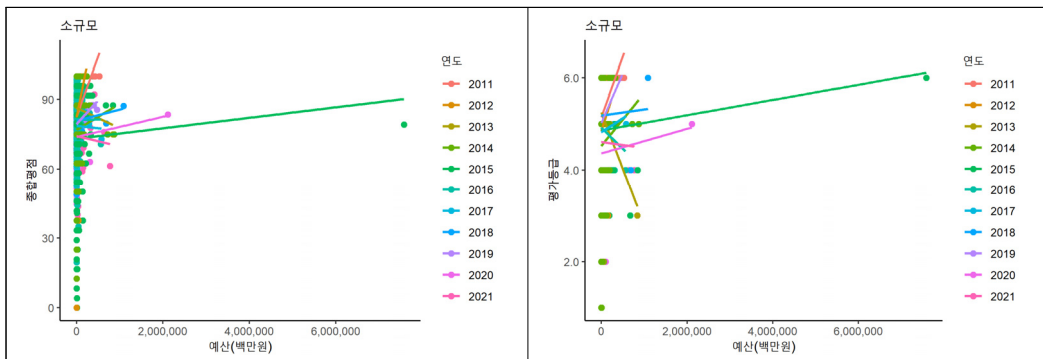
〈표 V-7〉의 계속

연도	사업예산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2019	78.8	9.4	212	79.5	9.3	120	81.6	7.1	117	79.7	8.9	449
2020	73.0	10.9	107	75.8	7.1	70	75.3	8.1	64	74.4	9.3	241
2021	74.4	10.1	220	73.8	11.7	110	73.9	11.1	131	74.1	10.7	461
전체	76.2	20.0	2697	78.8	15.9	1204	79.5	14.6	977	77.5	18.1	487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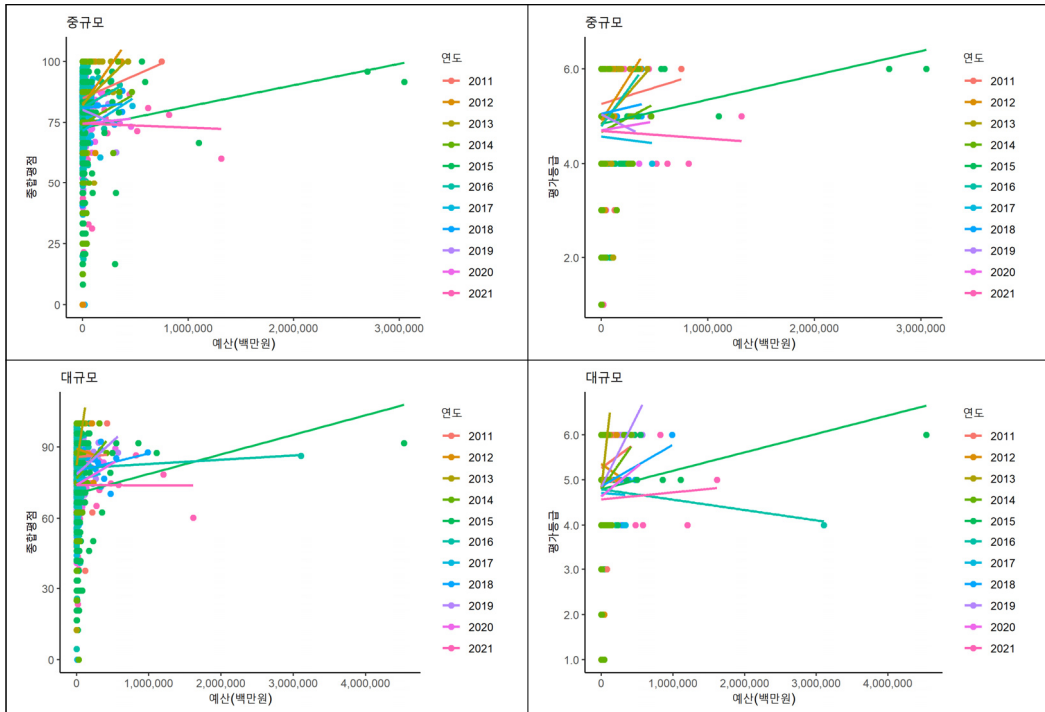
보조사업을 예산 규모에 따라 소규모 사업, 중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으로 구분한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8]과 같다.<sup>31)</sup>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2개년도를 제외하고는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종합평점과 평가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다음의 [그림 V-8]에서는 가독성을 위하여 예산 규모에 로그를 취한 후 종합평점과 평가등급 간 관계를 비교하였다.

[그림 V-8] 예산 규모별 종합평점과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



31) 사업예산 규모에 따른 구분은 50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는 소규모, 50억~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중규모, 2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규모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V-8]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 마. 신규 및 계속 보조사업별

평가 대상 보조사업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지난 11년간 평가대상 4,878개 사업의 대부분인 98.4%는 계속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평가된 61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간 수의 차이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지속하여 수행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며 이는 보조사업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된 보조사업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보조사업의 경우 2016년도에 도입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제도에 의해 2017년 이후에는 평가대상 사업 중 신규사업이 없다는 점도 주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간 평가결과 점수 비교는 2011~2016년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는 ‘계속사업(79.1점) > 신규사업(75.6점)’으로 계속사업의 평가점수가 신규사업보다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8〉 신규 및 계속사업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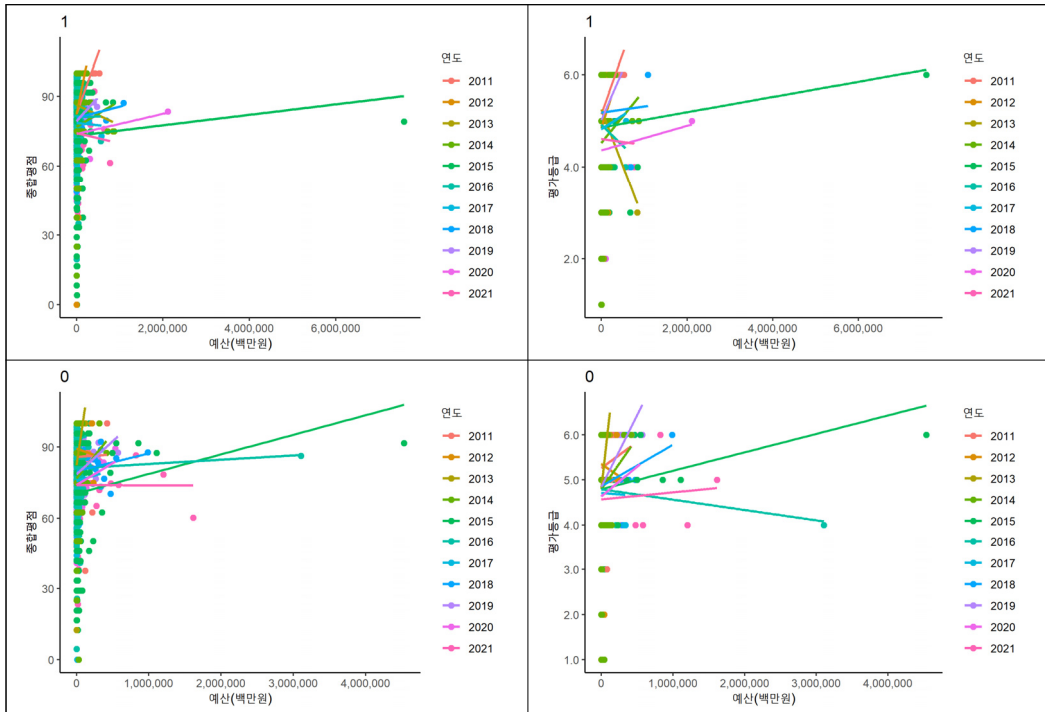
(단위: 점, 개)

연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2011	85.1	22.3	247	83.9	23.6	7	85.0	22.3	254
2012	85.0	20.3	301	100.0	-	1	85.1	20.3	303
2013	84.5	20.3	326	100.0	-	1	84.5	20.2	327
2014	76.8	20.0	401	73.8	17.1	21	76.6	19.9	422
2015	72.3	21.8	1394	72.4	22.2	28	72.3	21.8	1422
2016	81.2	13.6	469	82.3	3.8	3	81.2	13.5	472
2011~2016	79.1	-	3138	75.6	-	61	-	-	-
2017	75.6	18.7	152	-	-	-	75.6	18.7	152
2018	80.7	8.6	375	-	-	-	80.7	8.6	375
2019	79.7	8.9	449	-	-	-	79.7	8.9	449
2020	74.4	9.3	241	-	-	-	74.4	9.3	241
2021	74.2	10.7	460	-	-	-	74.1	10.7	461
전체	77.5	18.1	4815	75.6	20.3	61	77.5	18.1	4878

자료: 저자 작성

보조사업을 계속사업(1)과 신규사업(0)으로 구분한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9]와 같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종합평점에서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종합평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평가등급에서는 2개년도의 예외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는 평가등급이 예산 규모가 높을수록 평가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림 V-9] 신규 및 계속사업 간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바. 일몰 및 비일몰사업별

11년 동안 평가대상 사업 중 415개는 일몰보조사업 그리고 일몰이 지정되지 않은 비일몰사업의 수는 4,461개로 비일몰사업이 91.5%를 차지하고 있다. 두 가지 유형의 11년 동안 평가결과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비일몰사업(77.7점) > 일몰사업(75.5점)’으로 확인되어 일몰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의 평가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9〉 일몰 및 비일몰사업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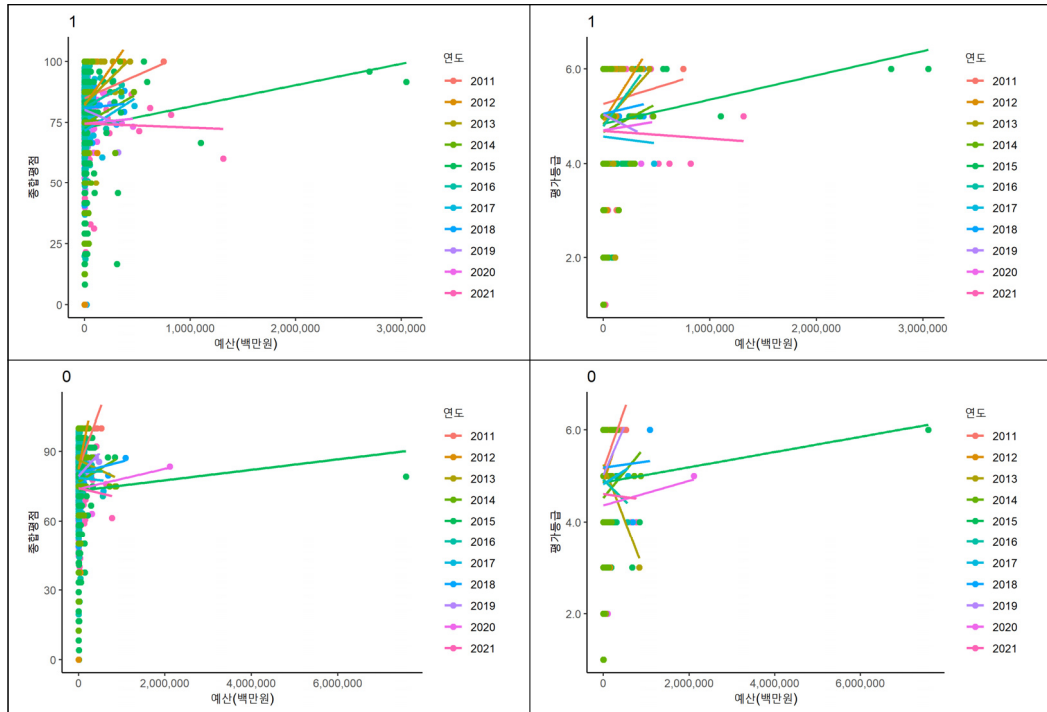
(단위: 점, 개)

연도	일몰사업 및 비일몰사업								
	일몰사업			비일몰사업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2011	70.0	27.4	25	86.7	21.0	229	85.0	22.3	254
2012	81.5	22.6	50	85.8	19.8	252	85.0	20.3	302
2013	78.4	24.9	29	85.1	19.7	298	84.5	20.2	327
2014	69.5	20.5	41	77.4	19.7	381	76.6	19.9	422
2015	74.5	20.8	50	72.2	21.8	1,372	72.3	21.8	1,422
2016	77.8	18.8	61	81.7	12.5	411	81.2	13.5	472
2017	61.1	30.4	17	77.4	15.9	135	75.6	18.7	152
2018	80.0	5.1	26	80.7	8.8	349	80.7	8.6	375
2019	80.3	7.7	38	79.7	9.0	411	79.7	8.9	449
2020	76.0	8.7	27	74.2	9.3	214	74.4	9.3	241
2021	72.7	8.5	51	74.4	11.0	409	74.2	10.7	460
전체	75.5	19.2	415	77.7	18.0	4,461	77.5	18.1	4,876

자료: 저자 작성

보조사업을 일몰사업(1)과 그렇지 않은 사업(0)으로 구분한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10]과 같다. 예상과 달리 일몰사업의 경우도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종합평점과 평가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2021년 사업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일몰이 아닌 사업에서는 특별한 결과를 찾기가 어렵다.

[그림 V-10] 일몰 및 비일몰사업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사. 목적변경 유무

11년 동안 평가대상 사업 중 사업목적이 변경된 사업은 323개로 전체 평가대상 사업의 6.6%를 차지하고, 나머지 93.4%는 사업목적의 변경이 없는 사업을 차지하였다. 두 유형의 11년 동안 평가결과 점수의 평균값은 ‘목적변경이 없는 사업(77.8 점) > 목적변경사업(73.7점)’으로, 목적변경을 하지 않은 사업의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목적변경 유무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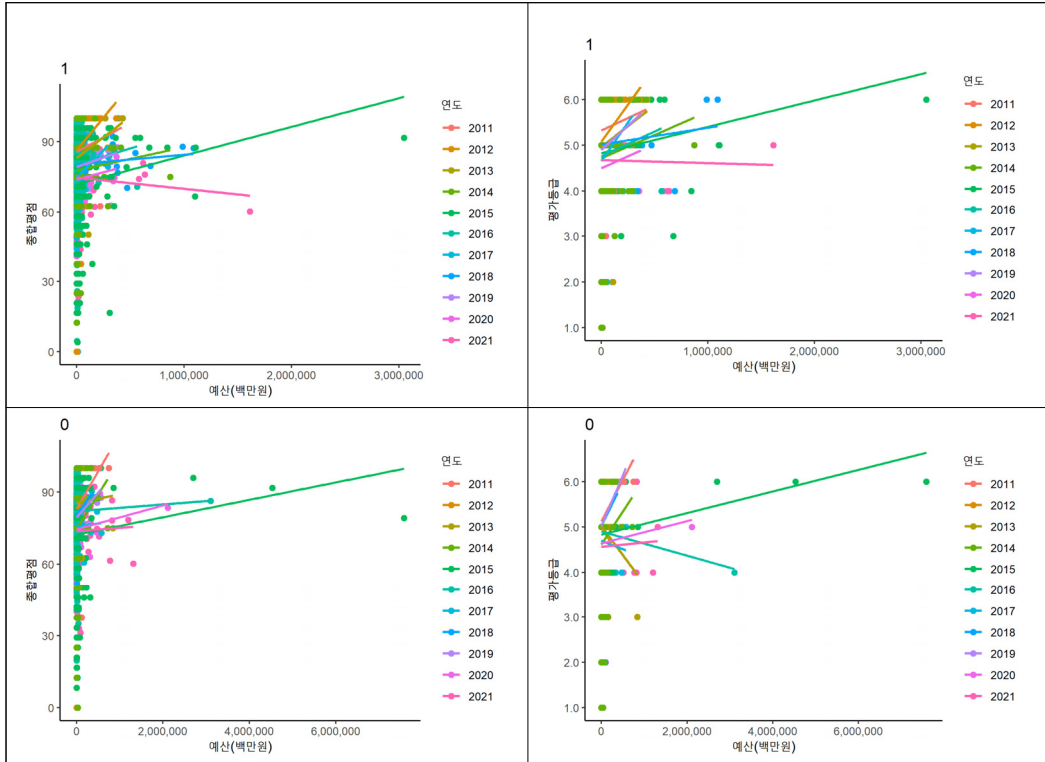
(단위: 점, 개)

연도	목적변경 유무								
	목적변경사업			목적변경이 없는 사업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2011	79.4	30.2	17	85.4	21.6	237	85.0	22.3	254
2012	79.1	22.2	18	85.5	20.1	285	85.1	20.3	303
2013	72.9	24.0	24	85.4	19.7	303	84.5	20.2	327
2014	69.5	24.9	23	77.0	19.5	399	76.6	19.9	422
2015	69.6	20.2	80	72.5	21.9	1342	72.3	21.8	1422
2016	75.8	15.0	33	81.6	13.4	439	81.2	13.5	472
2017	71.3	24.2	12	76.0	18.2	140	75.6	18.7	152
2018	80.8	8.0	29	80.6	8.6	346	80.7	8.6	375
2019	79.8	7.4	28	79.7	9.0	421	79.7	8.9	449
2020	71.3	13.2	20	74.7	8.8	221	74.4	9.3	241
2021	71.0	11.9	39	74.4	10.6	422	74.1	10.7	461
전체	73.7	18.8	323	77.8	18.1	4555	77.5	18.1	4878

자료: 저자 작성

보조사업을 목적변경사업(1)과 그렇지 않은 사업(0)으로 구분한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11]과 같다. 목적변경 유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V-11] 목적변경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아. 유사중복 지적사업 여부

11년 동안 평가된 사업 중 유사중복의 지적을 받은 사업의 수는 총 365개로 전체 사업의 약 7.5%를 차지한다. 유사중복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표 V-11>도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11년 동안 평가결과 점수의 평균값은 ‘유사중복 지적이 없는 사업(77.5점) 유사중복 지적사업(75.7점)’으로 확인되었다.

〈표 V-11〉 유사중복 지적 여부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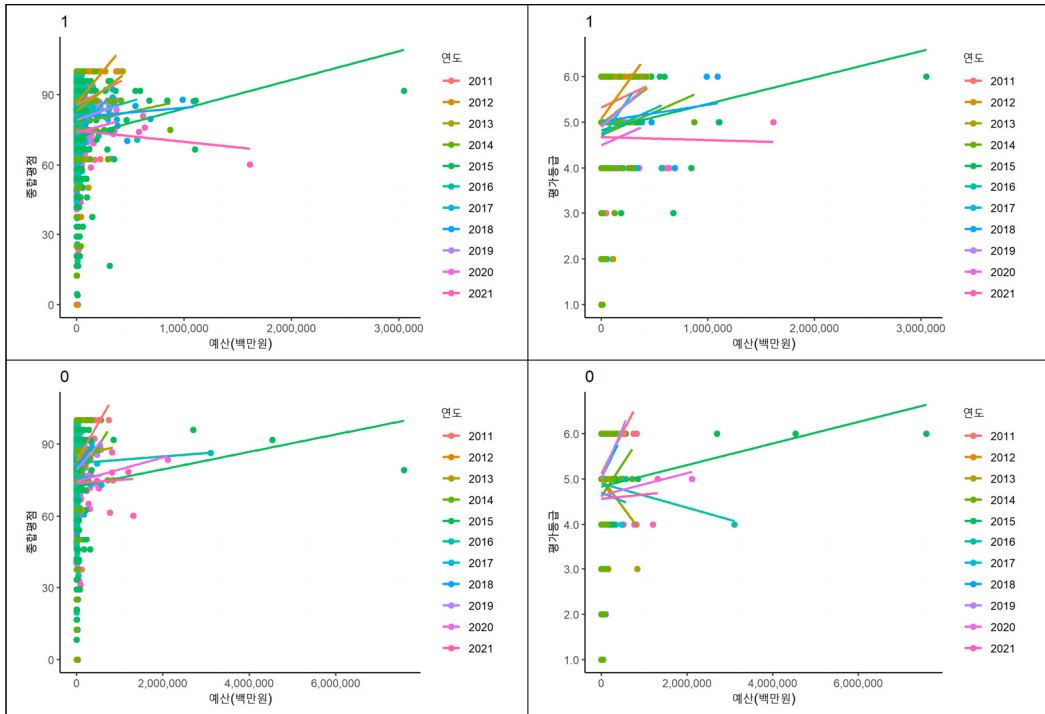
(단위: 점, 개)

연도	유사중복 지적 유무								
	유사중복 지적사업			유사중복 지적이 없는 사업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2011	75.0	18.8	8	85.4	22.3	246	85.0	22.3	254
2012	80.5	20.8	9	85.2	20.3	294	85.1	20.3	303
2013	93.0	11.0	9	84.3	20.4	318	84.5	20.2	327
2014	79.6	19.9	8	76.6	19.9	414	76.6	19.9	422
2015	73.4	19.7	159	72.2	22.0	1263	72.3	21.8	1422
2016	77.3	16.3	58	81.8	13.0	414	81.2	13.5	472
2017	67.9	28.5	22	76.9	16.2	130	75.6	18.7	152
2018	78.7	9.5	36	80.9	8.5	339	80.7	8.6	375
2019	80.9	5.7	23	79.7	9.0	426	79.7	8.9	449
2020	76.0	7.0	15	74.3	9.4	226	74.4	9.3	241
2021	75.3	10.9	18	74.1	10.8	443	74.1	10.7	461
전체	75.7	17.9	365	77.7	18.2	4513	77.5	18.1	4878

자료: 저자 작성

보조사업을 유사중복 지적사업(1)과 그렇지 않은 사업(0)으로 구분한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12]와 같다. 유사중복 지적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보다도 예산액의 증가에 따라 평가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유사중복 지적사업이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사업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림 V-12] 유사중복 지적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자. 부정수급 지적 여부

11년 동안 평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의 문제가 지적된 사업의 수는 전체의 3.1%인 155개 사업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부정수급이 지적된 사업의 수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평가과정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된 사업은 보조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가결과 점수도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없는 사업에 비해 높을 수가 없다. 11년간 부정수급 지적을 받은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부정수급 지적이 없는 사업(77.6점) > 부정수급 지적사업(74.8점)’으로 확인된다.

〈표 V-12〉 부정수급 지적 여부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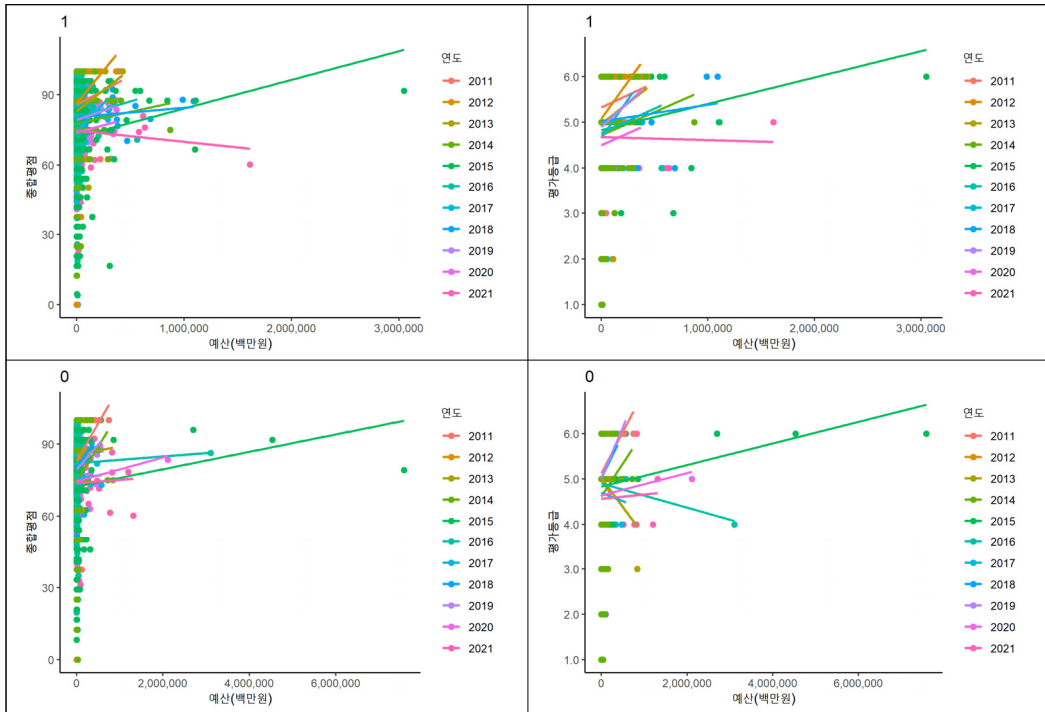
(단위: 점)

연도	부정수급 지적 유무								
	부정수급 지적사업			부정수급 지적이 없는 사업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2011	75.0	-	1	85.1	22.3	253	85.0	22.3	254
2012	82.5	24.3	5	85.1	20.2	298	85.1	20.3	303
2013	83.3	19.0	3	84.5	20.3	324	84.5	20.2	327
2014	75.0	25.7	9	76.6	19.8	413	76.6	19.9	422
2015	70.2	23.4	56	72.4	21.7	1366	72.3	21.8	1422
2016	73.8	15.9	18	81.5	13.4	454	81.2	13.5	472
2017	82.3	6.6	4	75.4	18.9	148	75.6	18.7	152
2018	77.9	8.1	15	80.8	8.6	360	80.7	8.6	375
2019	77.9	7.5	16	79.8	8.9	433	79.7	8.9	449
2020	77.9	6.8	20	74.1	9.4	221	74.4	9.3	241
2021	77.8	6.5	8	74.1	10.8	453	74.1	10.7	461
전체	74.8	17.7	155	77.6	18.2	4723	77.5	18.1	4878

자료: 저자 작성

보조사업을 부정수급 지적사업(1)과 그렇지 않은 사업(0)으로 구분한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V-13]과 같다. 부정수급 지적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보다도 예산액의 증가에 따라 평가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부정수급 지적이 국고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연관이 적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림 V-13] 부정수급 지적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차. 적격성 심사 도입 이전 및 이후

무분별한 신규보조 사업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2016년에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가 도입되었다. 지난 11년 동안 평가된 전체 사업 중 적격성 심사 이전 기간에 평가된 사업의 수는 2,728개로 전체의 55.9%를 차지하고, 2016년 이후 평가된 사업 수는 2,150개로 44.1%의 비중을 보인다. 적격성 심사가 적용된 이전과 이후의 평가 결과 점수를 비교해 보면 ‘도입이전(80.7점) > 도입이후(77.6점)’으로 도입이전 점수가 근소하게 높은 것이 확인된다. 적격성 심사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성 심사가 연장평가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평가의 관점에서 적격성 심사가 갖는 의미는 부적절한 신규 신청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연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서 부적절한 경우가 줄어들게 되어 연장평가에 제한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이전과 이

후의 평가점수 비교에서 도입 이후의 평균 점수가 도입 이전에 비해 낮은 이유는 연장평가 제도가 지속됨에 따라 평가의 엄정성이 강화된 결과로 추측된다.

〈표 V-13〉 적격성 심사 도입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가점수

(단위: 점, 개)

연도	적격성 심사 도입								
	도입 이전(2011~2015년)			도입 이후(2016~2021년)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개수
2011	85.0	22.3	254	-	-	-	85.0	22.3	254
2012	85.1	20.3	303	-	-	-	85.1	20.3	303
2013	84.5	20.2	327	-	-	-	84.5	20.2	327
2014	76.6	19.9	422	-	-	-	76.6	19.9	422
2015	72.3	21.8	1422	-	-	-	72.3	21.8	1422
2016	-	-	-	81.2	13.5	472	81.2	13.5	472
2017	-	-	-	75.6	18.7	152	75.6	18.7	152
2018	-	-	-	80.7	8.6	375	80.7	8.6	375
2019	-	-	-	79.7	8.9	449	79.7	8.9	449
2020	-	-	-	74.4	9.3	241	74.4	9.3	241
2021	-	-	-	74.1	10.7	461	74.1	10.7	461
전체	77.0	21.9	2728	78.1	11.7	2150	77.5	18.1	4878

자료: 저자 작성

### 카. 연도별 교차분석

2011년 평가의 경우 일몰사업에 대한 폐지와 감축의 비율이 각각 24%로 일몰사업이 아닌 경우의 4.8%와 8.3%보다 높았으며, 사업목적 변경이 있는 경우도 감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4〉 2011년 평가등급과 비평가요인과의 교차분석

.id	label	variable	평가등급			test
			폐지	감축	정상추진	
회계구분	회계구분	기금	0 (0%)	0 (0%)	1 (100.00%)	p value: 0.9362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일반회계	13 (7.30%)	18 (10.11%)	147 (82.58%)	
		특별회계	4 (5.33%)	7 (9.33%)	64 (85.33%)	
보조사업유형	보조사업유형	민간경상	10 (7.25%)	17 (12.32%)	111 (80.43%)	p value: 0.6059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민간자본	0 (0%)	0 (0%)	3 (100.00%)	
		지자체경상	5 (6.94%)	7 (9.72%)	60 (83.33%)	
		지자체자본	2 (4.88%)	1 (2.44%)	38 (92.68%)	
계속	계속	0	1 (14.29%)	0 (0%)	6 (85.71%)	p value: 0.4868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16 (6.48%)	25 (10.12%)	206 (83.40%)	
일몰	일몰	0	11 (4.80%)	19 (8.30%)	199 (86.90%)	p value: 0.0001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6 (24.00%)	6 (24.00%)	13 (52.00%)	
목적변경	목적변경	0	17 (7.17%)	20 (8.44%)	200 (84.39%)	p value: 0.0272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5 (29.41%)	12 (70.59%)	
유사중복	유사중복	0	17 (6.91%)	22 (8.94%)	207 (84.15%)	p value: 0.0540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3 (37.50%)	5 (62.50%)	
부정수급	부정수급	0	17 (6.72%)	24 (9.49%)	212 (83.79%)	p value: 0.1654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1 (100.00%)	0 (0%)	
규모	규모	소규모	17 (6.75%)	25 (9.92%)	210 (83.33%)	p value: 1.0000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중규모	0 (0%)	0 (0%)	2 (100.00%)	

자료: 저자 작성

2012년 평가의 경우 일몰사업에 대한 폐지의 비율이 22%로 일몰사업이 아닌 경우의 5.6%보다 높았으며, 일반회계 사업의 폐지비율이 13.8%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3년에도 일몰사업인 경우가 폐지와 감축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의 경우는 각 평가 연도에서 폐지와 감축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표 V-15〉 2012년 평가등급과 비평가요인과의 교차분석

.id	label	variable	평가등급			test
			폐지	감축	정상추진	
회계구분	회계구분	기금	5 (4.17%)	26 (21.67%)	89 (74.17%)	p value: 0.0294 (Pearson's Chi-squared test)
		일반회계	16 (13.79%)	14 (12.07%)	86 (74.14%)	
		특별회계	4 (5.97%)	10 (14.93%)	53 (79.10%)	
보조사업유형	보조사업유형	민간경상	13 (7.26%)	31 (17.32%)	135 (75.42%)	p value: 0.2527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민간자본	2 (14.29%)	3 (21.43%)	9 (64.29%)	
		지자체경상	3 (5.08%)	12 (20.34%)	44 (74.58%)	
		지자체자본	7 (13.73%)	4 (7.84%)	40 (78.43%)	
계속	계속	0	0 (0%)	0 (0%)	1 (100.00%)	p value: 1.0000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25 (8.31%)	50 (16.61%)	226 (75.08%)	
		NA	0	0	1	
일몰	일몰	0	14 (5.56%)	42 (16.67%)	196 (77.78%)	p value: 0.0015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11 (22.00%)	8 (16.00%)	31 (62.00%)	
		NA	0	0	1	
목적변경	목적변경	0	25 (8.77%)	46 (16.14%)	214 (75.09%)	p value: 0.4436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4 (22.22%)	14 (77.78%)	
유사중복	유사중복	0	25 (8.50%)	48 (16.33%)	221 (75.17%)	p value: 0.7104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2 (22.22%)	7 (77.78%)	
부정수급	부정수급	0	25 (8.39%)	49 (16.44%)	224 (75.17%)	p value: 1.0000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1 (20.00%)	4 (80.00%)	
규모	규모	대규모	3 (8.33%)	7 (19.44%)	26 (72.22%)	p value: 0.5683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소규모	18 (9.63%)	27 (14.44%)	142 (75.94%)	
		중규모	4 (5.00%)	16 (20.00%)	60 (75.00%)	

자료: 저자 작성

사업이 속한 회계에서도 평가연도별로 평가등급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2018년의 경우 특별회계의 정상추진은 55.3%로 일반회계의 80.0%와 기금의 68.3%보다 낮았으며, 2021년 평가에서도 특별회계의 정상추진은 42.4%로 일반회계의 60.7%와 기금의 58.3%보다 낮았다. 평가연도별로 보면,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21년에 회계별 구분과 평가등급 간에 유의성이 발견되었지만, 일반회계 사업이 정상추진이 낮은 경우도 있어서 어느 회계가 평가등급이 좋다 나쁘다의 구분이 어렵다.

2018년의 경우 보조사업 유형도 평가등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민간

경상과 지자체경상의 경우 정상추진은 각각 77.0%와 70.5%였는데 민간자본과 지자체자본의 경우는 정상추진의 비율이 33.3%와 59.3%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본사업의 경우 공사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업일정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정상추진 판정이 쉽게 나오지 않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발견되었는데 2020년의 경우도 민간자본의 정상추진은 50.0%, 지자체자본사업은 53.9%로 나타났고, 2021년의 경우도 민간자본의 정상추진은 33.3%, 지자체자본사업은 44.4%로 나타났다.

〈표 V-16〉 2018년 평가등급과 비평가요인과의 교차분석

.id	label	variable	평가등급			test
			폐지	감축	정상추진	
회계구분	회계구분	기금	1 (0.96%)	32 (30.77%)	71 (68.27%)	p value: 0.0003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일반회계	5 (2.56%)	34 (17.44%)	156 (80.00%)	
		특별회계	4 (5.26%)	30 (39.47%)	42 (55.26%)	
보조사업유형	보조사업유형	민간경상	3 (1.57%)	41 (21.47%)	147 (76.96%)	p value: 0.0038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민간자본	0 (0%)	2 (66.67%)	1 (33.33%)	
		지자체경상	1 (0.82%)	35 (28.69%)	86 (70.49%)	
		지자체자본	6 (10.17%)	18 (30.51%)	35 (59.32%)	
계속	계속	1	10 (2.67%)	96 (25.60%)	269 (71.73%)	No test
일률	일률	0	3 (0.86%)	90 (25.79%)	256 (73.35%)	p value: <0.0001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7 (26.92%)	6 (23.08%)	13 (50.00%)	
목적변경	목적변경	0	10 (2.89%)	88 (25.43%)	248 (71.68%)	p value: 0.9243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8 (27.59%)	21 (72.41%)	
유사중복	유사중복	0	10 (2.95%)	84 (24.78%)	245 (72.27%)	p value: 0.4860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12 (33.33%)	24 (66.67%)	
부정수급	부정수급	0	10 (2.78%)	92 (25.56%)	258 (71.67%)	p value: 1.0000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4 (26.67%)	11 (73.33%)	
규모	규모	대규모	2 (2.00%)	25 (25.00%)	73 (73.00%)	p value: 0.3332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소규모	6 (3.64%)	49 (29.70%)	110 (66.67%)	
		중규모	2 (1.82%)	22 (20.00%)	86 (78.18%)	

자료: 저자 작성

사업의 예산 규모 역시 평가등급과 관련이 있는데, 상기의 2018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2017년의 평가에서는 대규모 사업은 감축이 33.3%, 정상추진이 66.7%로

폐지가 없었으나, 중규모 사업은 폐지가 1.9%, 감축이 45.3%, 정상추진이 52.3%였고, 소규모 사업은 폐지가 13.3%, 감축이 26.7%, 정상추진이 60.0%의 비율을 보여 대규모 사업의 경우 폐지가 없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 폐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소규모 사업의 폐지가 많고, 감축도 많은 경향을 보였다.

2021년의 평가에서도 사업의 예산 규모와 평가등급 간의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는데, 대규모 사업은 폐지가 없고 감축이 더 많은 51.9%의 비율을 보였으나, 중규모 사업은 정상추진이 47.3%, 소규모 사업은 정상추진이 66.4%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사업은 사업폐지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보조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이유가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대규모 사업은 폐지가 적고, 초기에는 소규모 사업의 감축이 많았다가 최근에 오면서 정상추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참고로 2015년의 경우 소규모 사업의 정상추진비율은 58.0%로 중규모 사업의 63.0%보다 적었고, 2016년의 경우 60%로 중규모 사업의 52.8%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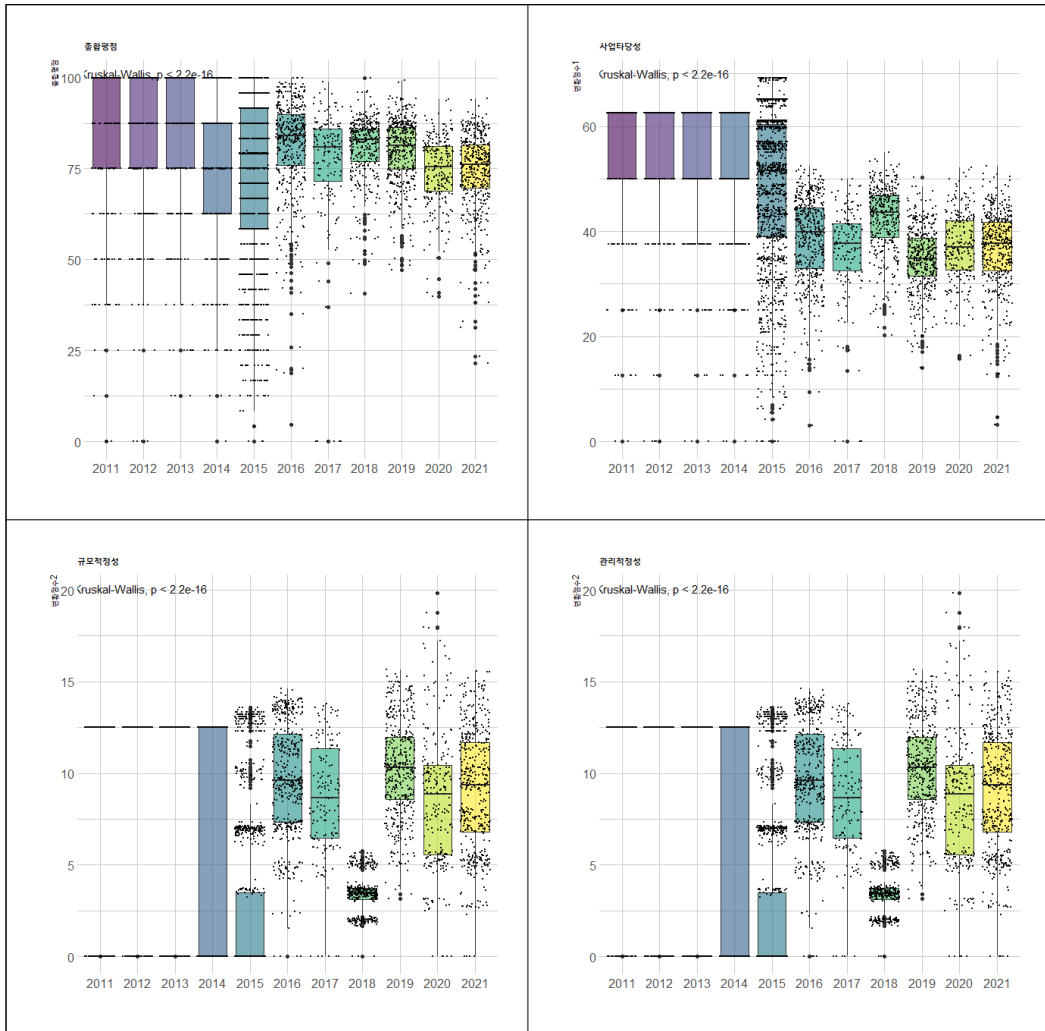
〈표 V-17〉 2021년 평가등급과 비평가요인과의 교차분석

.id	label	variable	평가등급			test
			폐지	감축	정상추진	
회계구분	회계구분	기금	6 (4.55%)	49 (37.12%)	77 (58.33%)	p value: 0.0412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일반회계	7 (2.87%)	89 (36.48%)	148 (60.66%)	
		특별회계	5 (5.88%)	44 (51.76%)	36 (42.35%)	
보조사업유형	보조사업유형	민간경상	3 (1.40%)	85 (39.72%)	126 (58.88%)	p value: 0.0018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민간자본	1 (33.33%)	1 (33.33%)	1 (33.33%)	
		지자체경상	6 (3.31%)	69 (38.12%)	106 (58.56%)	
		지자체자본	8 (12.70%)	27 (42.86%)	28 (44.44%)	
계속	계속	1	17 (3.70%)	182 (39.57%)	261 (56.74%)	No test
		NA	1	0	0	
일몰	일몰	0	6 (1.47%)	161 (39.36%)	242 (59.17%)	p value: <0.0001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11 (21.57%)	21 (41.18%)	19 (37.25%)	
		NA	1	0	0	
목적변경	목적변경	0	17 (4.03%)	162 (38.39%)	243 (57.58%)	p value: 0.2677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1 (2.56%)	20 (51.28%)	18 (46.15%)	
유사중복	유사중복	0	18 (4.06%)	175 (39.50%)	250 (56.43%)	p value: 1.0000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7 (38.89%)	11 (61.11%)	
부정수급	부정수급	0	18 (3.97%)	179 (39.51%)	256 (56.51%)	p value: 1.0000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1	0 (0%)	3 (37.50%)	5 (62.50%)	
규모	규모	대규모	0 (0%)	68 (51.91%)	63 (48.09%)	p value: <0.0001 (Fisher's Exact Test for Count Data)
		소규모	11 (5.00%)	63 (28.64%)	146 (66.36%)	
		중규모	7 (6.36%)	51 (46.36%)	52 (47.27%)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14]는 종합평점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 종합평점의 하락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의 점수는 오히려 최근에 상향을 보인다. 최근 종합평점의 하락 경향은 규모 적정성과 관리 적정성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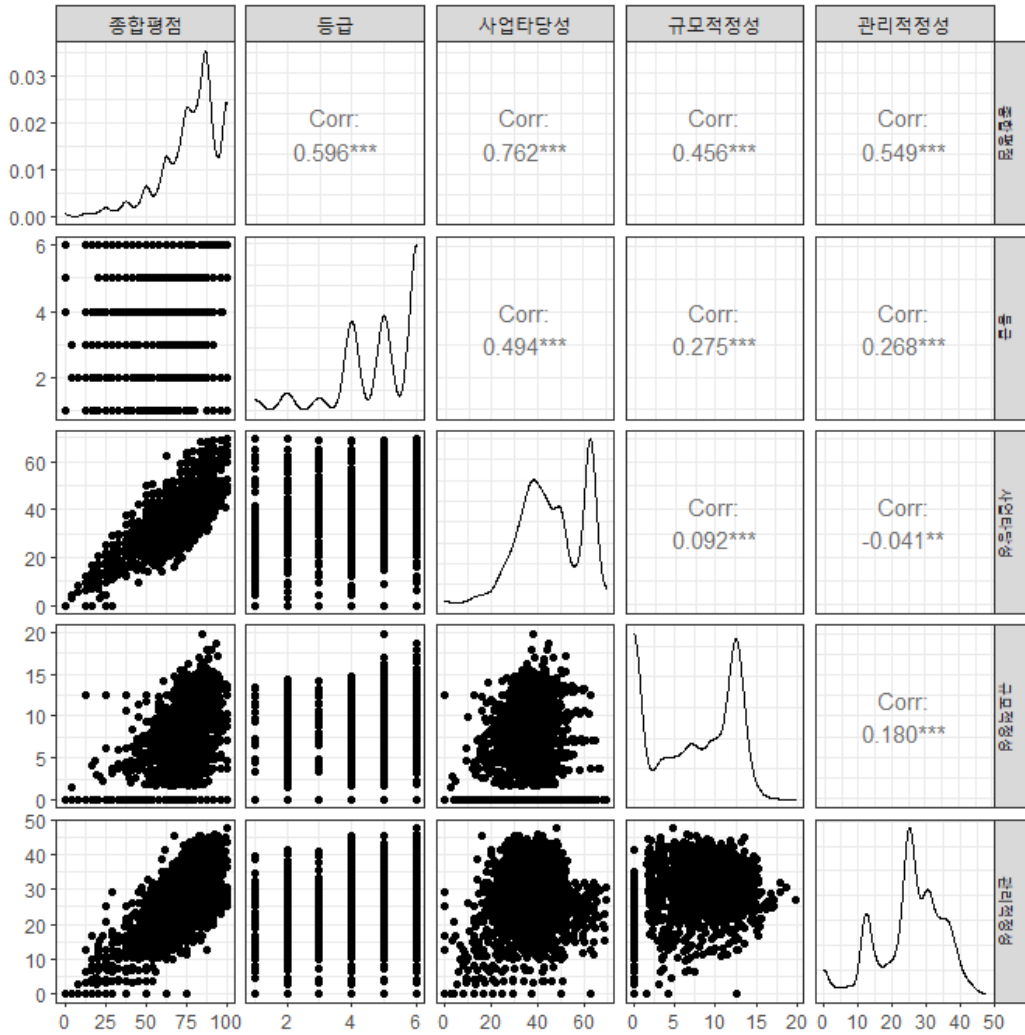
[그림 V-14] 종합평점과 하위 점수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종합평점은 등급,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관리 적정성과 양(+)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등급 판정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관리 적정성과 양(+)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관리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의 상관계수는 -0.041로 나타나나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15] 종합평점과 하위 점수의 상관관계



자료: 저자 작성

#### 타. 순서 있는 프로빗 모형 분석

여기에서는 평가등급을 2개와 3개로 구분한 후에 세 가지의 평가요인과 비평가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평가등급을 사업방식 변경과 정상추진을 1로 놓고, 다른 평가등급을 0으로 놓은 다음 이항선택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V-16]과 같다.

[그림 V-16] 이항선택모형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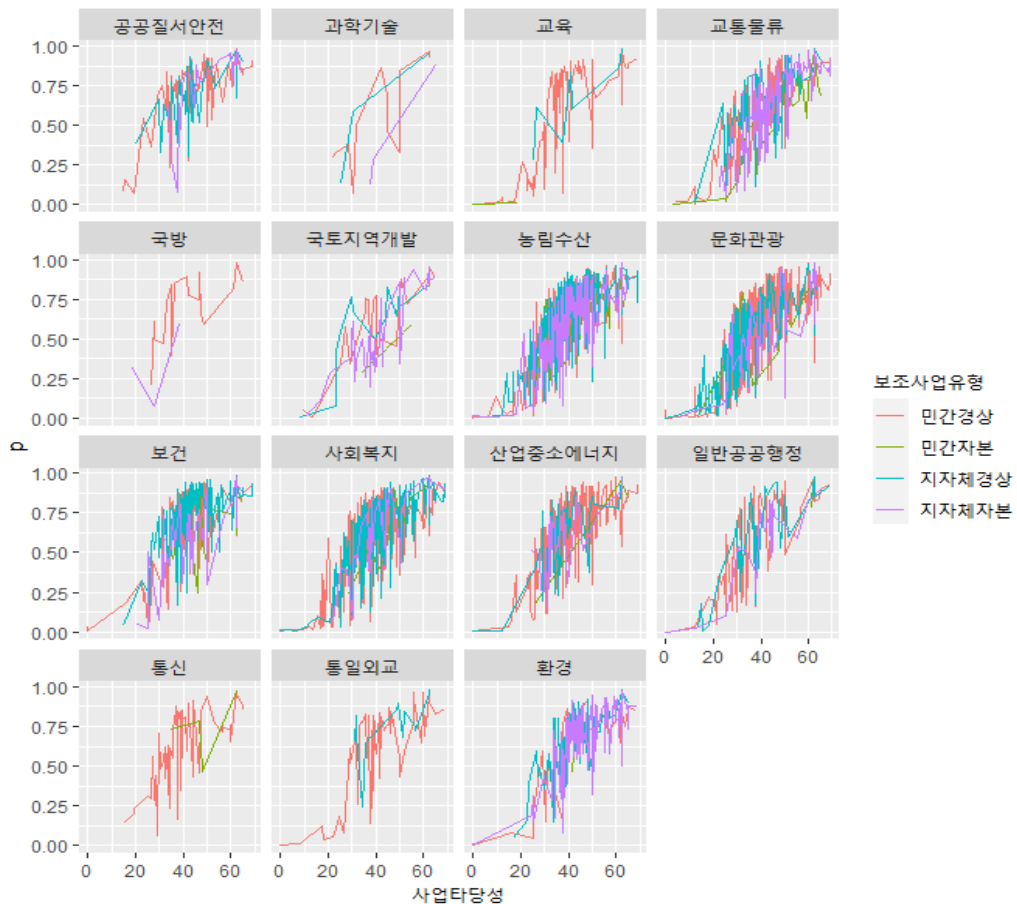
	<i>Dependent variable:</i>				
	평가등급1				
	(1)	(2)	(3)	(4)	(5)
사업타당성	0.051*** (0.002)	0.051*** (0.002)	0.051*** (0.002)	0.050*** (0.002)	0.050*** (0.002)
규모적정성	0.077*** (0.004)	0.077*** (0.004)	0.081*** (0.004)	0.084*** (0.004)	0.084*** (0.004)
관리적정성	0.027*** (0.002)	0.027*** (0.002)	0.027*** (0.002)	0.027*** (0.002)	0.027*** (0.002)
보조사업유형민간자본	-0.250* (0.139)	-0.247* (0.139)	-0.244* (0.140)	-0.129 (0.142)	-0.126 (0.141)
보조사업유형지자체경상	-0.008 (0.049)	0.003 (0.050)	0.022 (0.051)	0.030 (0.051)	0.025 (0.050)
보조사업유형지자체자본	-0.141** (0.058)	-0.128** (0.063)	-0.106* (0.065)	-0.029 (0.066)	-0.029 (0.061)
회계구분일반회계		0.163*** (0.051)	0.149*** (0.051)	0.151*** (0.051)	
회계구분특별회계		0.076 (0.061)	0.064 (0.061)	0.085 (0.062)	
규모소규모			0.163*** (0.056)	0.174*** (0.057)	0.195*** (0.056)
규모중규모			0.237*** (0.063)	0.242*** (0.063)	0.251*** (0.063)
일몰				-0.504*** (0.076)	-0.504*** (0.076)
Constant	-2.936*** (0.114)	-3.047*** (0.120)	-3.204*** (0.130)	-3.181*** (0.131)	-3.094*** (0.127)
Observations	4,878	4,878	4,878	4,876	4,876
Log Likelihood	-2,323.037	-2,317.781	-2,310.473	-2,288.303	-2,292.614
Akaike Inf. Crit.	4,660.074	4,653.562	4,642.947	4,600.606	4,605.228

주: \*p<0.1,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평가요인의 경우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자본사업과 지자체자본 사업은 평가등급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회계 구분의 경우는 일반회계 사업이 비교적 높은 등급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소규모 사업과 중규모 사업이 대규모 사업보다 등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끝으로 일몰사업의 경우는 등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타당성과 평가등급 간의 관계를 분야별, 보조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그림 V-17]과 같다.

[그림 V-17] 보조사업 유형별, 분야별 사업 타당성과 평가등급 프로빗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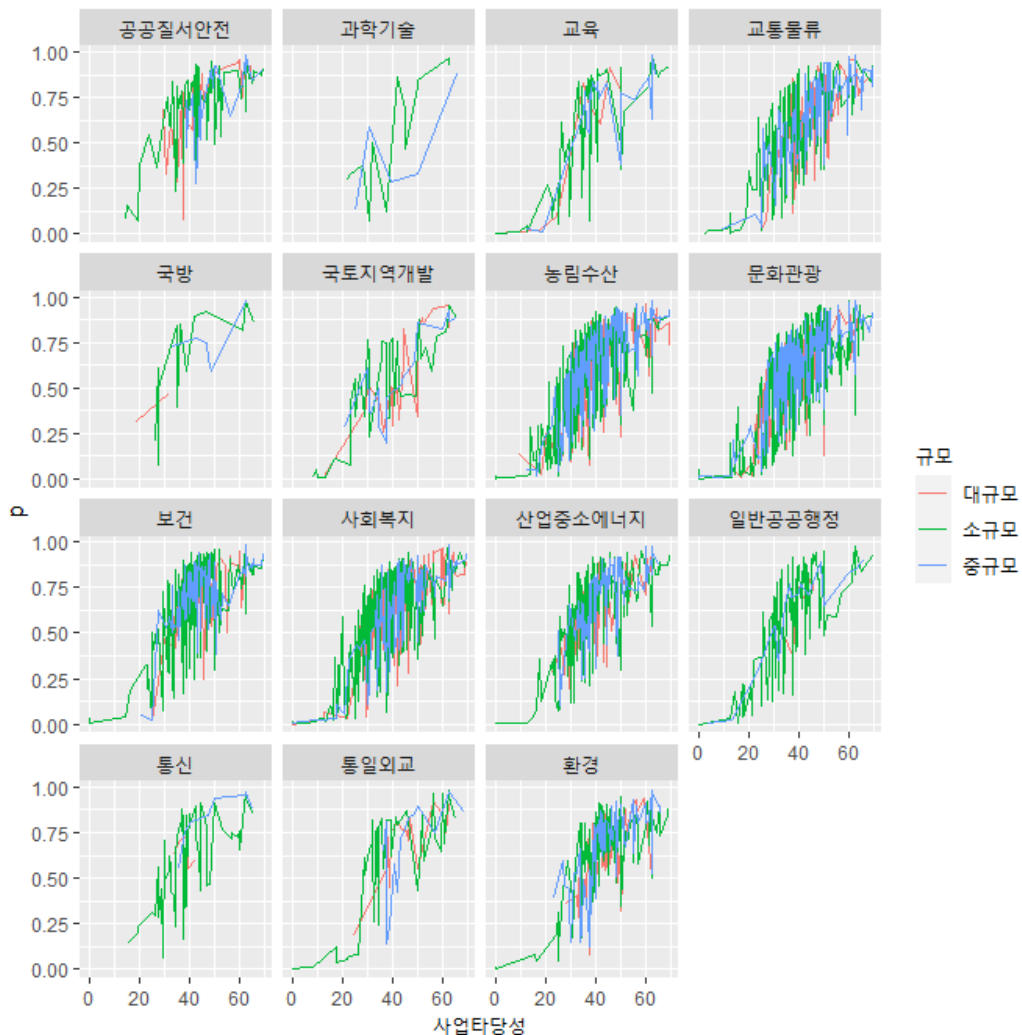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분야별로 예산 규모의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별 보조사업의 타당성 점수에 따른 프로빗 모형의 예측은 [그림 V-18]과 같다.

지자체자본보조사업은 보라색인데 보라색의 위치는 대체로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이며, 붉은색의 민간경상은 최근에 높은 등급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경상사업의 경우는 평가등급이 낮은 것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조사업의 규모별 영향을 보면 붉은색의 대규모 사업의 등급이 아래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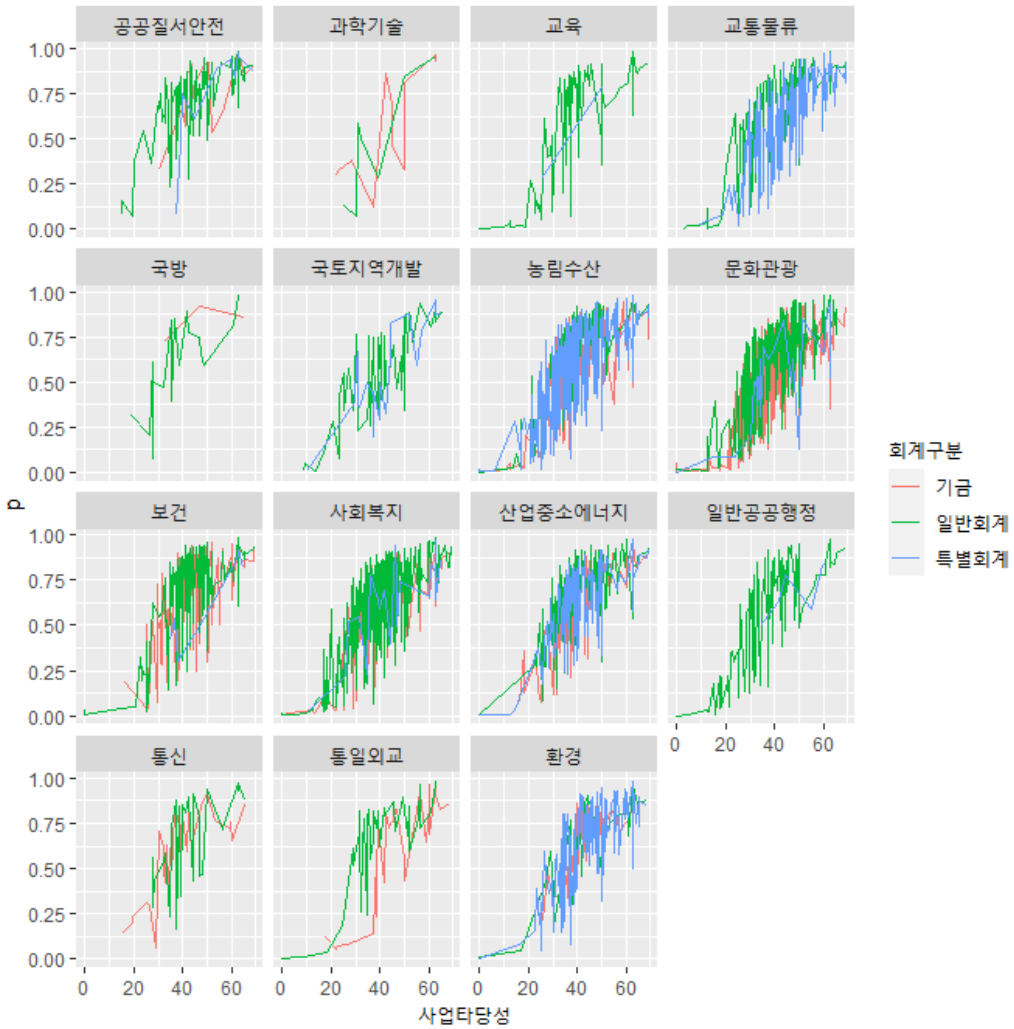
[그림 V-18] 규모별, 분야별 사업 타당성과 평가등급 프로빗 모형



자료: 저자 작성

사업 타당성과 평가등급 간의 관계를 회계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가 녹색인데 많은 분야에서 평가등급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V-19] 회계별, 분야별 사업 타당성과 평가등급 프라빗 모형



자료: 저자 작성

이번에는 평가등급의 구분을 즉시폐지와 단계적폐지를 1로 놓고, 통폐합과 가축을 2로 놓고, 사업방식 변경과 정상추진을 3으로 놓은 후에 순서 있는 프라빗 모형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요인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비평가 요인 중에서 회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게 되고, 중규모 예산 사업이 평가등급

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자본보조사업이 평가등급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8〉 순서 있는 프라빗 모형 추정

구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r(> t )
사업 타당성	0.045	0.002	29.583	0.000***
규모 적정성	0.072	0.004	17.609	0.000***
관리 적정성	0.023	0.002	11.164	0.000***
보조사업유형민간자본	-0.246	0.125	-1.968	0.049*
보조사업유형지자체경상	0.001	0.046	0.026	0.980
보조사업유형지자체자본	-0.142	0.059	-2.389	0.017*
회계구분일반회계	0.069	0.047	1.474	0.141
회계구분특별회계	-0.006	0.056	-0.108	0.914
규모소규모	-0.000	0.052	-0.002	0.999
규모중규모	0.143	0.059	2.438	0.015*
일몰	-0.654	0.066	-9.862	0.000***

주: \*p<0.1,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표 V-19〉 평가등급 1인 경우 한계 효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r(> t )
사업 타당성	0.021	0.013	1.614	0.107
규모 적정성	-0.000	0.003	-0.026	0.979
관리 적정성	0.010	0.005	2.183	0.029*
보조사업유형민간자본	-0.005	0.003	-1.473	0.141
보조사업유형지자체경상	0.000	0.004	0.108	0.914
보조사업유형지자체자본	0.000	0.004	0.002	0.999
회계구분일반회계	-0.009	0.003	-2.582	0.010**
회계구분특별회계	0.073	0.011	6.542	0.000***
규모소규모	-0.003	0.000	-15.960	0.000***
규모중규모	-0.005	0.000	-13.060	0.000***
일몰	-0.002	0.000	-9.454	0.000***

주: \*p<0.1,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표 V-20〉 평가등급 2인 경우 한계 효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r(> t )
사업 타당성	0.069	0.035	1.980	0.048*
규모 적정성	-0.000	0.013	-0.026	0.980
관리 적정성	0.040	0.017	2.376	0.018*
보조사업유형민간자본	-0.019	0.013	-1.475	0.140
보조사업유형지자체경상	0.002	0.016	0.108	0.914
보조사업유형지자체자본	0.000	0.015	0.002	0.999
회계구분일반회계	-0.040	0.016	-2.466	0.014*
회계구분특별회계	0.175	0.016	10.975	0.000***
규모소규모	-0.012	0.001	-24.868	0.000***
규모중규모	-0.020	0.001	-16.632	0.000***
일몰	-0.006	0.001	-10.746	0.000***

주: \*p<0.1,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표 V-21〉 평가등급 3인 경우 한계 효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r(> t )
사업 타당성	-0.090	0.048	-1.885	0.059*
규모 적정성	0.000	0.016	0.026	0.980
관리 적정성	-0.050	0.022	-2.339	0.019*
보조사업유형민간자본	0.024	0.016	1.476	0.140
보조사업유형지자체경상	-0.002	0.019	-0.108	0.914
보조사업유형지자체자본	-0.000	0.018	-0.002	0.999
회계구분일반회계	0.049	0.020	2.494	0.013*
회계구분특별회계	-0.248	0.026	-9.537	0.000***
규모소규모	0.015	0.001	29.644	0.000***
규모중규모	0.025	0.001	17.891	0.000***
일몰	0.008	0.001	11.027	0.000***

주: \*p<0.1,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

## Ⅵ.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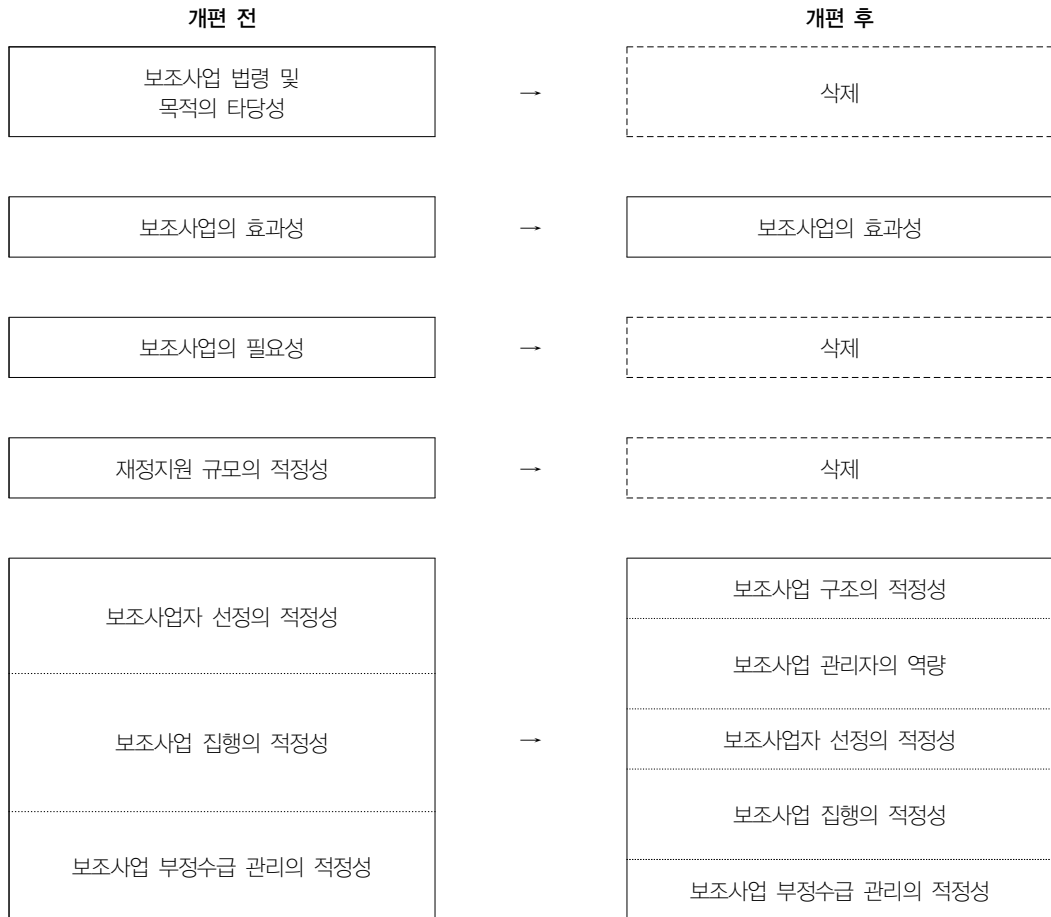
### 1.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의 차별화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과 사전 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인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은 보다 성과 및 실적 위주로 개편하고, 사전평가인 사전 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은 사업 타당성 및 관리계획 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1]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개편안을 보여준다. 우선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삭제한다. 이 평가항목들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측면의 평가항목으로서 성과 및 실적 위주의 개편방향에 배치된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은 ‘보조사업 관리자의 역량’, ‘보조사업 구조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으로 개편한다.

‘보조사업 관리자의 역량’은 관리자의 전문성, 관리자의 업무량, 관리자의 지속적 관리가능성 등으로 평가한다. ‘보조사업구조의 적정성’은 전달체계의 복잡성, 과도한 이해관계자, 사업목적에 따른 특정 경비(인건비, 물건비)의 비중 등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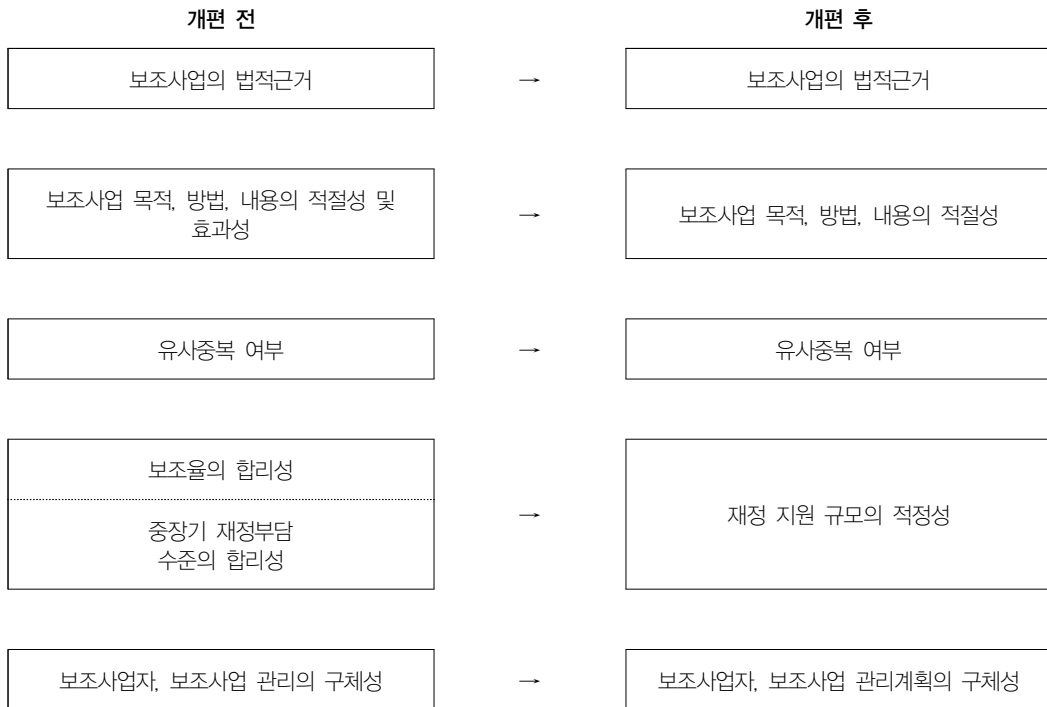
[그림 VI-1]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개편안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2]는 사전 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 개편안을 보여준다. 사전 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을 사업 타당성 및 관리계획 위주로 개편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효과성 부분을 평가에서 제외시키고 보조율과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도 재정 규모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관리계획의 구체성으로 평가항목을 개칭하여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는 실적이 아니라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2] 사전 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 개편안



자료: 저자 작성

## 2. 현행 보조사업 연장평가 세부평가항목의 구체화

전술한 개선방안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과 사전 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을 동시에 개편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이다. 여기에서는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편과 연계하지 않고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에 집중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개선방안의 목적은 정성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세부

평가항목을 최대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해 제시한 세부기준을 ‘관리의 적정성 분석’의 세부평가기준으로 제시한다.

## 가.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10점)

### 1) 현행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점)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②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정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 2) 개선방안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 가) 세부 기준

①의 세부평가항목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지급 근거의 명확성과 지급 근거의 타당성이다. 지급 근거의 명확성은 법령의 내용이 ‘~하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등 의무 조항이면 매우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고, ‘~하도록 보조할 수 있다.’ 등 재량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급 근거의 타당성은 사업의 목적이 법령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의 목적이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목적이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연계가 없는 경우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지급 근거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같이 고려하여 다음 <표 VI-1>과 같이 배점을 부여한다. 단 지급 근거의 타당성이 지급 근거의 명확성보다 중요성이 더 높다고 판

단되기 때문에, 지급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지급 근거의 명확성에 관계없이 0점으로 평가한다.

〈표 VI-1〉 지급 근거의 명확성과 타당성 배점 방법(예시)

지급 근거 타당성 \ 지급 근거 명확성	매우 명확함	어느 정도 명확함	명확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5	3~4	2
어느 정도 타당함	3~4	2	1
타당하지 않음	0	0	0

자료: 저자 작성

②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정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 가) 세부 기준

②의 세부평가항목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국정과제와의 부합성이다. 국가지원의 필요성은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신용보조(낮은 이자율 제공), 조세보조(조세부담경감), 지분보조(정부지분참여), 현물보조(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 판매), 구매보조(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구매), 규제보조(규제를 통한 보조)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 지원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국정과제와의 부합성은 국정과제에 보조사업의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책 목표가 있는 경우는 부합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보조사업의 목적이 정책목표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부합성이 중간이라고 판단된다. 보조사업의 목적이 정책목표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합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국정과제와의 부합성을 같이 고려하여 다음 〈표 VI-2〉와 같이 배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국정과제와의 부합성보다 중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낮으면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과 관계없이 0점으로 평가한다.

〈표 VI-2〉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배점 방법(예시)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 국가지원 필요성	높음	중간	낮음
높음	5	3~4	0
중간	3~4	2	0
낮음	2	1	0

자료: 저자 작성

## 나. 1-2 보조사업의 효과성(30점)

### 1) 현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점)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②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③ 보조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고려

### 2) 개선방안

‘보조사업의 효과성’ 평가지표의 3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와 ②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점)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②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 가) 세부 기준

①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하위 내역사업의 필요성이다. 보조사업의 기간과 규모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위 내역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하위 내역사업들의 필요성은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하위 내역사업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위 내역사업들이 모두 필요한 경우 5점을 부여하고, 예산 기준으로 하위 내역사업들의 2/3 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는 3~4점, 2/3 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2점을 부여한다.

〈표 VI-3〉 하위 내역사업의 필요성 배점(예시)

구분	배점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하위 내역사업들이 모두 필요한 경우	5점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하위 내역사업들의 2/3 이상(예산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4점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하위 내역사업들의 2/3 이상(예산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2점

자료: 저자 작성

#### ②-1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 가) 세부 기준

②-1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집행실적과 집행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집행실적과 집행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은 예산이 100%로 정상 집행된 경우에 노력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예산의 3년 평균 집행률이 95% 이상인 경우는 적극적, 70~95%인 경우는 보통, 70% 미만인 경우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집행실적과 집행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은 4단계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예’로 평가되는 경우는 매년 예산이 100% 정상 집행(실집행)된 경우이다. 단 낙찰차액, 경상

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평가 대상 사업 예산 총액의 1% 미만 내 집행잔액으로 인정된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한다. ‘상당한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는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95%(실집행 85%) 이상인 경우, 집행률이 100% 미만이나,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해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평가연도의 집행률이 95%(실집행 85%) 이상인 경우이다.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는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경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 이상 95% 미만(실집행 60% 이상 85% 미만)인 경우, 집행률이 100% 미만이나,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해 2018~2020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집행률이 85% (실집행 75%) 이상인 경우, 사업 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이다. ‘아니요’로 평가되는 경우는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실집행 60%) 미만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였고 지적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표 VI-4〉 집행실적과 집행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 배점 방법(예시)

구분	아니요 (적극적이지 않음)	어느 정도 (보통)	상당한 정도 (적극)	예 (매우 적극)
배점	1	2~3	4	5

자료: 저자 작성

## ②-2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 가) 세부 기준

②-2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중요한 기준은 목표설정의 적극성과 목표 달성률이다. 목표설정의 적극성은 만족도 지표를 제외한 성과지표의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5%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했거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자체평가위원회 논의내용에 반드시 기입)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판단되고,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3%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했거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적극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외에 성과지표의 목표가 이전 3년 평균 달성 실적보다 3% 미만으로 향상된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보통이라고 판단된다. 단 만족도 지표는 적극성을 보통이라고 산정한다.

목표 달성률은 성과지표 달성실적을 성과지표의 만점으로 나눈 백분율로 계산한다. 단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달성실적이 되는 근거 데이터 등의 출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목표설정의 적극성과 목표 달성률을 같이 고려하여 다음 <표 VI-5>와 같이 배점을 부여한다. 목표설정의 적극성과 목표 달성률의 중요도가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평가 기준의 배점 비율은 동일하다.

<표 VI-5> 목표설정의 적극성과 목표 달성률 배점 방법(예시)

목표 달성률 \ 목표설정의 적극성	매우 적극	적극	보통
100%	20	16~19	15
90% 이상 100% 미만	16~19	15	11~14
90% 미만	15	11~14	10

자료: 저자 작성

### 다. 1-3 보조사업의 필요성(30점)

#### 1) 현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0점)	①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 고려 ②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한지를 고려

## 2) 개선방안

### ①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를 고려

#### 가) 세부 기준

①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들의 리스트 작성의 충실도이다. 보조금 외에 다른 정책수단의 존재 여부는 1-1-②의 세부평가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①의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들의 리스트 작성의 충실도는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빠짐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면 20점을 부여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일부만 작성되었으면 15점 내외를 부여한다.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작성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10점 내외를 부여한다. 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유사중복 리스트 개수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VI-6〉 유사·중복 사업 리스트 작성의 충실도 배점 방법(예시)

구분	충실	보통	미흡
배점	20	15 내외	10 내외

자료: 저자 작성

### ②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고려

#### 가) 세부 기준

②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보조사업 수혜 대상의 명확성과 수혜자의 제한 정도이다. 수혜 대상의 명확성은 노인, 산모, 응급환자 등 수혜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다고 판단되고, 수혜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조사업의 목표 등을 통해 수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수혜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수혜 대상을 특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수혜자의 제한 정도는 노인, 산모, 장애인 등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전 국민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직군 종사자 등 넓은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고, 특정 기업 종사자 등 좁은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한이 많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수혜 대상의 명확성과 수혜자의 제한 정도를 같이 고려하여 <표 VI-7>과 같이 배점을 부여한다. 수혜 대상의 명확성과 수혜자의 제한 정도의 중요도가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평가 기준의 배점 비율은 동일하다.

<표 VI-7> 수혜 대상의 명확성과 수혜자의 제한 정도 배점 방법(예시)

수혜자의 제한 정도	수혜 대상의 명확성	명확	특정 가능	불명확
제한 없음 (노인, 산모, 장애인 등)		10	8~9	6~7
어느 정도 제한 있음 (특정 지역, 특정 직군의 종사자 등)		8~9	6~7	4~5
제한 많음 (특정 기업 종사자 등)		6~7	4~5	2~3

자료: 저자 작성

### 라. 1-4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10점)

#### 1) 현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1-4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10점)	소규모	(50억 미만 사업만 해당)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고려 (전체사업)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②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지를 고려
	대규모	(200억 이상 사업만 해당) ③ 단기(0-3년), 중기(5-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 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 중규모 사업은 1-4-①만 평가

## 2) 개선방안

소규모 사업의 경우 규모는 소규모이지만 중요한 보조사업일 수 있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장기 재정소요액 추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를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를 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경우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였는지 고려 ②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유사사업 리스트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제시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점)	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경우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였는지 고려 ②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유사사업 리스트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고려

### 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경우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였는지 고려

#### 가) 세부 기준

①의 세부평가항목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기준보조율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는가’이다.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을 준수한 경우 재정 지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면 6 점,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5점 이하를 부여한다.

〈표 VI-8〉 기준보조율 준수 배점 방법(예시)

구분	기준보조율 준수	기준보조율 미준수
배점	6	5 이하

자료: 저자 작성

②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유사사업 리스트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고려

가) 세부 기준

②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들의 리스트 작성의 충실도이다.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유사·중복 사업들의 리스트를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리스트 작성의 충실도가 높으면 재정 지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배점 가이드라인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이 존재하는 유사·중복 사업들을 모두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빠짐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면 4점을 부여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일부만 작성되었으면 2~3점을 부여한다.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작성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0~1점을 부여한다. 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유사중복 리스트 개수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도록 한다.

〈표 VI-9〉 유사·중복 사업 리스트 작성의 충실도 배점 방법(예시)

구분	충실	보통	미흡
배점	4	2~3	0~1

자료: 저자 작성

마.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최대 3점)

1) 현행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1-5 사회적가치 실현 (가산점 최대 3.0*)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8.3)

\* 보조사업의 타당성 지표 배점 80점 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최대 3.0점)

## 2) 개선방안

### 가) 세부 기준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보조사업의 사회적 가치분야에서의 기여 정도이다. 사회적가치 실현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분야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분야 중에서 두 가지 분야 이상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으면 가산점 3점, 직접적으로 기여(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운영 등)했으면 가산점 2점, 간접적으로 기여(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국가에 요구 등)했으면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 ※ 참고: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중 사회적 가치 분야

- 
-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4)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6)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
  - 7)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9) 경제활동을 위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10)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책임 이행
  - 11)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12)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13)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 2019. 2.

## 바.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5점)

### 1) 현행

중구분		평가지표
2-1 보조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점)	지자체 보조	①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민간 보조	②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 2) 개선방안

- ① 지자체보조: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를 고려

#### 가) 세부 기준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중요한 평가 기준은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이다. 사전절차로는 자기부담금 확보, 부지 확보, 주민동의 확보, 인가/허가 행정절차, 그 외에 기타 사전절차가 있다. 모든 절차를 이행했을 경우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됐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자기부담금 확보, 부지 확보, 주민동의 확보, 인가/허가 행정절차, 그 외 기타 사전절차를 각 1점으로 하여 모든 절차를 확보 및 이행했을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표 VI-10〉 지자체보조사업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따른 배점(예시)

사전절차	배점(최대 5점)
자기부담금 확보	1
부지 확보	1
주민동의 확보	1
인가/허가 행정절차	1
기타 사전절차(주관식 : )	1

자료: 저자 작성

② 민간보조: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 여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가) 세부 기준

민간보조사업 경우 중요한 평가 기준은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이다.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으로는 재무안정성, 자부담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의 검토가 있다. 재무안정성은 신용등급 등을 참고할 수 있고, 자부담능력은 잔액증명서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사업능력은 유사사업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은 1)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으로 받은 경우이다.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충족했을 경우 보조사업자가 적정하게 선정됐다고 판단된다.

나) 배점 가이드라인

재무안정성, 자부담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의 검토를 각 항목을 1점으로 하여 모든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표 VI-11〉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른 배점(예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배점(최대 5점)
재무안정성	1
자부담능력	1
사업능력	1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1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검토	1

자료: 저자 작성

사.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5점);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10점)

1) 현행

중구분	평가지표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점)	①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고려 .....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고려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점)	①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려 ..... 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

2) 개선방안

기존의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통합하여 '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으로 개편한다. 세부 평가기준으로는 ① 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를 고려하고 ② 부정수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중구분	평가지표
2-2 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15점)	① 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를 고려(10점) ..... ②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적절하게 수행했는지를 고려(5점)

- ① 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를 고려(10점)

가) 세부 기준

①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은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이다.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와 사후관리의 판단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와 사후관리의 적정성은 다음 <표 VI-12>의 판단 기준 항목 중 13개 이상 '예'로 답한 경우 10점으로 판단한다. '예'가 10~12개이면 7~9점, 7~9개이면 4~6점, 3~6개이면 2~3점, 1~2개이면 1점을 부여한다.

<표 VI-12>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와 사후관리의 적정성 판단 기준(예시)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와 사후관리의 판단 기준	예	아니오
1)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만을 사용하였는가		
2)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보조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3)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가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였는가(회계연도 기본 100억원 이상 보조금 수령한 보조사업자 대상)		
5)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였는가		
6)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계약 체결,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였는가		
7)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였는가		
8)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고,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 받았는가		
9)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였는가		
10)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이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랐는가		
1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였는가		
1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업적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는가		
13) 보조사업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 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사항을 보고하였는가		
14)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르는가		

자료: 저자 작성

②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적절하게 수행했는지를 고려(5점)

가) 세부 기준

②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은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이다.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은 1) 부정수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2) 부정수급 점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부정수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가 심의한 실적과 부정수급 관련사항 점검 및 결과입력이 증명되는 경우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나) 배점 가이드라인

중앙관서의 부정수급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증빙자료 첨부 시 1점을 부여하고,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최대 1.5점을 부여한다. 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말까지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입력한 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최대 1.5점을 부여한다.

〈표 VI-13〉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배점 방법(예시)

구분		
1-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는가 (최대 1점)		
구분	예	아니오
배점	1	0

※부정수급심사위원회 증빙자료 첨부 시 '예'로 인정됨

1-2) 실적 (최대 1.5점)

<p>심의한 항목에 V표시 한다.</p> <p><input type="checkbox"/>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

〈표 VI-13〉의 계속

2-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보조금법」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했는가 (최대 1점)

구분	예	아니오
배점	1	0

2-2) 실적 (최대 1.5점)

입력한 항목에 V표시 한다.

-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 제재부가금 및 가산점 징수 건수 및 금액
-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최대 3.0점)**

1) 현행

중구분	평가지표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가산점 최대 3.0*)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노력이 우수하지 고려 -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이 외부적발 실적보다 많은 경우 등
	②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 여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지표 전체 20점 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최대 3.0점)

2) 개선방안

가) 세부 기준

자체 사업관리 노력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은 자체적인 사업관리의 적극성이다. 여타 보조사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자체 사업관리의 적극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나) 배점 가이드라인

다음 <표 VI-14>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3점으로 평가하고, 2개 해당 시 2점, 1개 해당 시 1점으로 평가한다.

<표 VI-14> 자체 사업관리 노력 평가 배점 방법(예시)

---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 한다.

(1개 : 1점, 2개 : 2점, 3개 이상 : 3점)

-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이 외부적발 실적보다 많은 경우
- 부적정 집행사례를 찾아내 주의 및 환수조치 한 경우
- 집행부진 지자체에 대한 집행독려, 실행상태 및 현장점검, 예산 적정 집행 여부 점검, 분기별 사업수행보고서 작성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포상 및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등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자료: 저자 작성

---

## VII 요약 및 시사점

---

재화 및 서비스의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편익의 차이가 있어, 재화 및 서비스가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적절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 이를 적정수준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도록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보조금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책유인 수단이고 둘째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우리나라의 보조금 규모의 추이를 보면, 2007년 31.9조원 규모였던 국고보조금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22년에는 102조원으로 1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실시, 국회의원의 로그롤링(logrolling) 행태 그리고 행정기관의 예산극대화 행태 등을 그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고보조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 존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에는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2016년에는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고보조금 평가의 효과성에 대해, 2011~2021년까지 11년간의 평가 운영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2011~2021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우선 국고보조사업 평가항목의 표준화였다. 이는 국고보조금사업 평가가 기본적인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연도에 따라 평가항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표준화는 평가항목을 크게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시도하였다. 평가항목에 더하여 평가결과도 그 형태가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평가결과는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으로 표준화하였다. 아울러 실증분석의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2011~2021년도의 평가지침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비교·제시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의 평가결과를, 우선 사업 개수로 보면, 처음 평가가 시작된 2011년에는 정상추진의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 사업방식 변경은 2011년에는 44개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193개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 17개 사업에 불과하였던 감축은 2021년에는 180여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즉시폐지의 경우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

평가항목 표준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① 보조사업의 타당성 ②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③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연도별 이의 점수와 최종평점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의 경우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사업방식 변경과 감축의 판정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 분야별로 보조사업의 타당성 점수가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 증가는 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산업중소에너지 등 분야에 따라서는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가 극히 낮더라도 정상추진 등급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관리 적정성의 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평가를 통한 관리 필요성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분야별로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점수가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점수 증가는 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분야에서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점수가 극히 낮더라도 정상추진 등급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와는 달리 점수가 절편이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이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규모 적정성 점수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조사업의 관리 적정성 점수가 평가등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관리 적정성 점수 증가는 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야에 따라서 관리적정성 점수는 평가등급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절편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분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예산 규모, 회계, 사업 규모 등 국고보조금 평가항목은 아니나 보조사업의 성격을 특징화하는 요인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분야별 예산 규모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의 경우는 평가등급의 증가와 감소의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질서안전의 경우도 연도별로 예산액이 증가할 때, 감소 경향과 증가 경향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외교,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에너지, 교통물류, 통신,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 등에서도 나타났다. 반면 국방, 교육, 문화관광 분야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예산액이 커질수록 종합평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의 경우는 주로 예산 규모가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때의 판정은 예산액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 규모와 분야가 일정한 판정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계별로 평가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종합판정점수와 평가등급에서 증가와 감소의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종합판정점수와 평가등급이 증가하였다. 기금의 경우는 종합평점에서는 증가의 경향을 보였으나, 평가등급에서는 2개연도가 예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평가등급이 낮은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 구분 역시 일정한 정도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사업을 예산 규모에 따라 소규모 사업, 중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으로 구분한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간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2개연도를 제외하고는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종합평점과 평가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국고보조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먼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과 사전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인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은 보다 성과 및 실적 위주로 개편하고, 사전평가인 사전 적격성 심사의 평가항목은 사업 타당성 및 관리계획 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해서는 모든 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그동안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세부 기준 및 배점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 참고문헌

---

### <국내외 문헌>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1966~1994.

공동성·방문규·윤기웅,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6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pp. 27~56.

관계부처 합동,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2014.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0.

권오성,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6.

권오성·박민정,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행정논총』, 제47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권오성·배인명·김성철,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5.

권오성·탁현우,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0~2007.

기획재정부,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편람』, 2015.

\_\_\_\_\_,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내부자료,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_\_\_\_\_,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8~2020.

\_\_\_\_\_, 「2022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1. 5.

\_\_\_\_\_,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1, 2012, 2013, 2014, 2015.

\_\_\_\_\_,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편람』, 2014.

김우림,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

원종학·권오성·최진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원종학·봉재연·박은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예산청, 「예산개요 참고자료」, 1998~1999.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14.

재정경제원, 「예산개요 참고자료」, 1995~1997.

정용란·정세나·최민혜,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관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1.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 2019.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07~2022.

Fisher, Ronald C.,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4<sup>th</sup> edition*, New York: Routledge, 2016.

####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보다 엄격하게 심사」, 보도자료, 2011. 10. 26.,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OLD\\_0004011044&fileSn=426676](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OLD_0004011044&fileSn=426676), 검색일자: 2022. 9. 13.

\_\_\_\_\_,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 없는 보조금사업의 예산삭감」, 보도자료, 2014. 3. 2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21064&menuNo=4010100](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21064&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2. 9. 21.

\_\_\_\_\_, 「2020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22. 5. 7.,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062&fileSn=1](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062&fileSn=1), 검색일자: 2022. 10. 13.

- \_\_\_\_\_,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10. 9. 28.,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ld1=OLD\\_4007755&menuNo=4010100](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ld1=OLD_4007755&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2. 10. 13.
- \_\_\_\_\_, 「연장평가 대상사업 43.2%인 199개 사업 구조조정」, 보도자료, 2021. 5. 14.,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567&fileSn=2](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567&fileSn=2), 검색일자: 2022. 10. 13.

#### 〈웹사이트〉

-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 최종 검색일자: 2022. 10. 30.
- 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http://www.nabostats.go.kr), 최종 검색일자: 2022. 10. 30.
- 지방재정365, [lofin.mois.go.kr](http://lofin.mois.go.kr), 최종 검색일자: 2022. 10. 30.
- e나라도움, [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 최종 검색일자: 2022. 11. 14.
-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최종 검색일자: 2022. 11. 14.

# 부록 1

〈부표 1〉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보조사업의 타당성 (80점)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점)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②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점)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②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③ 보조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점)	①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 고려 ②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지를 고려	
	1-4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10점)	소규모 (50억 미만 사업만 해당)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고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전체사업)	②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대규모 (200억 이상 사업만 해당)		③ 단기(0~3년), 중기(5~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1-5 사회적가치 실현 (가산점 최대 3.0**)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8.3)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20점)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점)	지자체 보조 ①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민간 보조 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점)	①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고려	

〈부표 1〉의 계속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20점)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점)	①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려  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가산점 최대 3.0***)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노력이 우수한지 고려 -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이 외부적발 실적보다 많은 경우 등

\* 중규모 사업은 1-5-①만 평가

\*\* 보조사업의 타당성 지표 배점 80점 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최대 3.0점)

\*\*\*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지표 전체 20점 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최대 3.0점)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국고보조사업 평가편람」, 2020, pp. 11~12.

## 부록 2

〈부표 2〉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표

대구분	중구분	평가지표
	보조금 지급 제외 여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보조금법 시행령) 해당여부 (Y / N) ※ 해당될 경우 부적격 판정
사업의 타당성 (50점)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10점)	보조사업의 근거 법령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에 근거의 강도(추상적, 구체적 등) (10점)
	보조사업 목적, 방법,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30점)	민간시장, 지자체 등에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국가사업으로서 타당성(10점)
		지원대상(지역, 계층 등), 지원방법(보조, 융자 등 보조이외의 방법 가능 여부), 사업내용(내역 등)의 적절성(10점)
		사업목적과 일치하는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 그 수혜자의 범위가 특정 소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혜자가 있는지 여부(5점)
유사중복 여부 (10점)	사업계획에 따른 시행으로 사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5점) 유사중복 여부 검토를 위한 보조사업 비교표를 충실히 작성했는지 여부(5점) 타 사업과의 중복투자 여부 (5점) ※ 유사중복 비교표 활용	
사업 계획의 구체성 (30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관리의 구체성 (30점)	사업수행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체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여부 (10점)
		사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 (10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및 관리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 (5점)
		사업의 관리 계획과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현장실사, 정산확인, 사후관리 등) (5점)
규모의 적정성 (20점)	보조율의 합리성 (10점)	사업관리 및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을 감안 시 보조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5점)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있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10점)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제시한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보조율 산정근거 등 제시) (10점)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10점)	향후 재정소요가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10점)

자료: 정용란 외(202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연구」, p. 10.

## 부록 3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 및 보조사업의 기초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변수명과 변수의 설명, 변수값은 <부표 3>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부표 3> 코드북

변수명	변수 개수	변수설명	변수값
평가연도	1	평가연도	yyyy
부처명	1	부처명	평가연도의 중앙정부 부처명
회계명	1	회계명	일반회계:1, 특별회계:0, 기금:2
분야 코드	1	프로그램예산체계상의 분야 코드번호	010: 일반, 지방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30: 통일, 외교 040: 국방 050: 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70: 환경 080: 사회복지 090: 보건 100: 농림수산 110: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20: 교통 및 물류 130: 통신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50: 과학기술
프로그램 코드	1	프로그램예산체계상의 프로그램 코드번호	개별 부처별로 1000~7900 중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고 프로그램 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음. 단, 타부처간에는 중복이 발생 될 수 있음 (예. 과기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100은 '콘텐츠방송산업육성' 프로그램의 코드이지만, 농림부 농특회계의 1100은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코드임)
단위사업 코드	1	프로그램예산체계상의 단위사업 코드번호	개별 부처별로 △△01~ △△99와 같이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여 단단위로 구분하되, 단위사업 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단, 프로그램 코드와 같이 타 부처 간에는 중복이 발생될 수 있음 (예. 과기부 1131은 '방송통신콘텐츠진흥' 단위사업의 코드이지만, 환경부 1131은 '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 단위사업의 코드임)
세부사업 코드	1	프로그램예산체계상의 세부사업 코드	개별 부처별로 100~799와 같이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여 단단위로 구분함. 따라서 동일부처 내에서도 프로그램, 단위사업마다 동일한 세부사업코드가 발생할 수 있음(예. 복지부 복지부 1300 프로그램 내 1333 단위사업의 300 '가정위탁지원운영' 세부사업의 코드는 복지부 1300 프로그램 내1338 단위사업의 300 '지역아동센터지원' 세부사업 및 2700 프로그램 내 2701 단위사업의 300 '국립중앙의료원운영' 세부사업 코드는 같으나 각각 상이한 사업임)
세부 사업명	1	세부사업명	평가대상 세부사업이름

〈부표 3〉의 계속

변수명	변수 개수	변수설명	변수값
보조사업유형1	1	민간경상보조	해당항목 1표시
보조사업유형2	1	민간자본보조	
보조사업유형3	1	지자체경상보조	
보조사업유형4	1	지자체자본보조	
법적표현1	1	할수있다	해당항목 ○표시
법적표현2	1	해야한다	
법적표현3	1	기타	
법적표현4	1	법적표현이 전체적으로 미작성	
법적표현5	1	법적근거는 있으나, 법적표현이 없는 경우	
계속사업여부	1	계속사업 여부	계속사업: 1, 신규사업: 0
일몰사업여부	1	일몰사업 여부	일몰사업: 1, 계속사업: 0
대통령 공약사업	1	대통령 공약사업 여부	공약사업: 1, 비공약사업: 0
국정과제	1	국정과제 여부	국정과제: 1, 비국정과제: 0
국고보조율	1	국고보조율	0~100%
예산	1	당해년도의 예산액	금액으로 표시
3년전 불용액	1	3년전 불용액	금액으로 표시
3년전 이용액	1	3년전 이용액	금액으로 표시
3년전 전용액	1	3년전 전용액	금액으로 표시
2년전 불용액	1	2년전 불용액	금액으로 표시
2년전 이용액	1	2년전 이용액	금액으로 표시
2년전 전용액	1	2년전 전용액	금액으로 표시
전년도 불용액	1	전년도 불용액	금액으로 표시
전년도 이용액	1	전년도 이용액	금액으로 표시
전년도 전용액	1	전년도 전용액	금액으로 표시
목적변경	1	목적변경 여부	목적변경 유: 1, 목적변경 무: 0
유사중복	1	유사중복 여부	유사중복 지적 유: 1, 유사중복 지적 무: 0
부정수급	1	부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지적 유: 1, 부정수급 지적 무: 0

〈부표 3〉의 계속

변수명	변수 개수	변수설명	변수값
단계별 평가지표	연도별 상이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2011~2014년은 예/아니오, 2015년은 단계별 배점 부재, 2016~2021년은 0~10점으로 표기, 각 연도별 단계별 평가지표는 다음 시트 참조
최종평가결과	6	즉시폐지	해당항목 1표시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총감축액	1	평가결과에서 제시한 감축규모	금액으로 표시

자료: 저자 작성

## 부록 4

부록4는 각 연도별로 제시된 평가항목을 표를 간단히 정리하여 통합한 자료로, Ⅲ장의 연도별 평가항목 표준화 표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작성하였다. 평가항목의 세부 착안사항 및 배점이 각 연도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의 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표 4〉 2011~2021년 보조사업 평가항목 비교

2011~2013	2014	2015	2016~2018	2019	2020	2021
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1-1 사업목적 명확성·구체성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2 사업 법적 근거 명확성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3 사업 필요성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1-4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1-5.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1-5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1-5 사회적 가치 실현	
		1-6 사회적 가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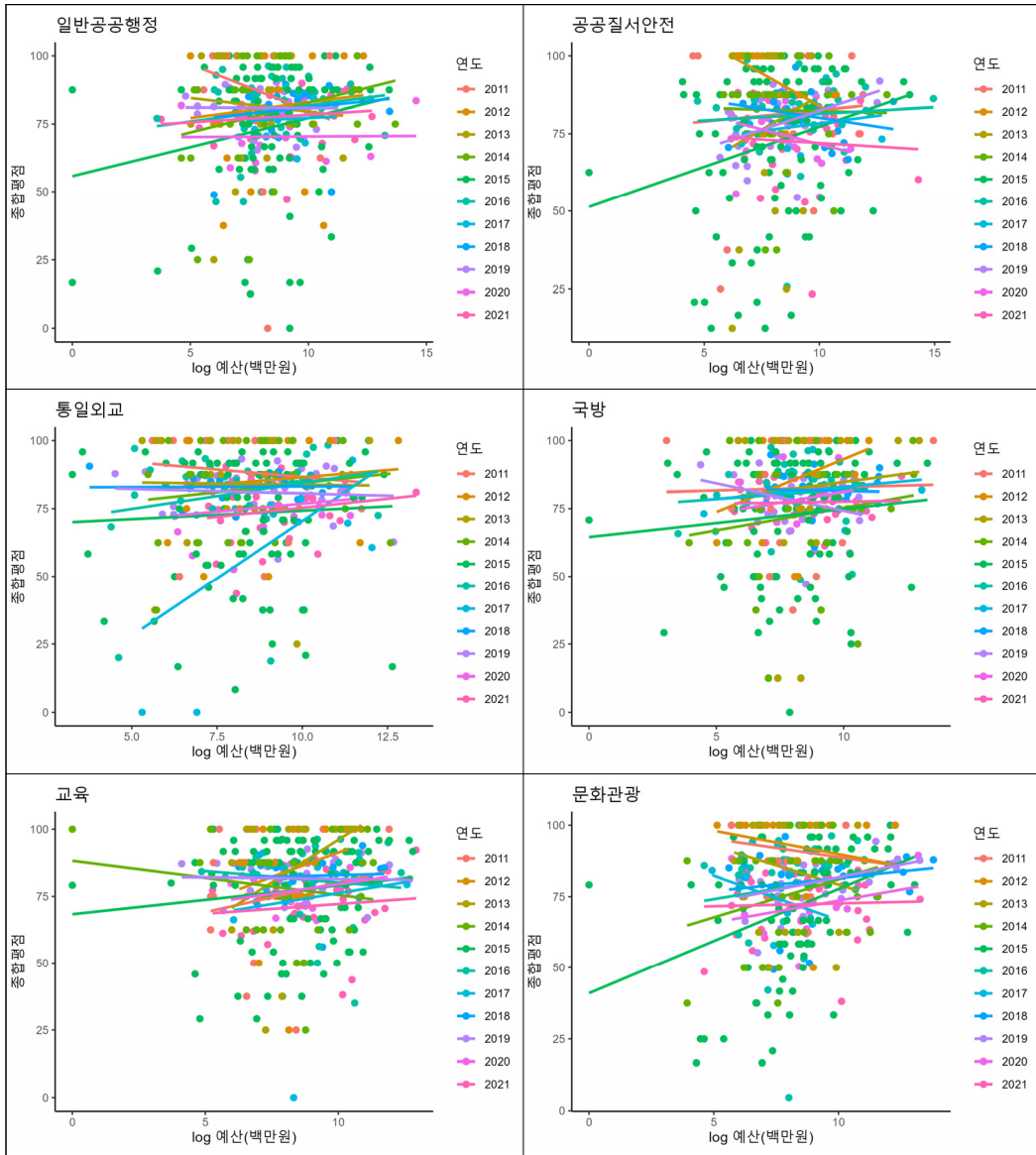
〈부표 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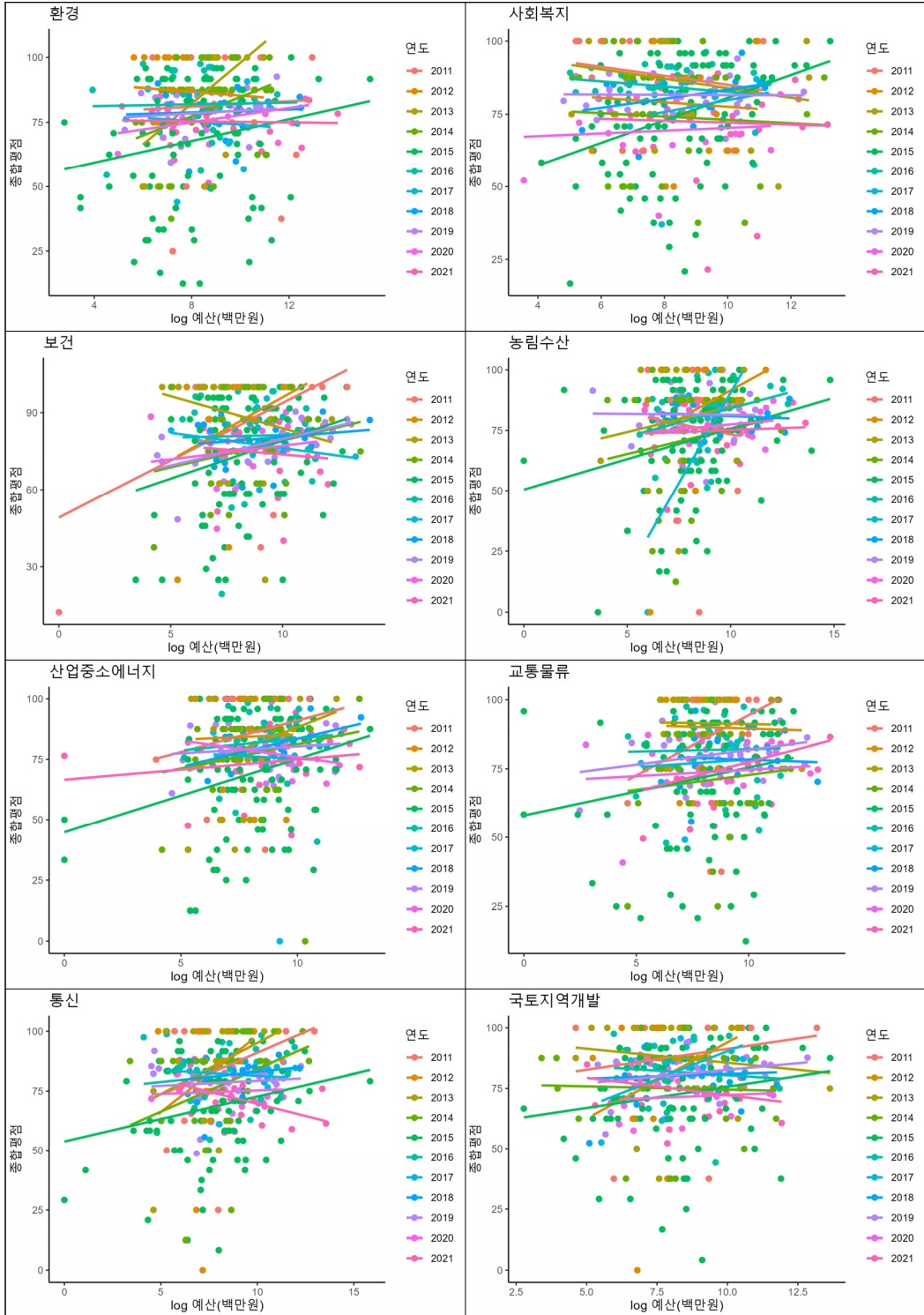
2.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2. 관리의 적정성			
2-1 재정지원 필요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2 재정지원 규모 적정성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2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3. 규모의 적정성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3-1 사업내용(세부사업 및 세부과제) 명확성·구체성		3-1. 보조율의 합리성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3-2 사업추진방식 적절성		3-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2-5 평가결과 이행여부
3-3 관리·감독 실시 및 통제수단 구비 적절성	3-3과거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 환류 여부				2-6 실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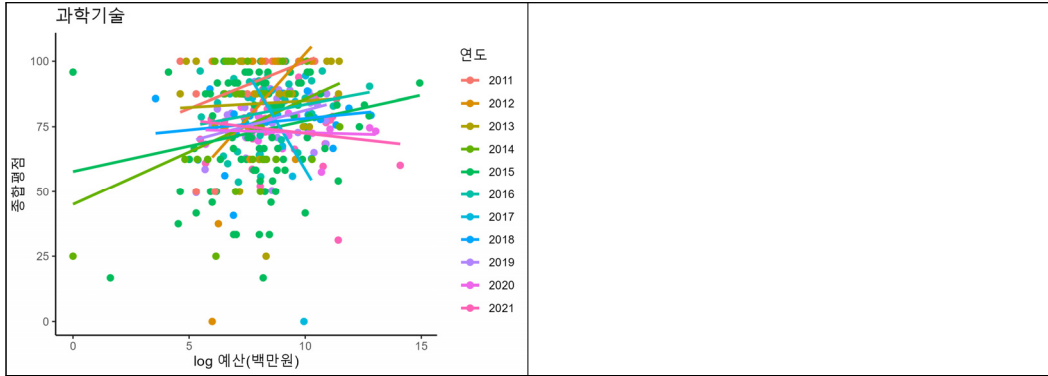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부록 5

[부그림 1] 분야별 예산 규모와 평가점수 간 관계 비교(log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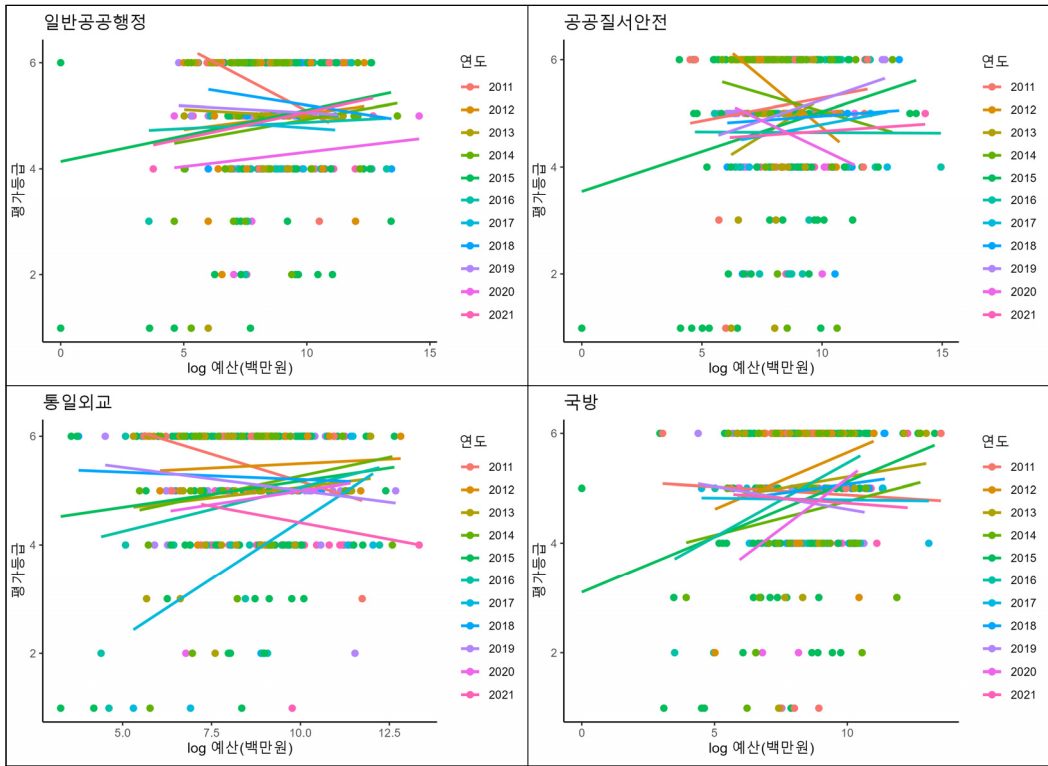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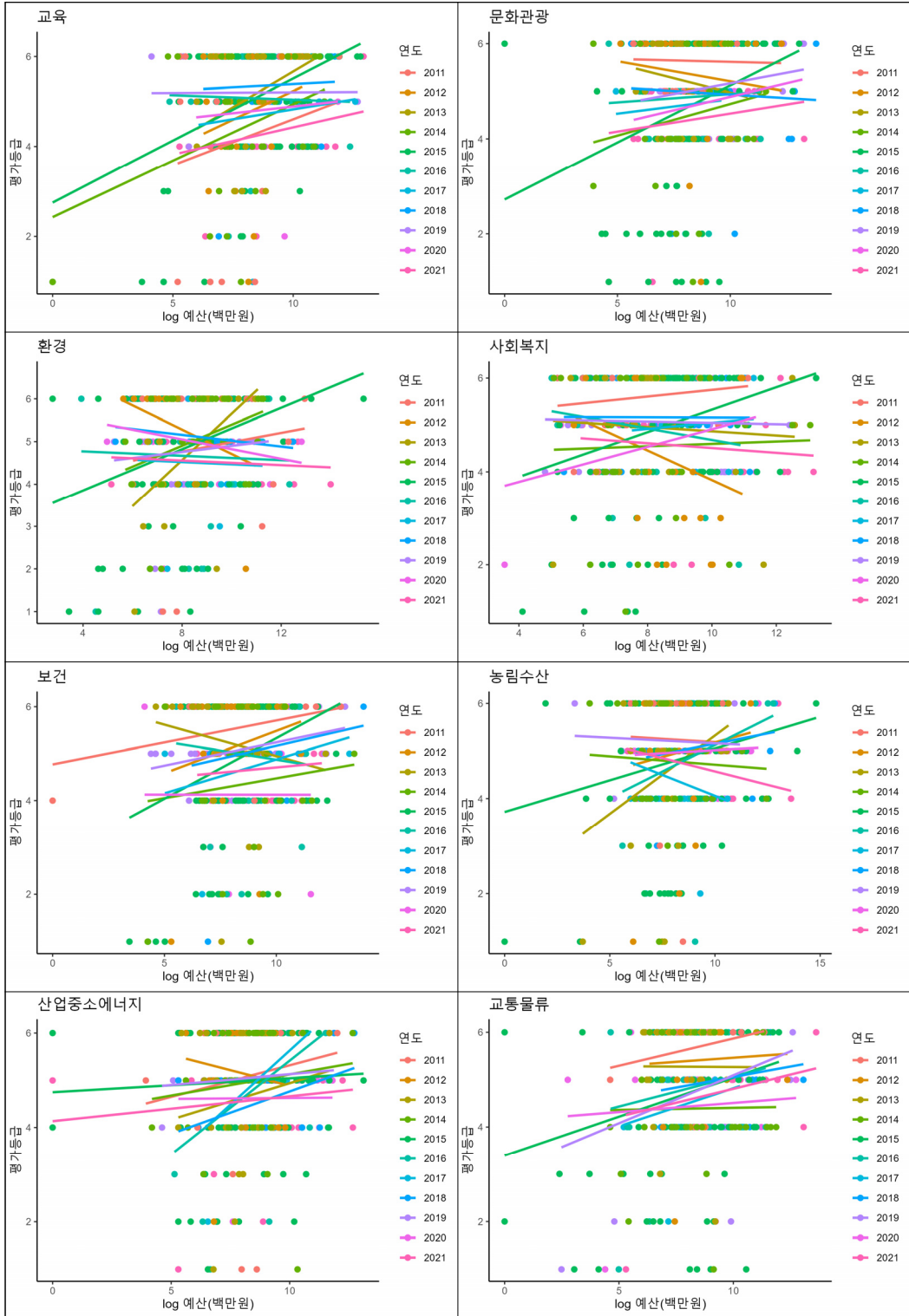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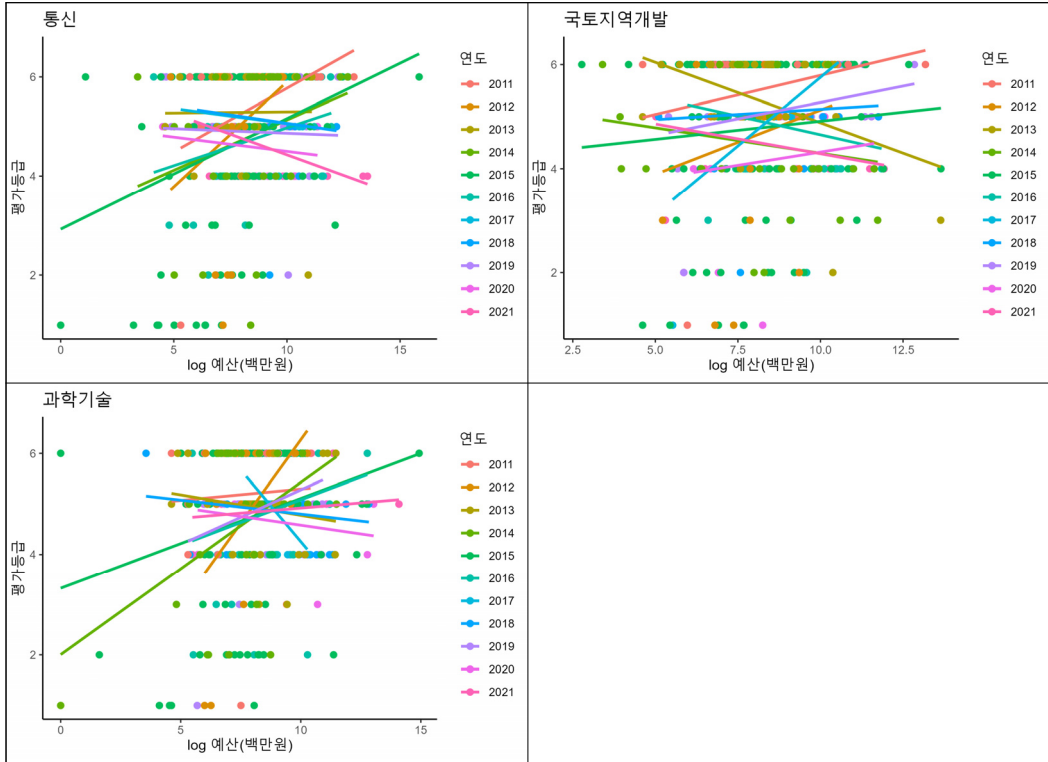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2] 분야별 예산 규모와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log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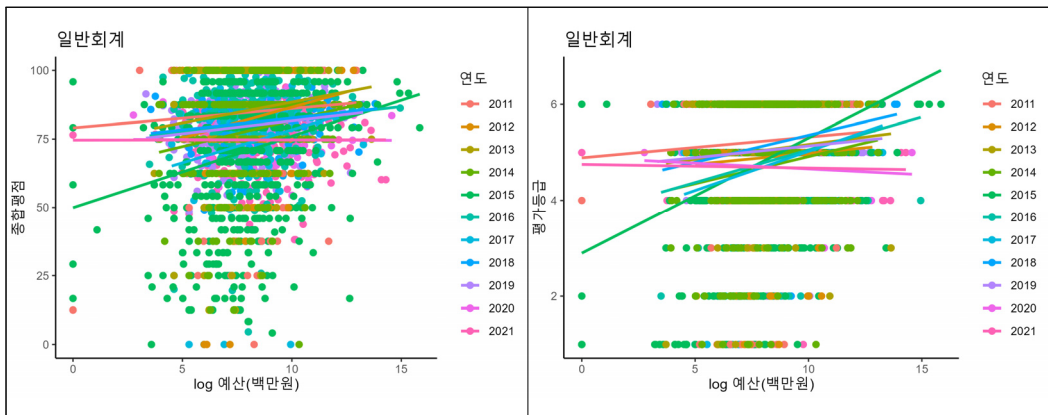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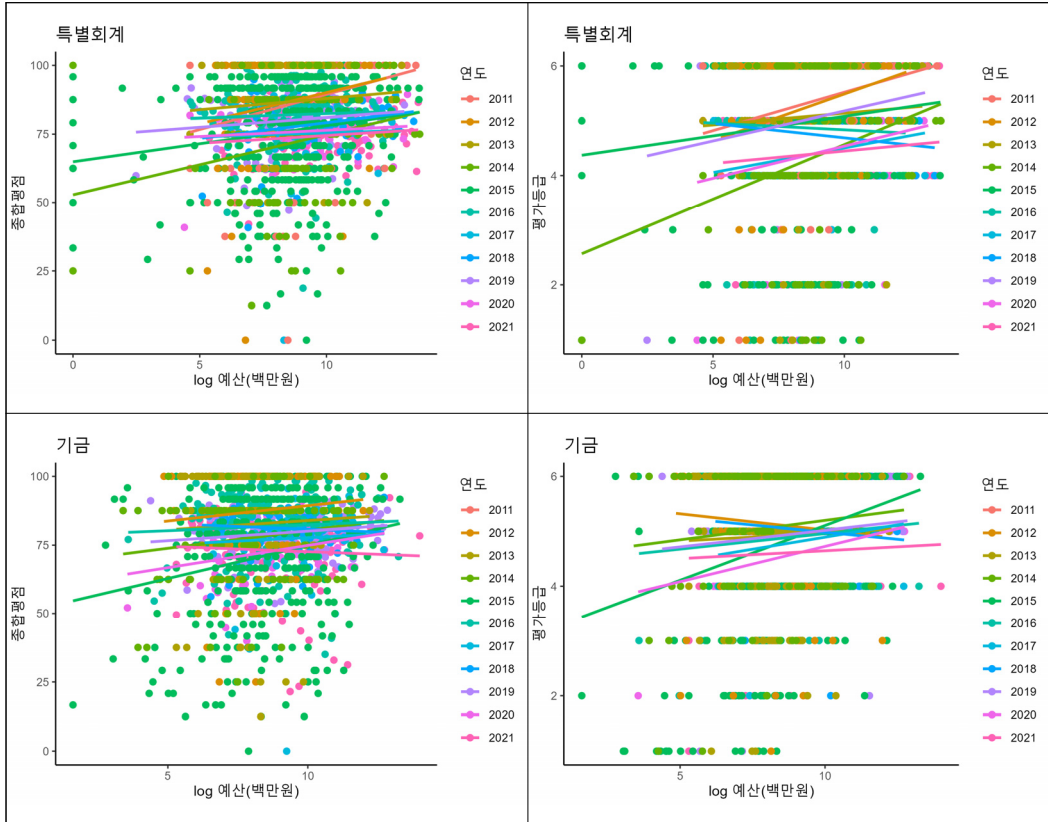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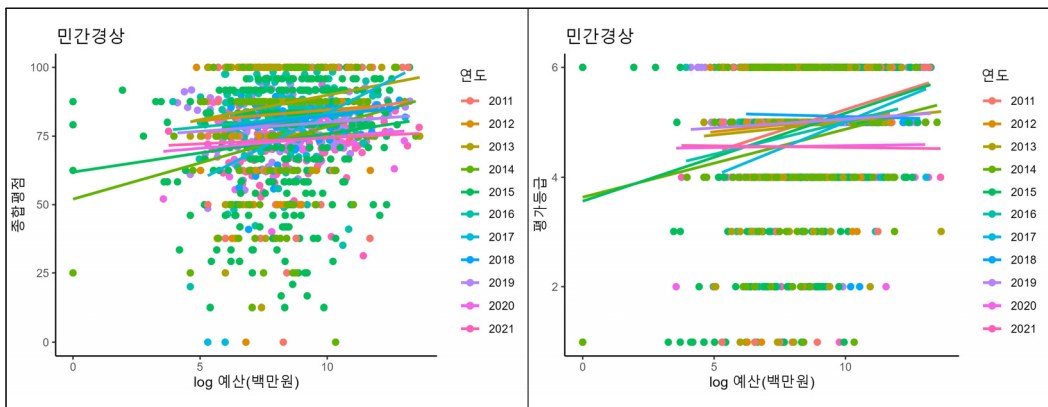
[부그림 3] 회계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log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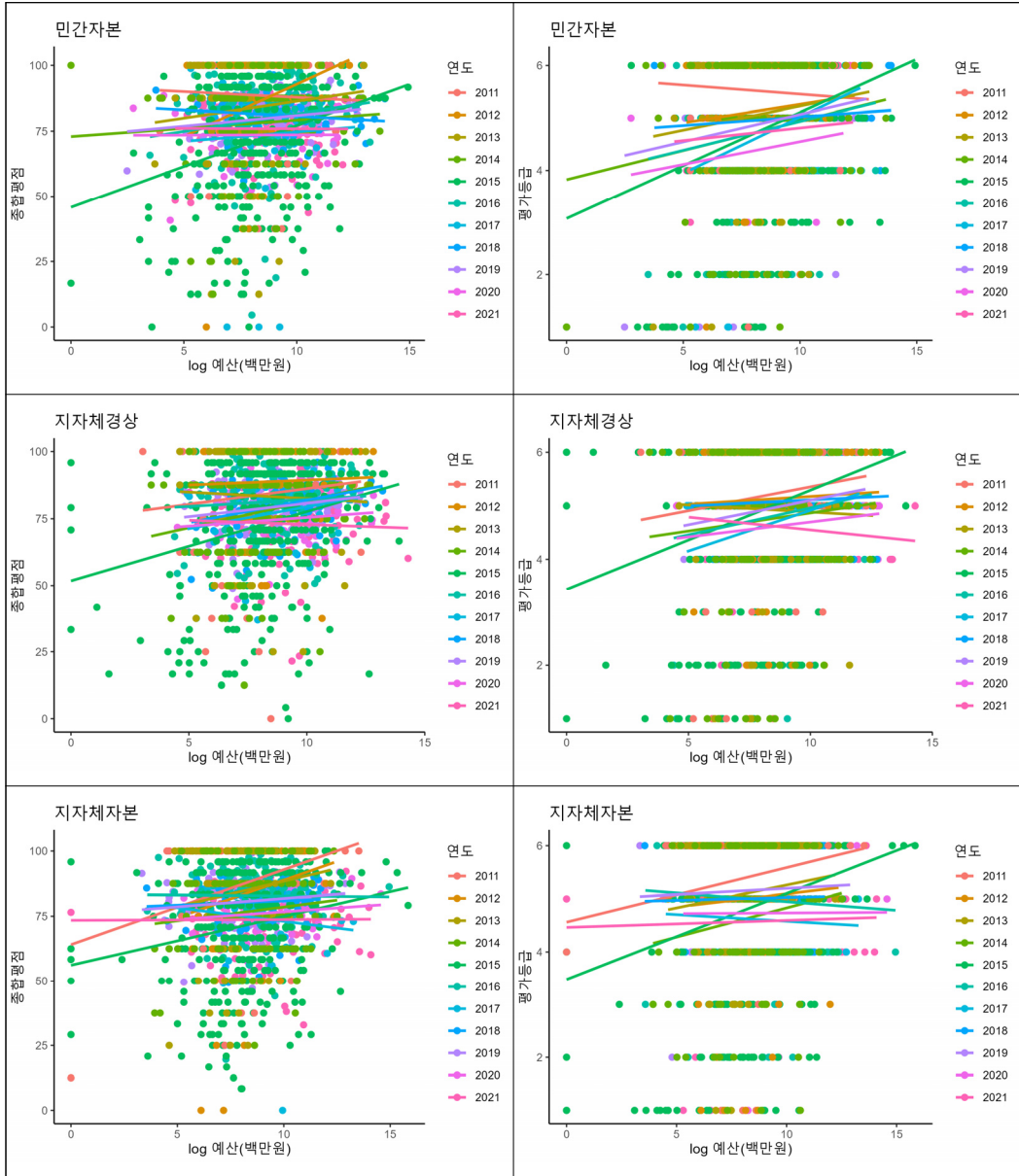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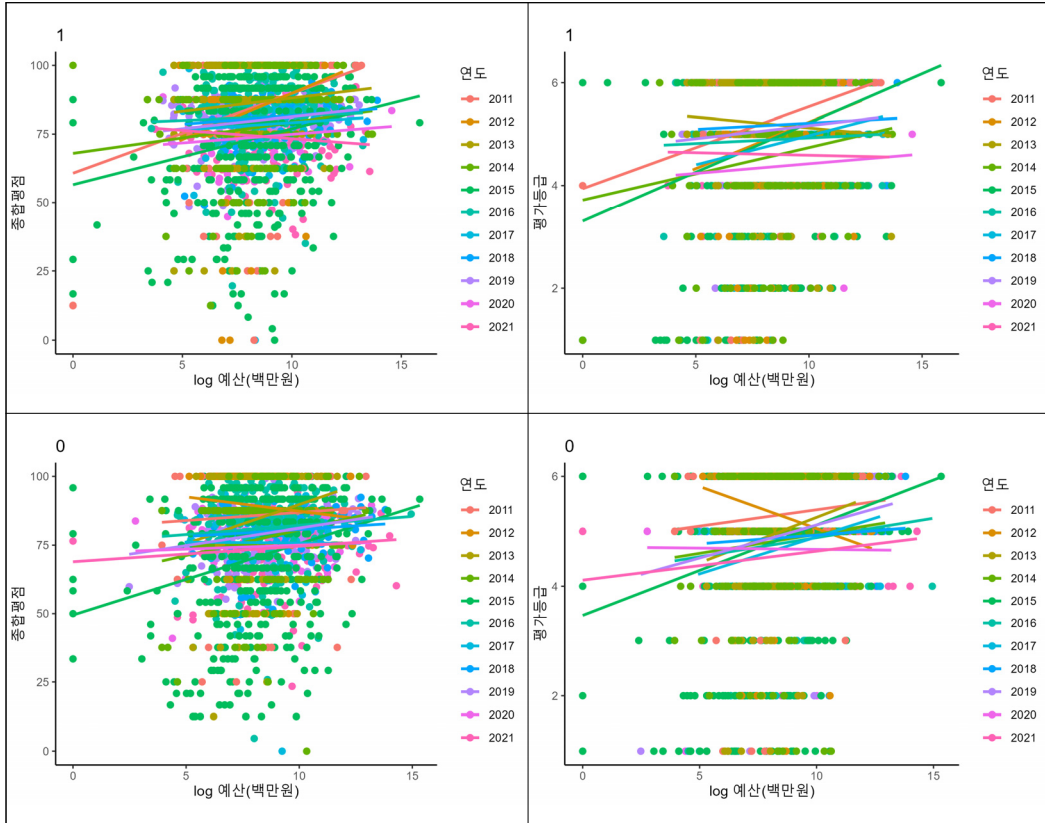
[부그림 4] 보조사업 유형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간 관계 비교(log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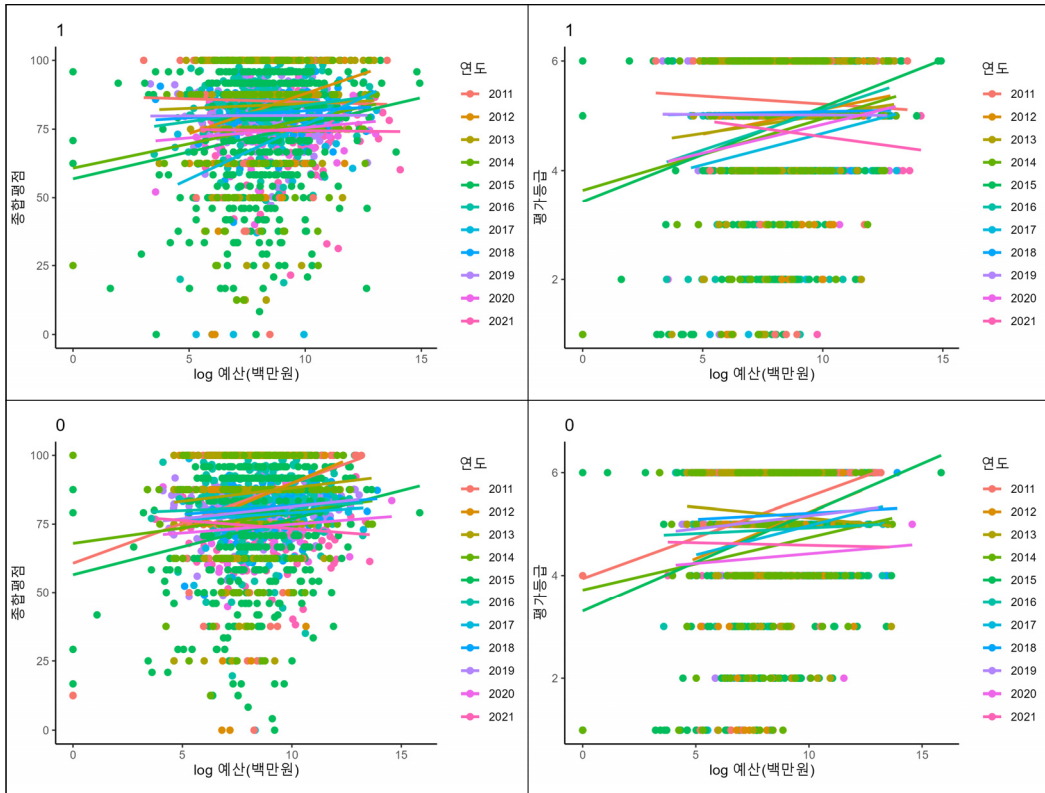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5] 신규 및 계속사업 간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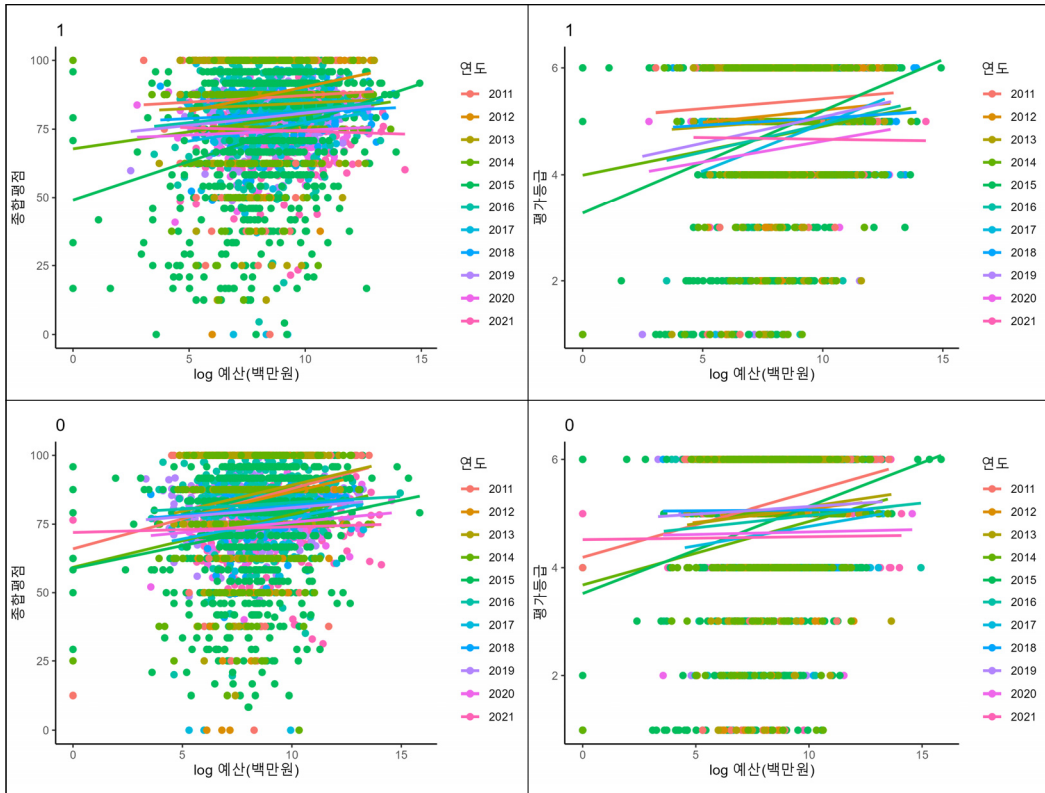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6] 일몰 및 비일몰사업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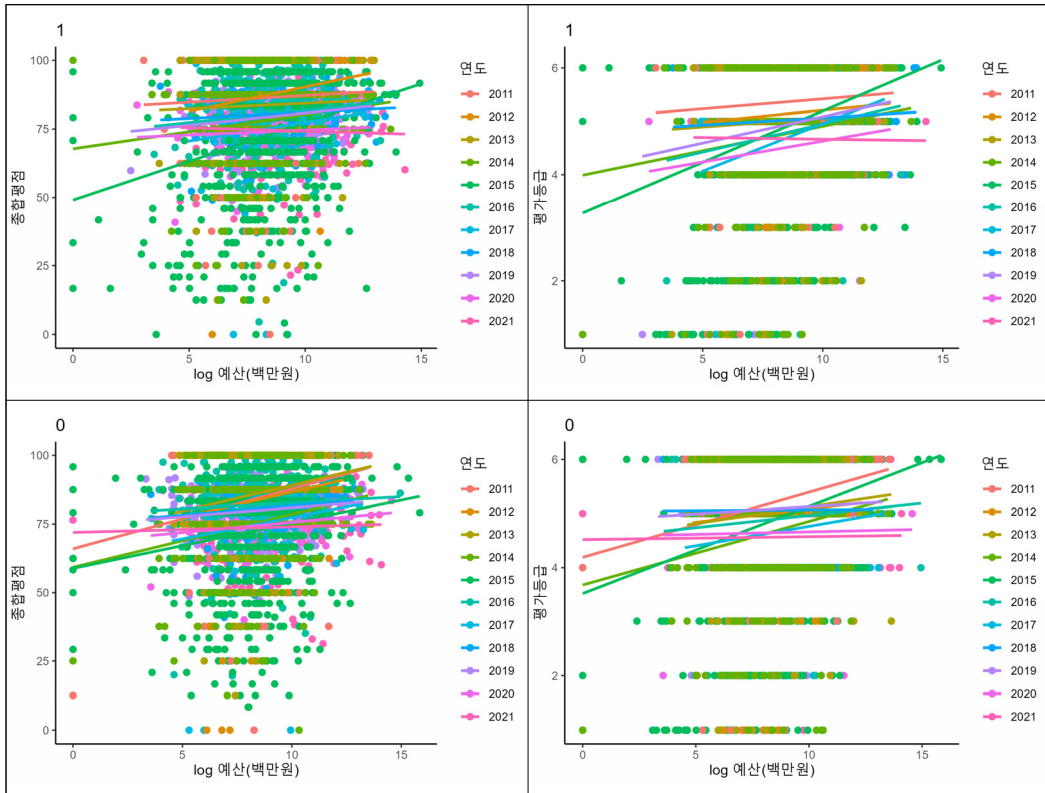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7] 목적변경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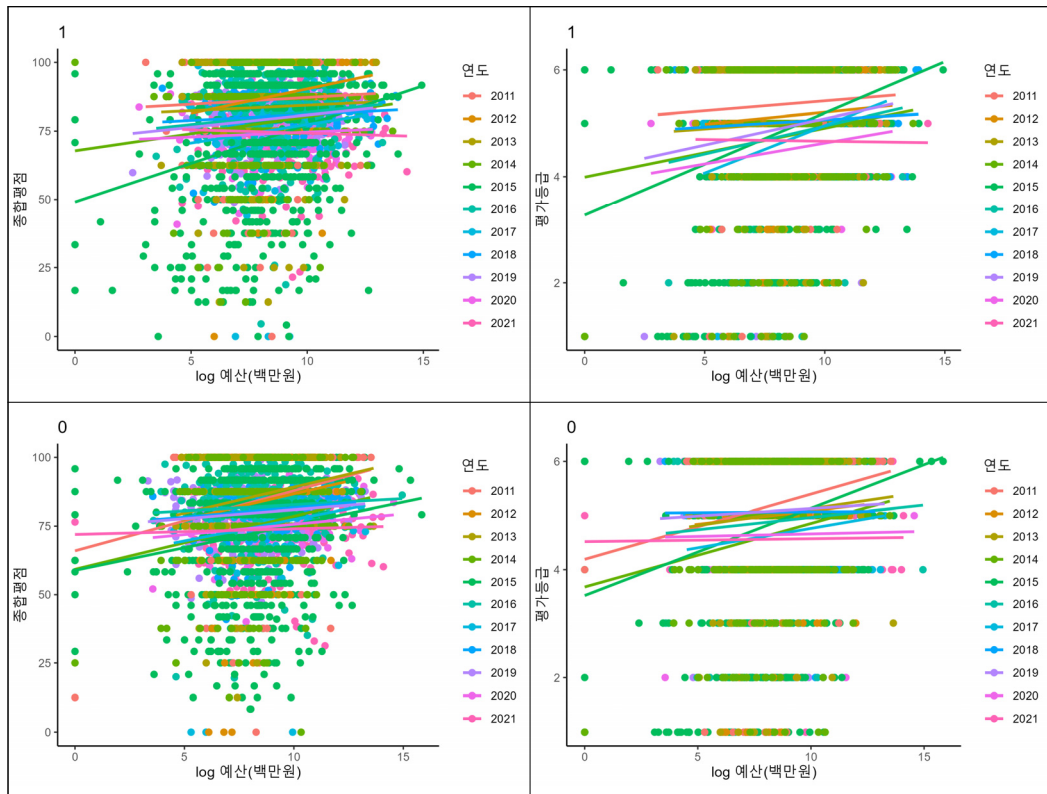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8] 유사중복 지적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9] 부정수급 지적 여부 간 예산 규모와 종합평점 및 평가등급 관계 비교(log예산)



자료: 저자 작성



## 저자약력

### 원종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일본 一橋大學 經濟學研究科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권오성

성균관대학교 문학사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임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현,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정치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국고보조사업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22년 12월 27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2022.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I S B N 979-11-6655-200-7



## 국고보조사업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http://www.kipf.re.kr)

